

제343회 국회
(임시회·폐회중)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제 4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16년7월8일(금)

장 소 환경노동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5회계연도 결산
 - 가. 환경부 소관
 - 나. 고용노동부 소관
 - 다. 기상청 소관
2.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 가. 고용노동부 소관

상정된 안건

1. 2015회계연도 결산 2
 - 가. 환경부 소관
 - 나. 고용노동부 소관
 - 다. 기상청 소관
2.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
 - 가. 고용노동부 소관

(09시00분 개의)

○위원장 **홍영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국회(임시회·폐회중)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새누리당 소속 위원님들의 행사 참석 관계로 평소보다 일찍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는 오늘부터 일주일 정도의 일정으로 결산심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일반적으로 국회의 결산심사는 그의 조정권한이나 통제권한이 미치는 범위가 미약하기 때문에 의정활동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일반 법안 심사나 예산안 심사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인식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국회의 결산심사는 국민의 세금이 얼마나 계획적이고 효과적으로 집행되었는지 평가함으로써 향후 정부 예산편성이나 집행에 반영하도록 하고 국가재정 운용에 대한 정부의 정치적 책임을 묻는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크다 하겠습니다.

상임위 활동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예년에 비해 결산심사 시기가 한 달 정도 앞당겨진 탓에 결산심사를 준비하시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결산심사가 가지는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인식하시고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전 회의에서는 환경부, 기상청에 대한 결산심사를 진행하고 환경부 등에 대한 결산심사가 마무리되면 이어서 고용노동부에 대한 결산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회의 진행은 새누리당 위원님들의 일정

관계로 10시 30분까지 회의를 진행한 후 정회하였다가 오후 3시에 속개하여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1. 2015회계연도 결산

가. 환경부 소관

나. 고용노동부 소관

다. 기상청 소관

2.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가. 고용노동부 소관

(09시03분)

○**위원장 홍영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환경부 소관, 고용노동부 소관, 기상청 소관 세입세출 결산 그리고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고용노동부 소관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부장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 윤성규** 존경하는 홍영표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5회계연도 환경부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환경부는 신속한 화학사고 대응체계 구축 등 환경안전관리체계 선진화와 안전한 먹는물 공급 등 환경서비스 품질 제고에 재정지원을 확대하였으며 하이브리드, 전기차 등 친환경차 보급 확대, 친환경에너지 타운 조성 본격화 등 미래세대를 위한 생산적 환경복지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환경투자도 강화하였습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 개요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부문에서는 총 6조 5083억 원을 징수결정하여 84.1%인 5조 4709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부문은 현액 6조 3371억 원 대비 95.6%인 6조 564억 원을 지출하였으며, 1037억 원은 이월하고 1770억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4대강 수계관리기금은 1조 36억 원을 수납하여 8699억 원을 기금사업비로 지출하였고, 171억 원을 이월하고 62억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석면피해구제기금은 528억 원을 수납하여 106억 원을 기금사업비로 지출하였으며, 이월액은 없고 29억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2015년도 환경개선특별회계 결산 특이사항으로는 10년 만에 세출예산현액 대비 세입수납액이

플러스로 전환된 점입니다. 그간 결산심사에서 연례적으로 지적되었던 자금 없는 이용·불용 문제를 해소하였으며 철저한 집행관리로 2007년 이후 최고 집행률을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세입예산 추계에 정확성을 기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결산심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앞으로 환경정책의 추진과 예산편성 그리고 집행 시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2015회계연도 결산 상세내용은 물환경정책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영표** 수고하셨습니다.

나오셔서 상세보고해 주십시오.

○**환경부물환경정책국장 김영훈** 물환경정책국장입니다.

2015회계연도 환경부 소관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2015회계연도 재원현황입니다.

재원규모는 현액기준 7조 3386억 원으로 전년 대비 401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출규모는 전년 대비 6055억 원이 증가한 7조 1128억 원으로 이 중 예산은 6조 564억 원, 기금은 1조 564억 원입니다.

7쪽, 재원구성입니다.

환경부 재원은 환경개선특별회계 등 4개의 특별회계와 4대강수계기금 등 5개의 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환특회계 등 예산이 86.4%를 차지하고 있으며 4대강 수계관리기금 등 기금이 1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8쪽, 2015년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6조 5083억 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국고보조사업 정산잔액 등의 증가로 전년 대비 7236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수납액은 전년 대비 6816억 원 증가한 5조 4709억 원이며 수납률도 전년 대비 1.3%p 증가하였습니다.

불납결손액은 전년 대비 117억 원 증가한 454억 원이며, 미수납액은 전년 대비 303억 원 증가한 9920억 원입니다.

9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95.6%인 6조 564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속적 집행관리를 통해 집행률은 전년 대비 3.6%p 상승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1037억 원으로 전년 대비 411억 원 감소하였으며 불용액도 1770억 원으로 전년 3318억 원 대비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10쪽, 분야별 지출현황입니다.

환경예산의 약 48%는 하수관과 하수처리장 확충 등 상하수도 분야에 지출되었고 공단 폐수처리시설 설치 등 수질보전 분야에 약 12%, 자연보전 분야에 8.5% 등의 순서입니다.

11쪽, 회계별 결산입니다.

먼저 환경부 주요 회계인 환경개선특별회계입니다.

환특회계 세입은 자체세입과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일반회계 전입금은 교통·에너지·환경세 15%와 추가 전입금에 따라 그 규모가 결정됩니다.

2015년도에는 징수결정액 대비 84%인 5조 4632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수납액 중 자체세입과 전년도 이월금은 1조 5499억 원이고 일반회계 전입금은 3조 9133억 원입니다.

불납결손액은 454억 원이며, 미수납액은 9914억 원입니다.

13쪽, 환특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의 96.7%인 5조 413억 원을 상하수도 수질보전, 자연보전 분야 등에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636억 원으로 전년 대비 249억 원 감소하였으며 불용액도 1104억 원으로 전년 대비 1874억 원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15쪽·16쪽, 환특회계의 전용 및 이용 내역입니다.

작년 4월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법인화에 따라 직접수행 예산을 출연금으로 80억 원, 국립멸종위기종 복원센터 건립사업 토지매입비 부족분 충당을 위해 35억 원, 인건비 부족분 충당을 위해 23억 원 등 총 159억 원을 전용하였으며 이용내역은 없습니다.

17쪽, 18쪽은 조금 전에 보고드린 다음연도 이월액 636억 원과 불용액 1104억 원의 세부내역입니다.

19쪽, 환특회계 세입·세출 수지분석 내역입니다.

2015년 환특회계 결산 특징으로는 10년만에 세출예산현액 대비 세입수납액이 플러스로 전환된 점이며 연례적 결산 지적사항이었던 자금 없는 세출예산의 이·불용 문제를 해소하였습니다.

20쪽, 지역발전특별회계입니다.

당초 세입예산액은 없었으나 보조사업 정산잔액 등 17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의 89.6%인 7884억 원을 상수도시설 확충 및 관리, 생태하천복원사업 등으로 지출하였고 세수결손에 따른 집행자금 부족 등의 사유로 392억 원이 이월되고 520억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21쪽,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입니다.

당초 세입예산액은 없었으나 보조사업 정산잔액 등 22억 원을 수납하였으며 세출예산현액 전액을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사업 등으로 지출하였습니다.

22쪽,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당초 세입예산액은 없었으나 보조사업 정산잔액 등 31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의 90.3%인 1444억 원을 기후대기 분야 사업비로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 등 146억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23쪽,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은 국유재산 토지대여료 등 7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편성된 일반회계는 전액 환특회계의 세입재원으로 사용됩니다. 예산현액 3조 9133억 원 전액을 환특회계로 전출하여 환경개선사업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4쪽부터는 기금 결산입니다.

먼저 기금운용 총괄입니다.

4대강 수계기금 등 환경부 소관 5개 기금의 수입과 지출액은 각각 1조 564억 원으로 전년보다 532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25쪽, 4대강 수계관리기금입니다.

상수원 상류지역에서 재산권을 제한받는 지역주민과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 지원을 위해 하류지역 주민들이 부담하는 물이용부담금을 주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징수결정액의 91.5%인 1조 36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4대강 수계기금의 50.3%를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비로, 35.6%를 토지매수와 수변구역관리사업, 주민지원사업을 위해 지출하였습니다.

27쪽, 4대강 수계기금의 50%를 차지하는 한강수계 관리기금입니다.

2015년도에는 징수결정액 대비 91.1%인 5419억 원을 수납하여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지원 등 사업비로 4416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기금사업비 중 103억 원은 이월하고 집행잔액 등 18억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28쪽 낙동강수계 관리기금, 29쪽 금강수계 관리기금, 30쪽 영산강·섬진강수계 관리기금은 한강수계 기금과 규모만 상이하고 사용 내용은 유사하므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31쪽, 석면피해구제기금입니다.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기 위해 운용하고 있으며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른 법정부담금과 환특회계 전입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징수결정액 대비 97%인 528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32쪽, 지출의 경우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 석면환경보건센터 운영 등 기금사업비로 106억 원을 지출하고 29억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33쪽, 국유재산 및 채권 결산입니다.

먼저 국유재산 결산입니다.

2015년도 말 현재 환경부 국유재산은 2조 9633억 원으로 전년 대비 1638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국유재산 주요 증감사유는 자료에 있는 바와 같습니다.

34쪽, 채권입니다.

2015년도 말 현재 채권은 2조 399억 원으로 전년 대비 692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환특회계 채권의 주요 내용은 용자상환잔액 9577억 원, 법정부담금 미수납액 9045억 원 등입니다.

35쪽, 재무결산입니다.

일반회계, 환특회계 등 4개 특별회계와 4대강수계기금 등 5개 기금을 통합하여 국가회계법과 국가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하였습니다. 2015년도 말 자산은 5조 3167억 원으로 전년 대비 1314억 원 증가하였고 부채는 1837억 원으로 전년 대비 118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전년 대비 1196억 원 증가한 5조 1330억 원입니다.

36쪽 재정운영표, 37쪽 순자산변동표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환경부 소관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영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상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기상청장 고윤화** 존경하는 홍영표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5회계연도 기상청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2015년에 기상청에서는 위험기상 대응역량 강화, 기상기후정보 가치창출 기반조성, 사회·경제적 의사결정 지원 강화, 기상행정의 투명성·효율성 제고 등에 중점을 두고 기상예산을 투자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조로 수도권기상청과 대구·전주·청주 기상지청을 신설하는 등 지역별로 분산된 예보기능을 도 단위 거점으로 집중·광역화하여 예보생산단계의 간소화를 통한 신속한 방재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맞춤형 기상기후서비스 제공을 한층 강화하여 기상서비스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유관기관과의 안개자료 공유 확대를 통한 안개특보 조기실시, 최첨단 기상레이더 도입을 통한 강수탐지능력 향상 등 위험기상 대응능력을 강화하였으며 기상기업 및 예비창업자의 성장·창업 지원, 기상기후자료 개방·공유 확대, 빅데이터 융합서비스 강화 등으로 기상산업 육성은 물론 기상기후정보 가치창출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가뭄·홍수 사전대비를 위해 가뭄전망정보 서비스와 수문기상예측정보 서비스 실시, 취약계층 대상의 생활기상정보 문자서비스 확대 등 국민안전을 위한 의사결정 지원 서비스를 확대하였으며 기상장비 구매총괄 및 장비연구 전담부서 신설, 장비도입 규정·지침 등 관련 제도 개선으로 기상장비 도입·유지보수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 책임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기상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기상현상 중심의 기존 예보에서 벗어나 날씨로 인한 영향까지 고려하는 등 영향예보로의 전환을 추진하여 국민의 안전과 행복은 물론 국가경제를 견인하는 기상기후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2015회계연도 기상청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6월 업무보고 이후 새로이 임명된 기상청 주요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준석 기후과학국장입니다.

김남욱 지진화산관리관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2015회계연도 기상청 소관 세입·세출 결산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세입·세출 결산총괄, 세입결산, 세출결산, 채권·물품 및 국유재산 현황, 종합평가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4쪽까지의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5쪽의 세입·세출 결산총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 결산개요의 세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69억 원으로 전년 대비 82억 원이 감소하였고 수납액은 68억 원으로 전년 대비 81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수납내역은 연구개발사업 및 대행역무사업의 집행잔액 정산금 등 34억 원, 장비구매 납품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87억 원, 항공기상정보 제공, 기상측기 검정 등 수수료 20억 원 등입니다. 불납결손액은 분청 구청사 전기공사 사고구상금 등 소멸시효 완성으로 1억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항공정보제공 수수료 100만 원입니다.

6쪽, 세출결산입니다.

2015년도 기상청 소관 예산은 당초 예산액이 3857억 원이었으나 전년도 이월금 79억 원이 증액되어 예산현액은 2014년 대비 10.1% 증가한 3936억 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2014년 대비 52.6% 증가한 121억 원이며 불용액은 61억 원입니다.

7쪽, 신규 및 종료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은 해당이 없고 종료사업은 혁신도시 기관이전 국립기상과학원 직원 이주지원비로 1개 사업입니다.

8쪽부터 10쪽까지의 세입결산은 앞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같음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세출결산 내역을 좀 더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액은 당초 3857억 원에서 전년도 이월액 79억 원이 증액되어 예산현액은 3936억 원입니다. 이 중 3754억 원이 지출되고 121억 원이 이월되었으며 61억 원은 불용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슈퍼컴 운영 및 선진예보시스템 구축 등 기상예보사업에 426억 원, 지상·해

양·고층관측망 확충 등 기상관측사업에 467억 원, 기상업무지원기술 개발 등 기상연구사업에 1193억 원 등 총 3754억 원을 지출했습니다. 주요 이월내역은 지진관측장비 도입 등 지진조기경보 구축사업에 46억 원, 다목적 기상항공기 도입사업비 39억 원 등 총 121억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사업계획 변경,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58억 원, 인건비 등 집행잔액 3억 원 등 총 61억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12쪽부터 16쪽까지의 세출결산 세부내역은 다음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전용액은 총 67억 원으로 다목적 기상항공기 도입사업 계약 잔금 환율 상승으로 인한 시설비 부족액 5억 원, 직제개편으로 비연고직원 관사 임차 등 무형자산 부족액 3억 원, 소속기관 인건비 및 기본경비 부족액 50억 원 등 67억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19쪽 이월액, 22쪽 불용액은 앞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2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3쪽부터 25쪽까지 채권·물품·국유재산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2015년도 결산 종합평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부문입니다.

2015년도 세입에서 수납액은 68억 원이며 미수납액은 100만 원입니다. 수납액이 2014년보다 13억 원이 감소한 사유는 장비구매에 따른 지체상금 발생횟수와 금액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세출부문입니다.

2015년도 세출예산현액은 3936억 원이며 이 중 3754억 원을 지출하고 121억 원을 이월해서 61억 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지출액은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이고 이월액은 전년 대비 52.6% 증가하였으며 이월액이 2014년도보다 증가한 사유는 계약지연과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장비도입이 지연되었기 때문입니다. 불용액은 전년 대비 27.8% 감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집행률을 높이기 위하여 주요사업별 집행률 제고대책을 추진하고 집행부진 원인을 철저히 분석해서 불용 및 이월액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이후의 참고자료인 2015년도 재무결산 요약설명 자료는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같음하겠

습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기상청 소관 결산개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영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하기 전에 조원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시겠습니까?

○조원진 위원 예.

○위원장 **홍영표** 예, 하십시오.

○조원진 위원 기상청장님!

○기상청장 **고윤화** 예.

○조원진 위원 오늘 결산 보고인데 사실은 울산의 지진에 대한 관심이, 국민적 관심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오늘 같은 날은 울산 지진에 대한 어떤 설명이라도 좀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자료를 가져왔습니까?

○기상청장 **고윤화** 자료를 따로 준비하지는 않았습니다.

○조원진 위원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 전체 지진 관측 중에서 다섯 번째로 큰 지진이 왔는데 그러고 오늘 바로 환경노동위원회가 열렸는데 기상청에서 그런 자료를 준비 안 한다는 게 제가 좀 이해가 안 가고요. 그래서 보고가 다 끝나면 그 부분에 대한 보고를 받았으면 좋겠거든요.

○위원장 **홍영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 위원님이 아주 적절하게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진도 5나 되는 지진이 발생해서 국민들이 걱정이 많기 때문에 수석전문위원 보고가 끝나면 기상청장께서 보고를 해 주십시오.

○기상청장 **고윤화**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홍영표** 그러면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결산 검토보고서 보고가 있겠습니까.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5회계연도 환경부 소관 결산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요약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부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전체적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환경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 총액을 보면 2015년도 환경개선특별회계 세입 수납액은 5조 4632억 원으로 세출예산 현액 5조 2152억 원보다 2480억 원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2006년

도 이후 연례적으로 되풀이되던 자금 없는 이월 및 불용이 2015년도에는 해소되었습니다.

이는 세출 측면에서 2015년도 예산 현액이 전년대비 3.9%인 1941억 200만 원이 증가한 데 비해 세입 측면에서는 2015년도 수납액이 전년대비 14.4%인 6866억 400만 원이 증가하였는데 특히 일반회계 전입금이 당초 예산액대로 수납되었기 때문입니다.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업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를 위해서 일반회계 전입금도 중요하지만 향후 자체수입, 특히 법정부담금의 징수 실적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둘째, 미세먼지 저감과 관련하여 정부는 2015년도에 수도권 대기개선 추진 대책 등 11개 사업을 추진하였고, 2016년도에는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을 수립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미세먼지의 정확한 원인 파악이 아직 미흡할 뿐 아니라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은 건설기계 등 주요 배출 원인에 대한 대책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고 또한 중국과의 협력사업도 실적이 부진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2015년도 환경부의 시험연구비 집행내역을 검토한 결과 시험연구비 집행액 601억 6500만 원 중 22억 1530만 원이 시험연구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업에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환경부는 예산안 집행지침에 따라 시험연구와 직접 관련 있는 경비만 시험연구비로 편성하도록 하고 시험연구비는 다른 목적에 사용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 3쪽, 부문별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 부문 중 하수관거 정비 사업은 예산 확정 후 약 30%에 해당하는 지자체의 교부액을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교부액 조정에도 불구하고 실집행이 저조한 사례가 일부 나타나고 있어 향후에는 정확한 사업 소요를 파악하여 이에 따라 예산을 반영하는 등 교부액 조정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 수질 부문 중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은 2015년 현재 103개소가 가동 중이나 가동률 50% 미만인 시설이 13개소로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 수립이 필요한 것으

로 보입니다.

다음, 폐기물 부문 중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재활용체계 구축 운영 사업은 감리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감리비를 편성하지 않아 낙찰차액을 활용하여 감리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의무감리 사업의 경우 적정 수준의 감리비를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차량 선진화 사업은 폐기물의 비산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의 밀폐화 비용을 보조하는 사업으로, 차량 모델 개발 보급의 지연, 지자체의 지방비 확보기간 부족 등으로 실행률이 45.7%에 불과하므로 사업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 대기 부문 중 수도권 대기개선 추진 대책 사업에서 보급 중인 수소연료전지차는 수소충전소가 부족하고 차종이 한 가지에 불과하여 2015년도에는 특정 완성차업체 그리고 그 협력업체에만 보급이 이루어졌는바 이러한 현실을 면밀히 고려하여 사업을 신중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사업과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사업은 각각 CNG버스와 전기버스 및 전기화물차의 보급 실적이 부진하기 때문에 이 보급 확대를 위한 정책적 개선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 대기오염측정망 구축·운영 사업에서는 시험연구비로 집행할 수 없는 측정망 운영 인원의 인건비를 시험연구비로 집행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 자연보전 부문 중 국립야생동물보존연구원 건립 사업은 기본계획을 확정된 직후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었음에도 부지를 변경하려 하였고, 결국 기존 부지로 다시 결정하는 과정에서 사업이 지연되고 집행이 부진하게 되었습니다. 향후에는 사업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 환경지킴이 사업에서는 국립공원지킴이 28명을 국립공원 현장이 아닌 공단 부설기관에서 직원 업무를 대신 수행하게 하고 있는데 이는 탐방객 계도, 현장 안내 등 건전한 탐방문화 조성이라는 국립공원지킴이의 운용 목적과는 어긋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

다.

다음, 생태관광자원 이용기반 사업에서는 설악산 등 5개 생태탐방연수원을 건립 중인데 최근 3년간 평균 실행률이 46.4%로 저조하기 때문에 사업 추진 일정을 면밀히 고려하여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다음, 환경보호 일반 부문의 한·중 미세먼지 저감 환경기술 실증 협력 사업은 예산액 100억 원 중 설명회 개최 등에 지출한 3억 3400만 원 이외에는 실행 실적 없이 잔여 사업비를 이월하였는바, 이의 원인은 양국 간 추진체계 MOU 체결 지연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향후 집행 부진이 재발하지 않도록 보다 면밀한 계획을 세우고 중국 정부와 협력을 강화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 환경보건기반 강화 협력 사업은 아토피 등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 피해의 예방 및 연구 등을 위해 민간병원을 환경보건센터로 지정하여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보조금을 부적절하게 집행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 사업에서는 지하철 역사의 석면을 제거하고 있는데 최근 2년간 평균 집행률이 13.4%로 저조하기 때문에 석면제거 공정에 소요되는 기간을 면밀히 고려하여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 생활공해 관리 사업 중 라돈 저감 시공은 사업 대상이 되는 주택을 선정하는 기준이 불명확하므로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또한 다양한 저감 공법의 비용 대비 효과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후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 국립환경과학원의 경우 정규직으로 고용된 연구관과 동일한 연구업무를 담당하는 박사후연구원을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 채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 인건비 등을 시험연구비로 집행한 문제가 있으므로 향후 과학원은 박사후연구원 채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적절하게 박사후연구원의 보수와 연금지급금 등을 예산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한편 4대강 수계관리기금에서 여유자금 과다 보유와 상·하류지역 지자체의 이해관계 상충이 갈등 요인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어 적정한 규모의 여유자금이 유지될 수 있도록 각종 수입과목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

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석면피해구제기금에서도 사업비 대비 여유자금이 과다하므로 환경개선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규모를 축소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환경부 소관에 대한 결산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홍영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양건 전문위원 나오셔서 기상청 검토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양건 전문위원입니다.

2015회계연도 기상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약보고서에 따라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의 경우 기상장비 및 물품 계약업체의 납품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이 2013년 이후 크게 증가하고 있으므로 납품 지연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도·점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세출의 경우 다목적 기상항공기 도입 및 운영 사업에서는 항공기 개조 업체의 부적절한 업무 처리로 인해 항공기 도입이 지연되어 예산의 상당 부분이 이월되었고 기상항공기를 활용한 기상연구도 적시에 추진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 지진 조기경보 구축 및 운영 사업에서는 지진관측장비와 조기경보 시스템 등을 구축하고 있는데 최초 지진 통보 시 지진 규모, 발생 위치 등에 자주 오류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진 규모 계산식을 보완하고 유관 기관과의 업무 협조 체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2쪽, 선진예보 전문인력 양성 사업은 한번의 위탁계약으로 추진할 수 있는 단체화합 교육을 임의로 4개의 계약으로 나누어 수의계약 함에 따라서 일반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므로 위탁계약 업무 추진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기상산업정보화국 기본경비에서는 기상청이 업무와 연관성이 부족한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다른 사업으로부터 예산을 전용하여 집행하

였는데 이는 예산의 목적 외 사용에 해당하므로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홍영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만 최근 발생한 지진과 관련하여 기상청장의 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상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청장 고윤화 먼저 사전에 보고 자료를 준비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가 끝나면 오후에 속개하기 이전에 위원님들께 이 자료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7월 5일 20시 33분경에 울산 동구 동쪽 52km 떨어진 해역에서 규모 5.0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약 50분 후인 21시 24분경에 울산 동구 동쪽 41km 해역에서 규모 2.6의 여진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해서 울산·부산·포항 지역에서 쿵 하는 소리와 함께 건물의 흔들림도 감지되었고 진도는 약 4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지역은 3 또는 4 이렇게 느끼기도 했고요. 수도권권을 제외한 경상남·북도를 비롯한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진동을 조금씩 느낀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번 지진은 1978년부터 기상청의 계기 지진 관측 이래로 역대로 보면 다섯 번째입니다. 그리고 총 일곱 번의 진도 5 이상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 4월 1일 충남 태안군 서격렬비도 서북서쪽의 100km 해역에서 발생한 규모 5.1 지진 이후에는 가장 큰 규모의 지진이었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해서 지진해일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지진해일은 규모가 6.0 이상일 때 그리고 한 7.0 정도가 되어야지 지진해일이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5.0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었고요.

지진으로 인한 물리적인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다만 지진으로 인한 국민들의 어떤 심리적인 동요라든지 불안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컸던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지진은, 기상청에서 지진 조기경보 시스템을 2015년도 1월 22일 날부터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지진 조기경보 서비스를 실시하고 나서는 첫 번째로 발령된 지진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진 조기경보 시스템은 현재 50초 이내에 하도록 저희들이 목표를 했었는데 지진 관측 후 27초 만에 자동으로 통보를 했고요. 그래서 앞으로 현재 50초 이내인 조기경보 시간을 좀 더 당기기 위해서, 선진국에서는 대개 20~25초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수준을 하기 위해서 지금 기술 개발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는 그 정도 수준으로, 조기경보 시간을 한 절반 정도 수준으로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고요.

두 번째로는 현재는 규모만 발표합니다. 규모라는 것은 에너지의 크기를 말하는데 이것을…… 국민들은 에너지 크기로 느끼는 게 아니라 진도로 느낍니다. 그래서 2018년도, 지금 준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가속도계라든지 장비를 더 깔아야 됩니다. 좀 더 공간적인 루프가 커야 되는데, 그래서 2018년부터는 국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끼는 계기 진도로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진에 대한 조금 더 정확한, 진도 3이 될지 진도 2가 될지 진도 5가 될지 에너지의 규모가 어떤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국민 교육을 계속해서 강화를 해 나가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예산이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예산적인 부분을 좀 강화해서 교육을 늘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국민안전처하고 협업을 좀 더 강화해서, 대한민국의 단층구조라든지 이런 부분도 국민안전처에서 현재 연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좀 더 강화하고 또 지진 발생했을 경우에 대응하는 매뉴얼이 우리나라가 케이스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케이스를 일본이라든지 대만하고 많이 협력을 하고 있는데 그런 사례 연구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좀 더 강도가 큰 지진에 대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매뉴얼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영표** 들어가시기 전에요, 지금 정부에서 지진 관련해서 예보·탐지는 기상청만 유일하게 합니까?

○**기상청장 고윤화** 공식적으로는 그렇고요, 지질자원연구원에 지진연구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서도 저희보다는 개수는 적지만 탐지는 하고 있고요, 24시간 동안 감지를 하고 있고 서로 정보 교류는 합니다.

○**위원장 홍영표** 그러니까 지진 탐지와 예보에

대해서는 기상청이 주무 기관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기상청장 고윤화**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영표**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질의는 국회법 제60조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당 김삼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삼화 위원** 기상청장님!

○**기상청장 고윤화** 예.

○**김삼화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지진과 관련하여 좀 여쭙 볼게요.

청장님, 지난해에 92억 2100만 원이 투입된 지진 조기경보 구축 및 운영 사업 초점이 지진 통보의 신속성, 정확성을 높이는 방법을 마련하는 그런 거잖아요?

○**기상청장 고윤화** 예, 그렇습니다.

○**김삼화 위원** 2016년 현재 156개소의 지진관측망을 2020년에는 264개까지 늘릴 계획이고 매년 꾸준히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 관측망이 모두 내륙에 설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현재?

○**기상청장 고윤화** 저쪽 해역에도 좀 있습니다.

○**김삼화 위원** 있어요? 다 내륙으로 보였는데……

○**기상청장 고윤화** 예, 근처에……

○**김삼화 위원** 아까 보고하셨던 7월 5일 20시 33분 3초에 울산 앞바다에서 관측된 지진이 역대 다섯 번째 큰 규모로 알려져 있는데 이 지진이 내륙의 지진과에 감지된 것은 아까 보고하셨던 것처럼 27초 뒤입니다. 결국에는 이 지진에 대한 최초 대응도 27초 뒤에 시작된다는 것인데, 지금 한반도 해역에 크고 작은 지진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요 해역에서 일어나는 지진의 원인 중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활성단층이라는 것 아실 텐데 기상청에서 한반도 해역에 대한 활성단층 조사가 지금 어느 정도 수행되고 있는지 묻고 싶고요. 이따가 한꺼번에 같이 답변을 해주세요.

현재 내륙에 대한 활성단층 조사는 국민안전처 중심으로 연구가 되었는데 해역에 대한 조사는 전혀 시작을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상청에서 최근 진행한 지진기술개발사업(R&D)

연구 현황을 보면 2013년부터 17년까지 해역의 지진을 연구하거나 연구 예정인 과제는 4개에 불과합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2013년, 2014년에 수행된 연구는 서해안에서 발생하는 지진의 분포와 구조적 특성을 추정하는 기초적인 연구인 것으로 되어 있고, 그나마 2015년에 심부 탄성파탐사를 이용한 서해의 지각구조와 경기만 단층활동 연구가 기상청에서 유일하게 하고 있는 지각구조를 해석하는 연구인데, 더 큰 문제는 이 모든 연구가 다 서해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지진이 발생한 한반도 남동해 해저를 보면 지진의 원인인 쓰시마 고토 단층대와 그 주변에 작은 활성단층들이 많이 널려 있는데 1978년 관측 이래 남동해의 반경 50km 이내에서 발생한 2.0 이상의 지진은 총 45회입니다. 특히 이 지역은 월성 6기, 고리 6기 등 12기의 원전이 운행 중이고 또 건설 중인 2기, 특히 허가가 난 신고리 5·6호기까지 포함하면 총 16기의 원자력발전소에 둘러싸여 있어서 작은 지진에도 상당히 민감한 지역입니다.

과거에는 많아야 한 해에 한두 건이던 이 해역 지진이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급증하는 추세인데요, 동일본 대지진 이전 10년보다 이후 5년 동안 발생한 지진 건수가 2배가 넘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진에 대한 발생 시기와 강도를 미리 예측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지진을 좀 더 빨리 관측하고 시민들에게 최대한 빠르게 알린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일본해구 해저지진 쓰나미 관측망이 수심 100~8000m 지대에 케이블을 연결한 형태로 150기가 설치됐고 전체 길이는 5700km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 지진계와 쓰나미 감지장비가 30~60km 간격으로 장착되어서 해저에서 거대 지진이 발생했을 때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이 장비를 활용하면 기존보다 최대 20분 빨리 쓰나미를 포착할 수 있고 지진에 의한 흔들림을 최대 30초 빨리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기상청에서는 해역에 대한 지진 관측장비 설치에 고사하고 남동해안의 단층을 직접 조사하거나 이 단층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의 기초적인 연구조차 시작을 못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건지 묻고 싶고요.

예산편성 과정부터 좀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것이고, 특히 아까 한반도 해역에 대한 활성단층 조사 어느 정도까지 수행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륙의 지진 관측뿐만 아니라 지진 규모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해역 지진의 관측에도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한 지각구조와 해상 단층구조 밝혀내는 것이 시작이라는 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기상청장 고윤화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지진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해역에 대한 연구, 활성단층에 관한 연구는 사실 그렇게 활발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물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서해에 대해서 일부 탄성파를 이용한 지진 연구를 지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고 있지만 이 자체도 상당히 기초적인 수준에 지금 머물러 있고요. 서해에서 이렇게 했던 이유는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보령이라든지 백령도라든지 연평도 이 부분에서 조그만 지진들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집중을 하게 됐고요.

남동해안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늘려가야 되는데 사실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 규모가 굉장히 천문학적인 수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해저에 상당히 많은 여러 가지 장비들을 깔아 놓고 하는 연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상당히 기초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내륙에 대한 부분도, 우리나라는 활성단층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내륙에 대해서는 일단 국민안전처에서 연구를 그동안에 한 11억 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도 저희들이 좀 참고를 하고, 또 외부의 전문가들하고 많은 토론을 거쳐서 저희들이 연구를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을 것인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노력을 하고.

또 조기경보 시스템과 같은 부분도 아까 보고를 드렸습시다만 한 50초 정도인데 이것을 적어도 한 20초 내외 정도까지는 줄이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기술적으로 극복해야 될 문제들이 많

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영표** 다음은 정의당 이정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정미 위원** 환경부장관님, 인과관계 추정과 인과관계가 엄연히 다르다는 것 장관님 잘 알고 계시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이정미 위원** 환경오염피해구제법에 보면 인과관계 추정이라는 용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 6월에 진행된 제14차 환경보건위원회 회의록에 보면 폐 손상을 1등급에서 4등급까지 구분하고 보상 범위를 선정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 당시 회의록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진단이 아니라 판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데서도 알 수 있듯이 살균제에 의해 폐질환이 직접적으로 확진될 수 있는 수단이 없기 때문에’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 의미는 역학 조사를 통해서 인과관계를 규명한 것이 아니라 임상 의사들께서 모여서 가지고 인과관계 추정을 해서 판정을 한 것이지요? 그렇게 되어 있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가슴기살균제가 폐 손상을 일으킨다고 하는 부분……

○**이정미 위원** 장관님, 이 사실관계에 대한 답변만 해 주십시오.

인과관계 추정을 통해서 진단을 한 것이 아니라 판정을 한 것입니다, 그렇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잠깐 답을 드려야 됩니다.

가슴기살균제가 폐 손상을 일으켰다 하는 부분은 질병관리본부에서 만든 백서에 규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개별 피해자별로는 판정이 맞을 겁니다.

○**이정미 위원** 예, 판정입니다. 그래서 가슴기살균제로 인한 폐 손상이 상당한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피해자로 판정을 했고 이것은 예전에도 석면 폐암 같은 이런 경우에도 인과관계 추정으로 석면 폐암 판정을 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꺼낼 때마다 ‘소송에 이기기 위해서는 인과관계를 밝혀야 한다’ 이러한 표현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잘못된 것입니다. ‘인과관계 추정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판정 기준으로 이때까지 폐 손상 환자들에 대한 보상 범위를 결정해 왔기 때문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호흡기질환에 대한 피

해를 판정하기 위해서 중요한 용어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환경부에서 제출되는 모든 문서는 인과관계와 인과관계 추정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제출을 해 주셔야 하고, 특히 이번의 가슴기살균제 피해자와 관련해서도 인과관계 추정이라고 하는 용어를 정확하게 쓰셔야 환경부에서 계속 얘기하시는 법정에서의 소송에 대한 정확한 대응이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그 부분은……

○**이정미 위원** 앞으로 그런 문서를 명확하게 검토해서 인과관계 추정으로 표현되어야 될 부분들이 인과관계로 잘못 명기되지 않도록, 그리고 표현을 하실 때도 그렇게 되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업무보고 때 장관님께서도 동의하셨습니다. ‘동물실험보다는 의사들이 판단한 역학적 임상적 결과가 더 중요하다, 인간과 동물은 다르기 때문에’라고 하는 것에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셨던 것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가능한 새로운 판정 기준을 신속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새로운 판정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는, 동물실험 등과 같은 연구용역이 나와서 다시 위원회가 소집되고 또 연구용역의 내용을 검토하고 판단 기준을 만들고 이러는 데 얼마의 시간이 걸릴지도 모르고, 제가 업무보고 때도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될 것 같으나 그랬을 때 1단계 1년, 길게는 2년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폐이의 질환 검토위원회가 빨라야 1, 2년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소요될지도 모르는 이런 상태로 계속 가서는 피해자에 대한 구제가 신속하게 이루어지기 어렵고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에 계속 피해가 확산되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이의 질환 검토위원회에서 주관을 해서 뭔가 인과관계 추정의 판정 기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저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담배와 폐암 관계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데는 수십 년이 걸렸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있어서도 뭔가 전문가들에게 이 문제를 폐이의 질환 검토위원회 전문가 몇 분들에게 맡겨 놓게 됐을 때는 그 전문가들이 가지고 있는 고도의 전문지식으로 이것을 반드시 인과관계를

구명해 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부담을 짊어지시기 때문에 어떤 결론에도 도달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과관계 추정이 중요하다고 한다면 의사나 독성학자 이런 여러 전문가들의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제안을 통해서 폐이외 질환 검토위원회의 전문가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사회적 합의를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장관님께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에 홍영표 위원님을 비롯한 6명의 야당 의원들께서 건강모니터링 등 피해자 추가 조사 계획서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었고 환경부에서 이것을 받아서 2014년 4월, 5월에 가슴기살균제 피해 조사에 대한 후속조치 관련 전문가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이 회의에서 사실은 이 당시 의원들의 요구에 따르면 올해 5월 달에 진행되게 됐던 추가 조사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진행이 됐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회의의 내용이 변화되면서 피해자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그냥 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이 되게 되면서 2년 동안 피해자 모니터링에만 추가 대책이 한정되게 되는 이런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올 6월 달에 환경부에서 다시 이 문제를 결정하게 되고, 2년 전에 실행됐어야 될 일이 올 6월 달부터 진행이 되면서 이 문제에 대한 추가 대책이 2년이 미뤄지게 되는 이런 결과를 낳게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 윤성규**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차례차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폐 이외의 질환에 대해서도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규명하는 것은 분명하게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개별 피해자별로는 아마 판정이 맞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절차는 똑같이 가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러 사람이 참여해 가지고 사회적 공론화라고 하는 부분은 이게 어떤 기준을 만들고 판정을 했을 때 상대방이 승복 안 하면 소송을 하게 됩니다. 소송에서는 또 저쪽은 저쪽대로

유능한 의사들 동원해서 방어에 나설 겁니다. 그렇다면 이쪽과 저쪽이 재판정에서 누가 더 정확하게 했느냐 가지고 판결이 나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해서, 예를 들면 미적분을 푼다고 했을 때 미적분 공부한 사람이 수백 명이 푸는 것하고 미적분 공부한 사람 1명 푸는 것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누가 정확한 답을 내느냐가 재판정에서 이기는 것이지 사회적……

○**이정미 위원** 장관님, 그러면 위원회 자체는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회 내부에서도 이런 개연성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부담을 뭔가 더 폭넓게 열어 주고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는 방안들을 환경부에서 조성해 달라는 것입니다.

○**환경부장관 윤성규** 그 부분은 위원회에서 판정 기준을 만들게 되면 그 만든 것 가지고 자기들이 좀 더 넓은 전문가 그룹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겠다는 판단하면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봤을 때 자신 있다 그러면 그대로 확정할 수도 있고요. 그것은 그 전문가 그룹한테 전적으로 맡겨야지 저희가 행정적으로 판단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014년 홍영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분이 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그 당시 모니터링을 하기로 한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전문가 영역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 필요한 조치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잘 뒷받침하는 게 중요하지 저희들이 이렇게 가자 저렇게 가자 행정적으로 가이드하기는 사실은 좀……

○**이정미 위원** 그렇게 말하셨다가 결과적으로 2년을 허비하고 2016년 5월 달에 이 추가 대책을 다시 마련하신 것 아닙니까? 저는 그 질문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 홍영표** 더 하셔야 되나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됐습니다.

○**위원장 홍영표** 마무리해 주십시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경남 양산시을 출신 서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형수 위원** 기상청장님께 먼저 묻겠습니다.

이번에 신고리 원전 5, 6호기 건설 허가 나는 과정에서 기상청에서 지진에 대한 자료나 의견을 원안위에 제출한 사실이 있습니까?

○**기상청장 고윤화** 제가 세부적인 사항은 알고 있지 못합니다. 보고를 듣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

에 대해서는.

○서형수 위원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에 보면 지진의 관측은 기상청이 유일하게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원전 5, 6호기 건설 허가 나는 과정에 지질 관측 자료를 그쪽에서는 어디…… 그러니까 지금 기상청으로서는 제시한 바가 없다는 얘기지요?

○기상청장 고윤화 요청이 있으면 항상 제시를 해 줍니다. 그리고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실무적으로 언제 요청이……

○서형수 위원 이번 심의 과정에서는 요청이 없었다는 얘기지요?

○기상청장 고윤화 그것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홍영표 지금 확인을 해 보세요. 실무자 계실 것 아니에요. 직접 답변하세요. 담당관 실무진이 직접 답변하세요.

○서형수 위원 없었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이번에 일어난 지진 원안위에다가 이런 의견이나 자료를 제시할 용의가 있습니까?

○기상청지진화산관리관 김남욱 제가 지금 사실 밖에 자료 때문에 잠깐 나갔다가 와서, 죄송합니다. 질의 내용을 제가 사실 잘 못 들은 상황입니다.

○서형수 위원 원안위에 신고리 5, 6호기 건축 허가 내는 과정에서 기상청에서 거기에 대한 지진 예측 자료를 제시한 적이 있느냐 하는 것이지요.

○기상청지진화산관리관 김남욱 제가 알기로는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형수 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변동 자료가 있으면 다시 추가적으로 원안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청지진화산관리관 김남욱 예, 알겠습니다.

○서형수 위원 환경부장관님, 질문드리겠습니다. 방사능 오염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건강영향조사 지금 하고 계십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저희가 그 부분은 안 하고 있고요. 단지 저희는 물이라든지 이런 데 방사능이 어떻게 나오는지 이런 것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형수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환경보건법에 보면 일단 환경오염에 대해서는 사람의 건강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평

가하고 이를 예방·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환경조사 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환경오염 내용 자체는 방사능오염에 따르는 영향평가를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안 하고 있는 이유가 뭔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이 부분은 전문적인 조사 또는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원자력안전법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하는 것으로 저희 정부 내에서는 교통정리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서형수 위원 다음 것 보겠습니다.

원자력안전법에 보면 지금까지 건강영향평거나 환경영향평가 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 부분이 지금 공백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원자력안전법에서는 방사능오염을 막기 위한 방지대책만 하고 있습니다. 방사능오염이 났을 때 거기에 따르는 전체적인 영향평가라든지 관리대책 자체는 당연히 환경부가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것을 직무유기 하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지난 국회에서도 여기에 대한 검토 용역을 하라고, 지금 검토 용역하고 계시지요? 발전소 주변 주민 건강영향평가 하고 계시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로드맵 만드는 것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형수 위원 그것을 하고 계시면서 왜 지금 현재 영향평가 업무는 안 하고 계시는 건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자력발전소와 관련해서는 원자력안전법이라든지 원자력안전위원회 이런 쪽에 기능이 있기 때문에 정부 내에서……

○서형수 위원 기능이라는 것은 방사능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이고요, 오염이 났거나 될 우려가 있을 경우 거기에 대한 영향평가 자체는 지금 환경부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업무 자체를 지금 안 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거든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저희가 이 조항을 넣은 것들은 상당히 최근입니다. 원자력발전소는 오래전부터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전부터 건강 문제는 그쪽에서 확립돼 가지고 해 왔고 저희는 주로……

○서형수 위원 아니, 지금 현재 원자력안전법에 건강이라든지 환경에 대한 영향평가 하는 게 없습니다.

○환경부장관 윤성규 제가 지금 받기로는 원안위에서 두 번에 걸쳐서 조사한 사례가 있는 것으

로 알고 있습니다.

○서형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오염 방지를 위한 조사를 하는 것이지 건강이나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평가를 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 부분 확인하시고 그 업무 자체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 윤성규 두 번에 걸쳐서 주민 건강 영향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안위 쪽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영표 서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신보라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보라 위원 환경부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10년부터 전기자동차를 보급할 것을 우리나라가 계속 계획을 해 왔었는데요. 2010년 9월에 전기자동차 개발과 보급 계획을 수립하면서 보급 대수 목표를 어떻게 잡으셨는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그 당시에 아마 100만 대를 보급하겠다 이렇게 목표를 정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보라 위원 그런데 2014년 말 조사에 따르면 지금까지의 보급 대수가 3000대 정도에 불과하다고 하고 그래서 2014년 12월에 회의를 통해서 전기자동차 보급 대수를 기존의 100만 대에서 80만 대를 오히려 줄여서 20만 대로 하향조정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수요가 발생하는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적절한 목표 설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어떤 잠재적인 전기차 시장의 가능성만을 보고 수요나 수요 등의 어떤 시장의 흐름은 제대로 읽어 내지 못한 문제가 좀 발생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이게 예산의 운용 문제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드러날 수 있다고 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2015년 표에 보시면 2015년도에는 전기자동차의 보급과 인프라 구축 예산이 전년 대비 209% 정도가 증액돼서 787억 79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중 전기차 구매보조 예산이 501억이고 집행액은 500억 99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이, 이 구매보조 예산안들이 주로 지자체의 구매보조 비용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서 서울시가 환경부의 전기차 구매보조 예

산을 받아서, 교부를 받았지요. 그게 전체 예산의 29.3%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신보라 위원 그런데 실제 이 2015년도 구매보조금 예산의 실질 집행률을 봤더니 29.3%로 조사가 됐습니다. 굉장히 저조한 수준이라고 보여 지는데요. 이게 어쨌든 구매보조를 줬으면 실제로 집행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 된 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서울시를 비롯해서 일부 지자체가 그냥 수요자가 신청할 때 신청 받아서 공급하는 게 아니고 일괄 공모를 하는 절차를 거쳐 운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괄 공모가 연초에 공고가 되면 그래도 많이 집행이 됐을 텐데 대개 계획 수립하고 수요조사하고 하다 보니까 하반기에 돼 가지고 실질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었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모든 지자체가 공고 절차는 이제 폐지하고 수시 신청에 의해서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신보라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예산의 수립도 그렇고 그런 집행 과정에서 드러날 수 있는 문제들이 여러 측면에서 조금 감안이 됐었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게 예산 편성에서 충분히 고려될 수 있었던 사안은 아니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걱정 소요나 이런 측면을 예측하지 못한 것 아닙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전기자동차의 한계점을 아직 극복 못 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자동차를 이용한다는 것은 시간과의 싸움으로 자동차를 이용하는데 100km, 130km 가 가지고 충전하는데 30분씩, 급속 충전을 해도 30분씩 기다려야 되거든요. 이것이 큰 장애 요인이 되고요.

그다음에 가격차는 보조를 해 준다 하더라도 배터리가 수명이 있습니다. 우리 핸드폰을 써 보셔도 그렇지만 처음에는 장시간 쓰지만 금방 수명이 짧아지잖아요? 이것도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배터리를 교환해 줘야 되는데 이 배터리 교환 비용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등등 여러 가지 한계가 있어서 지금 그렇고 그다음에 닻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의 문제인데 충전소가 충분하냐, 충분한 밀도로 있냐 이러면 그런 대로 또 탈 텐데 충전소가 지금 있는 것도 아직 이용이 안 되는 측면이 많이 있지만 그건 보급 대수와 충전

소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지금 그렇습니다.

○**신보라 위원** 그러니까 그런 현실들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그 현실을 감안하지 못하고 수요만 높게 잡은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 또 사실상 보면 2010년에는 100만 대로 잡았다가 2014년도에는 그래서 좀 집행이 잘 안 되니까 20만 대로 조정을 했다가 최근에 또 미세먼지가 굉장한 문제가 되니까 6월에는 20만 대……

○**환경부장관 윤성규** 25만 대로 했습니다.

○**신보라 위원** 25만 대까지 늘리겠다고 말씀 하셨다가 또 7월 초에는 회의를 하셔서 전기자동차를 포함해서 150만 대까지 늘리겠다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들이 뭔가 지속……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가능하고 일관성 있는 정책으로 수립된다고보다는 좀 목표가 부재하고 소요를 감안하지 못하는 부실한 집행으로 이어지는 것 아닌가, 뭔가 일관성 없는 계획과 집행으로 보이거든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그런 지적을 받을 만합니다. 2010년도에는 전 세계가 전기차 레이스를 벌이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또 배터리 제조 기술의 강국이고 해서 의욕적인 목표를 설정했는데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기술적 한계가 있다 보니까 실제 시장이 그렇게 작동 안 해서 현실화하는 조정 과정을 거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신보라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최근에 미국이나 중국은 전기차 보조금을 원래 한 2000년대부터 추진했다가 그걸 요즘 좀 줄였더니 아예 차량 판매량이 급감하는 문제가 또 발생을 하던데, 지금은 보조금을 많이 만들어서 주고 있는 상황이지만 언제고 계속 보조금을 줄 수는 없지 않을까 싶은데 이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과 비전을 가지고 전기자동차에 대한 문제를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부장관 윤성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결국 전기차를 이용하게 하려면 그런 기술적인 한계라든가 또는 비용 부담 이런 것하고 그다음에 전기료를 좀 싸게 주고 있는데 그런 연료비에 있어서의 인센티브 이런 게 전체적으로 합해가지고 휘발유차나 경유차하고 경쟁 상대가 되게끔 이렇게 조건을 계속 조정을 해 나가야 됩니

다. 그래서 저희도 시장을 보면서 그런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영표** 신보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당 이상돈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돈 위원** 국민의당 이상돈입니다.

환경부장관께 한두 가지 여쭙겠습니다.

우리나라 수도권 대기보전 정책에서 중요한 정책이 많지만 그중의 하나는 역시 사업장 총량관리제지요.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수도권에서 질소산화물 녹스(NOx)와 그다음에 황산화물 속스(SOx) 2개 규제하는데 총량 규제를 시행한 2008년부터 보게 되면 사실상 할당량이 너무 많아서 그런지 배출량이 거의 줄지를 았았습니다. 이걸 환경부의 자료니까 인정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속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황산화물도 할당량이 많아서 그런지 배출량이 준 적은 없습니다. 다만 2004년에 비해서 2008년까지는 배출량이 준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법은, 또한 그러다 보니까 법을 위반해서 과징금을 매긴 사례도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2015년 한 해 동안의 예산을 보니까 사업장 총량관리제를 위해서 환경부는 72억의 예산을 쓴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게, 현재 초과 과징금 부과도 이렇게 실적이 없고 한데 그러면 과연 총량관리제가 실효성이 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고요.

또 하나는 현재 먼지요. 수도권 대기법에 보면 속스, 녹스 외에도 먼지가 대상 항목으로 돼 있지요. 장관님 잘 아실 겁니다, 처음부터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을 유보했고, 지금까지 먼지는 여기 법에는 확실하게 돼 있는데 환경부가 유보하고 사실상 지금 하고 있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위법 상태가 있는 건데요. 물론 먼지 배출이 전체 먼지 배출에서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것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법에 있는 걸 갖다 이렇게 안 하고 거의 8년을 왔다, 앞으로도 계속 안 할 건지, 그렇다면 우리 환노위가 법을 개정해서 먼지를 뺄 것인지, 그 두 가지 좀 간단히 말씀해 주시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지금까지는 실제 결산을 해 보면 배출량보다 할당량이 많아 가지고 상대적으로 업체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아도 되는 이런 상황이 계속돼 왔습니

다. 그러나 그 여유율이 그래프에서 제시해 주신 대로 계속 줄어들고 있고 저희들이 그걸 줄여 나가서 궁극적으로는 100 대 100 아니면 100 대 80 이하로 내려가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실효성이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먼지와 관련해서는 현재 우리가 PM10, PM2.5라고 하는 미세먼지가 있는데 굴뚝에서는 그게 50 μ m 이하가 TSP라고 해서 규제 대상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대기 중에 우리가 의미를 갖고 있는 미세먼지하고 상관성이 업체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있고 등등 해서 이 부분은 좀 연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를 들면 규제 대상 항목을 TSP가 아니라 PM10 또는 요즘은 나노 물질까지 제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먼저 이론적으로 정립을 한 다음에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돈 위원 8년 동안 연구했는데 또 연구하겠다 그런 말씀입니까? 그건 그냥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이상돈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환경부 예산안한 절반이 수질개선 예산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그렇습니다.

○이상돈 위원 그래서 매년 한 3조 들어가는데요. 그러나 그 결과를 볼 것 같으면 우리나라 4대강 하천은 여름 되면 녹조가 돼서 썩어 나가는 게, 악취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많은 예산을 넣어도 보가 있는 한 그야말로 밑 빠진 독에다가 물 붓기 아니냐는 말이지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통계를 보게 되면 남조류, 여름철만 할 것 같으면 이게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과연 이렇게 계속 보를 놔두고서 예산 써봤자 효과가 뭐 있느냐 하는 것이고 이러한 상황이라면 낙동강 주민들은 물이용부담금을 과연 낼 필요가 있느냐, 저런 더러운 물로 상수원 만드는데 하는 것이고.

윤 장관께서는 4대강 수질 개선 위해서는 보 철거도 한 방법이라고 청문회 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다만 단서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지난 4·13 총선 때 여기도 야당이 과반을 훌쩍 넘었지요.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야당이 여소야대가 됐고 정당 투표에서는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야 3당이 3분의 2가 됐습니다.

이 정도면 국민적 합의가 있는 게 아닌지, 그렇다면 장관 약속대로 보를 해체해야 되는 것 아닌가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환경부장관 윤성규 4대강 녹조와 관련해서는 대개 4대강 사업 하기 전에는 하류지역에 보가 있는 데는 녹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류는 지금보다는 상대적으로 약했는데 지금은 중상류 지역에도 보가 있다 보니까 중상류 지역까지 녹조가 생기는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 보면 또 BOD나 이런 측면은 하류로 갈수록 과거에 나빠졌는데 지금은 그런 측면에서 하류는 또 수질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게 서로 이렇게 경합이 되고 있는데 녹조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또 식수에 거기에서 분비되는 독성 물질이 안 들어가도록 고도처리하는 이런 것을 잘 관리하면 저희들이 안전한 식수 공급에는 문제가 없도록 할 수 있다 하는 자신감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 철거와 관련해서는 그런 합의 위의 문제는 결국 돈의 문제고요. 또 하나는 그렇게 했을 때 과연 원상 복구가 되는 거냐, 모든 하상이 지금 역사다리꼴로 깎여 있습니다. 거기에는 과거에 바위도 있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견고한 지반도 있었을 텐데 이것을 보만 철거한다고 그 하상이 원 상태로 돌아오나 이걸 아니거든요. 그래서 또 다른 제3의 형태의 생태가 생길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선 결정적인 문제가 있는지를 좀 살펴보는 이런 과정이 좀 더 있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영표 이상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송옥주 위원 환경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미세먼지 특별대책 세부이행계획과 관련하여 정부의 발표에 의하면 노후 경유차를 폐차할 경우에 신차를 구매하면 보조금을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신차 구입 보조금 지원 대상에 경유차가 포함되어 있는 것 아시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세금을 감면, 감경을 해 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홍영표 위원장, 한정에 간사와 사회교대)

○**송옥주 위원** 세금 감면과 보조금 포함시켜서요, 보조금을 다시 받을 경우에 경유차를 다시 구입하는 게 가능합니다. 벌써부터 자동차 업계에서는 구입하는 차량이 승용차라면 휘발유차이건 경유차이건 세단이건 SUV형이건 관계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혹시 저 광고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미처 못 봤습니다.

○**송옥주 위원** 이게 과연 경유차의 미세먼지 감축이라는 제도 원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우선 세금 감경 대상은 2006년도 이전에 나온 경유차를 지금 유로6 승용차로 바꿀 때에 한해서만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미세먼지 배출이 한 8분의 1 이렇게 줄어듭니다.

○**송옥주 위원** 기준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차종에 대한 범위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아시겠지만 경유차가 연비가 좋아 경유차 운전자에게는 상당히 매력적일 수밖에 없는데 이번 정책에 따라서 신규로 차량을 구입하는 경유차의 경우에는 10년 후에 다시 노후 경유차가 되면 그때도 대기환경 문제가 크게 개선되지 않는다면 또다시 세금 혜택이나 보조금 제도들을 뒤야 되는 상황이 도래되지 않겠습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그 부분은 그 대책에 보면 또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방안에 대해서 4대 연구기관이 공동 연구하고 그 방안을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아마 어떤 경우에는 경유의 가격차로 인한 인센티브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소비자들이 충분히 감안을 하고 사실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요.

○**송옥주 위원** 예, 제가 질문시간 때문에 거기까지만 듣고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또한 경유차를 폐차하는 소비자가 친환경차를 구매하도록 유도해야 되는 게 환경부의 업무인 거 같은데요, 이러한 인센티브는 이번 대책에 빠져 있습니다. 당장 법안이 통과되어 시행될 텐데 그때, 소비자들의 선택을 잘못이라고 그때서야 탓하시겠습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지금 친환경차에 대해서는 이번에 전기차도 예를 들면 200만 원 이렇게 구매보조금을 더 지원하는 걸로 돼 있고, 또 예를

들면 CNG버스 같은 경우에도 구매보조를 해 주는 한편 유가차액 이런 거 지원하는 것도 지금 대책 안에 들어가 있고, 또 예를 들면 하이브리드차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 잘 팔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내에서 내는 차종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잘 팔리고 있어서 친환경차는 이런 대책이 시행이 되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옥주 위원** 저희가 지금 분석하기로는 현재 노후경유차 폐차 지원사업과 친환경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동시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대책과 같이 노후경유차 폐차 지원사업 따로, 친환경차 보조금 지원사업 따로 연계된다면 이게 전형적인 세금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근시안적 정책 사례로 남는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경유차에 대해서는 이게 6개월 한시적으로 지금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세금 감면을요. 그래서 이게 뭐 항구적으로 하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옥주 위원** 그리고 2020년까지 친환경차에 대한 보조금으로 3조 원을 투자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이 지금 없는 거 같고요, 재정 당국과의 협의도 끝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때까지 아시겠지만 전기차 25만 대, 수소차 1만 대, 하이브리드차 124만 대를 보급한다는 계획인데요. 재원에 대한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보급 목표가 너무 과다하게 설정된 거 아닙니까? 2015년 하이브리드 차량 보급사업의 예상집행률이 53.9%에 불과한데 시장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집행을 수행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재설정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금년에 전기차는 또 뭐 아이오닉이라든지 이런 게 나와서 전기차도 국산차가 다양하게 고를 수 있게 됐고, 또 하이브리드차 같은 경우에도 차종이 다양화되면서 하이브리드차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5만 대 가까이 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목표한 것은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고, 그래서 목표를 조금 의욕적으로 가지고 가는 것이 나쁘진 않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송옥주 위원** 마지막 마무리 발언만 할게요.

환경문제는 오염자 부담 원칙에 관한 미세먼지 발생원인 중에 경유차와 석탄화력발전이 대한 수 요관리 등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환경 비용을 지불하는 원칙이 준수되어야 하는데 이번 특별대책과 세부이행계획에는 그러한 원칙이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개별 부처 간의 입장 조율이 끝나지 않은 채 발표에 급급한 모습을 보여 미세먼지 대책의 컨트롤타워의 부재를 재확인 한 바 있습니다. 더 큰 우려는 이행일정은 현 정부가 조정하지만 구체적인 시행은 다음 정부로 넘김으로써 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에 대한 우려가 남습니다.

대체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국민들은 어리둥절 할 뿐인데요.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담은 세부계획을 국회에 다시 한 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 윤성규** 미세먼지를 비롯해서 환경 문제는 어느 단시일 내에 결과가 나오기는 쉽지 않습니다. 지금 대책을 수립한 거에 대해서도 현 정부에서 시행할 것은 바로 시행을 할 겁니다. 예를 들면 전기차 200만 원 하는 부분도 지금 바로 시행에 들어갔고요, 또 경유차 세금 감경해 주는 것도 곧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현 정부에서 시작할 수 있는 건 다 시작이 됩니다.

저희들이 또 원인자 부담 원칙에 대해서도 두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직접 규제를 해 가지고 오염을 덜 내보내게 할 때 그 처리하는 비용을 자기가 진다면 그것도 원인자 부담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번 예를 들면 석탄화력발전 같은 경우 이 경우에도 신규는 영흥도 수준으로 규제하겠다 이렇게 9기를 지금 하기로 했고요, 또 폐지를 10기 노후를 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도 어찌 보면 더 쓸 수 있는 것을 폐지한다는 것은 그게 원인자 부담 원칙의 일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정애** 송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임이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이자 위원**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임이자 위원입니다.

세출도 중요하지만 세입 또한 상당히 중요한 거 같습니다.

환경부장관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세입 관련돼 가지고.

지난 2015년 9월 4일부터 20일간 감사원의 감사 받으셨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대기 분야.

○**임이자 위원** 그래서 올 2월 달에 그 감사 결과에 대해서 통보받으셨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임이자 위원** 내용이 뭐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대기 분야 감사인데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습니다.

○**임이자 위원** 아니,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국고보조금 관리 및 집행 실태에 대해서,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제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그 내용이……

○**임이자 위원** 감사원 내용을 기억을 못 하십니까, 감사받은 내용을?

○**환경부장관 윤성규** 감사원……

○**임이자 위원** 다른 사람이 답변하십시오, 그러면. 아시는 분이.

저는 지금 환경부 세입 관련돼 가지고 직무태만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감사 내용이 뭐였지요?

○**환경부기후대기정책관 나정균** 저희가 수도권 대기, 지금 수도권 대기환경 기본계획에 대한 그런 감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임이자 위원** 국고보조금 관리, 관리금에 관해서 말씀드리는……

○**환경부기후대기정책관 나정균** 그러니까 수도권 대책의 국고보조금 관리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임이자 위원** 예, 집행실태 감사, 말씀……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우리가 국고보조금을 주게 되면 환경관리공단에서 대응을 하고 나서, 물론 지자체에서 먼저 받아 갖고 주는 거겠지요? 그리고 나면 집행 잔액에 대해서는 이자와 이런 것을 갖다가 다 다시 국고로 반납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그것이 간접보조, 직접보

조가 있는데요. 간접보조의 경우에는 이자분을 회수를, 회수 대상에서 제외돼 있습니다. 그게 기재부에서 정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보면 '간접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는 보조사업자의 세입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서……

○**임이자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서면으로 서로 주고받기로 하고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임이자 위원** 그다음에 우리 법정부담금 관리 관련해 가지고 9000억 이상이 지금 미수납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미수납요?

○**임이자 위원** 예. 그렇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임이자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저희들이 지자체하고 꾸준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임이자 위원** 꾸준히 노력해 갖고 이렇게 9000억 정도 미수납이 발생하는 겁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그중에서 고질적인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2~3년 전에 이미 체납이 된 것들이 계속해서 체납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임이자 위원** 그래서 시효 지나면 그냥 또 불수납 처리해 버리고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그중에 불납 처리 대상이 되는 경우는 불납 처리를 해야 되는데 또 실제로 불납 처리를 잘 안 하고 있어서 이게 계속해서 또……

(한정애 간사, 홍영표 위원장과 사회교대)

○**임이자 위원** 시효 지나면 어차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임이자 위원** 시효가 지나면 어차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그건 시효라고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불납 처리를 해야만 불납이 됩니다.

○**임이자 위원** 그리고 지금 환경부는 일반 전입금에서 거의, 일반 전출금을 받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사업을 집행하고 있는데, 자체에서 얼마든지 이렇게 우리가 세입을 잘 받아들여 가지고 더 좋은 사업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 대해서 노력을 전혀 안 하는 거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지자체하고 꾸준히 노력하는데……

○**임이자 위원** 어떻게 노력했는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환경부장관 윤성규** 우선 납부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행자부의 세금 내는 제도 여기에 같이 낼 수 있게끔 한다든지 또 지자체에다가 징수 금액에 대한 징수비용 지원을 많이 하면, 많이 징수할수록 인센티브를 줘서 더 교부금을 많이 주는 방식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만 이게 안 되는 것은 예를 들면 경유차다, 경유차 부담금을 과거에 물렸는데 이 경유차 부담금이 사업자들이 굉장히 영세하다 보니까 이게 폐차해 버리고 또 문 닫아 버리고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어디 가서 찾을 길이 없습니다. 이런 중소기업들에는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임이자 위원** 그러면 장관님, 그렇게 중언부언하지 마시고요.

아, 자료 찾으셨어요, 아까 그 감사원 감사 내용에 대해서? 못 찾았어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그거는 아닙니다.

○**임이자 위원** 그거 아닙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임이자 위원** 중언부언하지 마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뭘 어떻게 노력했는지 본 의원실로 서면으로 답변해서 좀 주십시오. 이 세입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세입 관련돼 갖고 좀 명확하게 뭘 노력했는지 한번 정확하게 명시해서 갖고 서면으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 윤성규** 간단히 뭐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이자 위원** 아니, 그냥 서면으로 답변 주세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영표** 임 위원님, 끝났습니까?

○**임이자 위원** 예.

○**위원장 홍영표**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새누리당의 행사 관계로 결산심사를 잠시 중단했다가 오후 3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영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위원장이 되면서 20대 국회 우리 상임위에서는 반드시 회의는 정시에 시작하려고 노력했고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불가피하게 새누리당의 일정으로 좀 30분 늦어졌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부터는 저희 상임위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반드시 정시에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회의에 마무리하지 못한 대체토론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왕시·과천시 신창현 위원 질의하십니까.

○신창현 **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장관님?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신창현 **위원** 김영훈 물환경국장 혹시 오늘 나오셨어요?

○환경부물환경정책국장 **김영훈** 예.

○신창현 **위원** 2005년도에 보직이 뒤편이었어요?

○환경부물환경정책국장 **김영훈** 유해물질과장……

○신창현 **위원** 유해물질과장요?

○환경부물환경정책국장 **김영훈** 예.

○신창현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때 이런 용역보고서 혹시 기억나십니까, ‘가정용 Biocid 제품의 관리방안’?

○환경부물환경정책국장 **김영훈** 예.

○신창현 **위원** 기억나세요?

○환경부물환경정책국장 **김영훈** 예.

○신창현 **위원** 저는 이 보고서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 보고서를 좀 눈여겨봤더라면…… 그때 이 보고서 용역비가 얼마였나요?

○환경부물환경정책국장 **김영훈** 금액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1억은 아니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신창현 **위원** 얼마였어요?

○환경부물환경정책국장 **김영훈** 2900만 원.

○신창현 **위원** 2900만 원짜리 정말 험값 용역을 가지고 우리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막을 수 있지

않았으나 하는 아쉬움이 너무 짙게 들어서 제가 여기에 있는 요약문 중에 몇 단락만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잠깐 읽어 드릴게요.

요약문, ‘이에 가정용 biocide(살균·소독)제품의 사용으로 인한 노출로 소비자(특히 어린이, 주부, 노약자 등 민감계층)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제품의 유효성분, 유해성, 유통·관리실태 등 조사 후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자 한다’, 그 밑에 biocide의 정의에 ‘비농업용 농약. 사람이나 동물을 제외하고 모든 유해한 생물 제거를 위해 비농업용으로 사용되는 물질을 의미하며 비농업용으로 사용되는 살충제, 살균제, 소독제, 향균제 등등’, 지금 환경부가 위해우려제품으로 다 지정하고 있는 15개 제품들입니다. 이게 2005년 보고서에 있었어요.

그 요약문 3쪽에 보면 ‘현장조사를 통해 확인된 관련 제품의 표시사항(labeling)은 산자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성분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대부분 제품 사용 전 주의사항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지 않거나 유해화학물질관리법상 유독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이에 대한 표시가 없어 소비자 안전이 우려된다’…… 제가 지난번 환경부 업무보고 때 질의한 그 내용의 맥락입니다.

같은 내용이 또 나오는데요, 또 4쪽에 보면 ‘새로운 법 제정이 아닌 현행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및 관련법령을 정비하는 수준에서의 유해제품에 대한 정보수집의 방법으로 2006년부터 시행되는 제조 또는 수입화학물질에 대한 확인제도(법 9조)에 가정용 제품을 포함하여 필요한 경우 업체에 제품에 대한 자료를 보고·제출(법 45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미 이때 이런 가습기살균제 사고를 막을 수 있는 중요한 제도개선까지 건의를 했어요.

이건 5쪽입니다, 요약문의. ‘산자부와 협조하여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표시 대상의 제품범위를 가정용 화학제품으로 확대하고, 표시내용에 사전 주의사항, 제품의 유해성을 간단명료하게 나타낼 수 있는 경고문구(signal word)’……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질의한 내용입니다, ‘이 제품은, 이 세정제는, 이 표백제는, 이 합성세제는 건강과 환경에 위해우려가 있는 제품입니다’ 그거 하나 표시하자. 그 얘기 벌써 2005년에 했어요, 보니까.

그 보고서 내용 중에 13쪽 보면 에어컨살균제,

가습기살균제가 있어요, 또. 가습기살균제의 내용에 옥시싹싹 가습기당번도 나오고 닥터OK안전가습, 가습기세정제, 가습기메이트, 가습기 당번 이 품목들이 다 나와요. 2005년도에 장관님, 2900만 원짜리 용역에.

왜 우리 환경부는 용역을 주면 용역 결과를 활용 안 합니까? 이것 궁금해요. 예산 들여서 용역 주시는 것 아니에요? 이 용역 줄 때는 이유가 있어서 주셨을 텐데 왜 이렇게 소중한 용역 결과를 보고받고도 아무 조치를 안 했는지, 우선 우리 김영훈 당시 담당 과장님 좀 얘기하시고 다음에 장관님 답변 좀 들겠습니다.

○**환경부물환경정책국장 김영훈** 그 당시에 용역을 하고 사실은 저희가 물질 관련 업무를 하고 있었고 제품에 관련된 업무는 산자부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자부에 같은 내용을 통보를 하고요, 관리 필요성이 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신창현 위원** 통보를 했어요?

○**환경부물환경정책국장 김영훈** 예.

○**신창현 위원** 이 보고서 내용을?

○**환경부물환경정책국장 김영훈** 예, 기술품질원에……

○**신창현 위원** 그 통보한 공문하고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환경부물환경정책국장 김영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창현 위원** 계속하세요.

○**환경부물환경정책국장 김영훈** 그렇게 하고, 이게 사실은 저희가 2800만 원짜리 용역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 조치해야 될 부분만 저희가 기술품질원 쪽에 요청을 하고 사실은 향후에 관리 필요성이 있다는 정도만 파악을 했지 정확한 가습기살균제, 그 당시에 얘기가 되고 이랬던 부분이 아니라서 정확한 사실관계는 파악을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신창현 위원** 장관님 답변하실 때, 이제 그 당시 담당 과장님 말씀 들었는데 이 보고서를 무슨 교육부에서 한 것도 아니고 농림해양수산부에서 한 것도 아니고 환경부에서 용역을 줘서 한 결과잖아요. 지금 김영훈 국장님이 그 당시에 산업부 산하의 기술표준원에다가 통보를 했다고 하셨는

데 그것으로 끝냈습니까? 장관님 좀 답변해 주세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그 부분은 저도 그동안 간간히 문제 제기가 되어 가지고 알고 있었는데요. 이제 그 안에 보면 PHMG라는 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 PHMG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물질에 대해서 유럽연합이 정한 건강영향지수라고 해서 휴먼 헬스 이펙트(human health effect)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평가를 했어요. 그런데 PHMG에 대해서는 그게 0으로 나옵니다, 그 평가에 보면.

그래서 이게 2900만 원짜리 가지고 용역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도 깊이 있게 하지 못하니까 분명히 제가 볼 때는 0은 아닐 텐데 0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도 아마 그런, 0으로 나오고 하다 보니까 PHMG는 우리 환경부로서도 그렇고 그렇게 의미 있는 것으로 안 봤던 것 같고요. 그러면서 중간점검 회의에 산업부를 대표해서 기술표준원에서도 참석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그것은 화학물질 자체에 대해서는 연구하더라도 그것을 이용한 제품에 대해서는 산업부가 관리를 하니까 그것은 그렇게 영역을 나누자라고 그 담당이 와서 얘기를 한 게 있고 그래서 최종 결과는 그쪽으로 공문으로 통보해 준 것으로 저희가 보고를 받았습시다.

○**신창현 위원** 위원장님, 한마디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영표** 예, 그러십시오.

○**신창현 위원** 지금 PHMG를 자꾸 얘기하시는데 제가 여쭙 보고자 하는 요지는 PHMG가 아닙니다. 그 보고서 13쪽에 보면 '표 5' 해 가지고 대형마트에서 판매되는 가정용 살균성분 함유제품이라고 해서 목록들이 죽 있거든요. 그러면 2005년도에는 이 용역을 수행한 용역기관도 PHMG가 이렇게 문제 될 것이라는 것을 몰랐지요.

이 용역기관은 여기 지금 아까 불러드린 삼성 테스코의 가습기당번, 애정의 가습기메이트, 까르푸의 가습기세정제, 주식회사 옥시의 옥시싹싹 가습기당번 같은 제품들을 정부도 아닌 이 연구용역 업체가 2800만 원 받아 가지고서 대형마트 가서 조사해 가지고 이런 보고서를 냈는데 이런 소중한 보고서를 왜 그렇게 소홀히 했느냐 이겁니다.

그냥 기술표준원에다가 통보만 하고서 제품은 너네가 관리하니까 알아서 해라 그러실 바에야

뭐 하러 이 제품들에 대해서 용역을 줬는지 저는 그게 궁금해요. 그런데 더 자세한 내용은 아까 국장이 기술표준원에 줬다는 그 공문이랑 자료 보고 다시 다음에 기회 있으면 질의하겠습니다.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그러시지요.

○**위원장 홍영표** 이제 마무리해 주십시오.

신창현 위원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자료는 위원장한테도 제출을 해 주십시오.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영표** 다음은 새누리당 경북 구미시 을 출신 장석춘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석춘 위원**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경북 구미 을 장석춘 위원입니다.

심각한 미세먼지 해법 중 지름길 하나가 바로 저는 전기자동차 확대 보급이 상당히 지름길이라고 생각하고요. 전기자동차 활성화가 되면 이제 기존 휘발유 차량이라든지 경유차 이런 부분을 빨리 대체하고 해소해서 환경적인 요소가 상당히 개선된다고 보고 있고 또 이게 활성화됨으로 해가지고 전기자동차는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큰 부분을 차지해 가지고 경제성장의 견인 역할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제가 좀 한 가지 환경부에서 하는 부분에 좀 아쉽고 한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질문을 던질게요.

공단에서 설치한 급속충전기 있지요, 그렇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장석춘 위원** 그게 월 평균 충전 횟수를 보면 이용률이 저조한 것 다 아시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저조한 것들이 꽤 있습니다.

○**장석춘 위원** 3년 동안 데이터를 보니까 충전율이 하루에 1회 이하인 곳이 절반이 넘더라고요. 61% 정도 되는데, 이게 예산 대비해 가지고 효율성이 너무 떨어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위원님 말씀대로 가능하면 많이 사용되는 장소를 엄선해 가지고 거기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또 한쪽으로 보면 이게 지금은 좀 길어졌지만, 길어져도 아마 150km 가면 또 충전해야 되는데 일정 간격으로 100~150km 이내로 급속충전기가 깔릴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으로 보면 너무 많이 이용되는 것만 가지고 이렇게 위치를

잡는 것보다는 등간격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지금은 초기 단계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희들이 많이 이용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있으면 우선적으로는 좀 재배치를 하도록 할 겁니다.

○**장석춘 위원** 예. 제주도가 상당히 많이 보급되었잖아요, 그렇지요? 오늘 아침 뉴스 보니까 앞으로 계획 대비 보면 상당히 폭을 많이 넓혔는데 제주도하고 서울 비교하면 다른 지역하고 비교했을 때 제주도, 서울은 충전소가 더 있다고 그래도 상대적으로 많이 적다는 느낌이 있고요. 충전료를 무료로 했다가 올해 4월 달부터 유료가 됐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그렇습니다.

○**장석춘 위원** 유료가 되고 지원금도 작년의 1500만 원에서 올해 지원 안 하다가 오늘부터 1400만 원으로 다시 올랐지요, 그렇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장석춘 위원** 정책 일관성을 어떻게 내가 이해를 해야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 같으면 환경적인 요소를 보고 이것을 활성화시키려고 하면 오히려 무료로 하는 부분을 더 확대해 가지고 민간까지 지원을 해 가지고 보급률을 높여야 되는데, 하다가 다시 유료로 하고 또 가격도 올렸다가, 가격도 지원해 주다가 끊다가, 총량 때문에 그렇지요? 이번에 1400으로 다시 오늘부터 이게 적용되는데 저는 정부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좀 신뢰성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시하는데 간단히 답 좀 해 주 봐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우선 전기료에 대해서는 일관성이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전기료 내게 하겠다 이렇게 예고가 되어 있었고 그것을 금년에 들어와서 내게 했는데 전기료를 내더라도 전기요금도 굉장히 싸기 때문에 현재 휘발유나 이런 것에 비해서는 45% 값밖에 안 됩니다.

그다음에 이것을 계속해서 무료로 하는 경우에는 전기차가 많이 됐을 때 그 전기료는 그러면 누가 부담하느냐, 쓰는 사람은 무료로 쓰고 전기료를 누가 부담하느냐 하면 결국 전기차 이용하지 않는 일반 국민이 세금 내서 남의 전기료를 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초기 단계에서는 조금 저렴하더라도 전기료를 이 단계에서는 부과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부과하기 시작한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휘발유나 이것에 비

해서는 훨씬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또 전기차 구매비 지원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대로 좀 일관성이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1500만 원 했다가 금년에 1200만 원 했다가 또 1400으로 올렸는데 그런 부분은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장석춘 위원 제가 마무리 말씀 좀 할게요. 시간이 없어서 나머지는 서면질의로 대체할 것이고요.

환경문제가 이렇게 많이 전 국민적인 관심사고 현안 문제가 되고 오늘도 날은 상당히 안 좋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가 그걸 한번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스펙 안에 들어가더라고요, 이를테면. 그런데 앞으로 한국 사람 미래 먹거리에서부터 환경적인 요소를 다 가지고 있는 이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예산 투입을 해도 저는 그 예산이 결코 아깝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런 부분에서는 좀 정부 정책이 일관성 있고 좀 계획적이고 국민들한테 이런 부분이 와 닿을 수 있고 신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런 부분이 더 활성화될 수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제가 시간이 없어 가지고 서면으로 다시 질의 올리겠습니다.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좋은 지적 유념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석춘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영표 장석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출신 이용득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용득 위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위원입니다.

노후 경유차 필터클리닝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수도권 미세먼지 발생원인 중에 29%가 경유차의 배출가스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과학원 자료에 의하면 이 중에 77%가 노후 경유차가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갈수록 미세먼지 해소책의 중요성이 커지

고 있는데 지금 할 수 있는데도 안 하는 부분이 있어서 지적하는 겁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첫 번째 자료 한번 보실까요?

환경부는 매연저감장치가 지속적으로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필터 클리닝이 필요하다고 적시하셨는데 필터 클리닝이 중요하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그렇습니다.

○이용득 위원 다음 화면 보시지요.

필터 클리닝 실시율이 2015년에는 20.6%, 2014년에 22.2%에 불과합니다.

(홍영표 위원장, 한정에 간사와 사회교대)

매연저감장치가 장착된 노후 경유차 5대 중 4대는 필터를 청소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애초에 사업부터가 미비한 부분입니다. 환경부가 처음부터 필터 클리닝을 해야 되는 대상 차량을 고려해서 예산을 산정해야 하는데 필요 예산의 20%에 불과한 9억 원만 산정하고 집행하였습니다.

장관, 매연저감장치의 성능 유지를 위해서 환경부는 필터 클리닝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산이 부족하게 책정되는 것은 의지 부족 아닙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면 된다 이라면 저희들이 어떻게든지 많이 확보를 하겠는데 이게……

○이용득 위원 그러면 2017년도 예산은 어떻게 책정되어 있습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2017년도……

○이용득 위원 그것 또한 충분히 책정하지 않았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을 말씀드리면……

○이용득 위원 그런데요, 나중에 말씀해 주시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이용득 위원 다음 화면 넘어가지요.

매연저감장치 필터 클리닝의 전과 후입니다. 육안으로만 봐도 필터 클리닝을 안 했을 때 저감장치의 성능이 제대로 발휘하지 않는 걸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부 자료에 의하면 필터 클리닝을 했을 때는 91%의 매연 절감 효과가 있다고 했어요.

마지막 화면 한번 보시지요.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수도권 미세먼지 발생 주요인이 경유차가 29%로 가장 높습니다. 또 과학원 자료에 이 중 77%는 노후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원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미세먼지가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사안인데,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큰 예산이 드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책정되지 않을 것 같아서 애초 계획부터 잡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보이지가 않는데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그 말씀이 아니고요.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이게 촘촘하게 클리닝센터가 전국에 깔려 있으면 그래도 편하게 접근해서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우선 개소가 너무 적고요. 그래서 멀리 이동해서 가야 되는데, 또 가서 2, 3시간을 기다려서 이걸 하는 문제가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화물차 이런 걸 생계용으로 쓰는 사람들이 돈을 쥐도 싫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도 집행이 안 되는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용득 위원 그러면 그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아니에요? 어쨌든 대기질의 환경을 위해서 장관께서는 실질적인 예산을 확보하고 그걸 반영시키고 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봅니다.

○환경부장관 윤성규 그래서 지적하신 대로 공동 클리닝센터를 계속해서 확충해 나가는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곳곳에 클리닝센터가 들어서도록. 그래서 적어도 이동 시간만이라도 좀 줄일 수……

○이용득 위원 그래서 그 계획을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알겠습니다.

○이용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정애 이용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구 달서구병의 조원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진 위원 조금 전 신창현 위원님이 자료 요청…… 2005년 연구자료 관련, 또 그 연구자료 결과를 산자부에 주고 다른 부서에 준 게 있을 거예요. 그 자료도 우리 새누리당 위원들한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알겠습니다.

○조원진 위원 25쪽 한번 보시면 4대강 수계관리기금이 이렇게 있어요. 톤당 한강이 170원, 낙동강도 170원, 금강은 160원, 영산강은 170원인

데, 이 4대강 중에서 수돗물…… 환경부가 더 잘 아실 텐데 저는 낙동강의 지금 현재 수돗물은, 특히 대구·경북권은 거의 먹기 힘들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고요. 그 안에는 발암물질을 포함해서 29종 정도가 들어가 있고 화학물질이 1300종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가 문제겠어요? 원수의 문제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가격을 이렇게 받아도 되겠어요?

한강물 정도로 수돗물을, 저대로 만들어야 가격을 이렇게 받지 어떻게 물 질은 가장 나쁜 수돗물인데 가격을 똑같이 받습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이 부분은 중앙정부가 받는 것이 아니고요, 낙동강 수계 상·하류 간의……

○조원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환경부에서 체크를 정확하게 하셔야 되잖아요. 구미공단에서 전자제품·IT제품 세척제는 발암물질이 섞이지 않습니까? 현재의 필터, 지금의 정수시설로는 그 발암물질을 필터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제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환경부가 그거 속인다고 되겠습니까?

환경부가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해서 더 이상 이 물은…… 지표수를 먹는 지역이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한 20%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야 됩니다.

○환경부장관 윤성규 우리는 지표수로 거의 90% 이상이 먹고 있습니다.

○조원진 위원 아니요, 강물을 정수해서 먹는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낙동강 이런 부분들을 따지고 보면 상류로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수 자체를?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환경부에서 좀 더……

이게 몇 년 지난 얘기입니까, 벌써? 그 내용을 다 알면서도 환경부가 못 밀어붙이는 거예요. 과연 이 물을 그대로 먹어도 될지 이 부분에 대한 연구를 좀 하셔야 됩니다. 물론 지역 갈등 때문에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저희도 다 아는 사실이고, 그렇지요?

두 번째는 어제 전기자동차 국내 25만 대, 수출 20만 대, 45만 대 하시겠다고 발표를 하셨잖아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조원진 위원 그러면 리튬이 얼마 정도 들어가는 겁니까, 이게? 전기자동차 1대가, 보통 우리 핸드폰 1만 대가 자동차 1대 정도의 리튬이 들어

가거든요. 그래서 환경부가 이렇게 환경 정책을 쓰지만 산자부 정책하고는 또 다른 거예요.

산자부는 해외자원 개발 문제를, 벌써 불리비아 리튬광산 다 포기해 버렸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뭐가 되느냐? 외국 돈만 더 벌여 줍니다. 전기자동차 생산하는 데 전체 자동차 가격의 반 가까이 가는 리튬 전기배터리 가격은 외국에다 놔 놓고 하면 결국 외국에서 리튬 공급 안 하면 우리 죽는 거잖아요.

이 문제를, 환경문제하고 우리 자동차 리튬 공급하는 문제를 각 부서 간에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장기적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로 공급을 할 수 있는지, 그렇지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해 주시고요.

LPG 일반 사용자 하태경 위원이 주장을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LPG 차도 LNG 차처럼 미세먼지가 이런 쪽에서는 굉장히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LPG 차도 경유차나 휘발유차의 대안으로 좋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조원진 위원** 자, 실질적으로 경유차에 비해서 한 30분의 1 정도의 미세먼지가 적게 나오는 게 LPG이고…… 지금 미국 셰일가스 그다음에 대운하 개통·확장하고 이런 것, 여러 가지 조건으로 LPG 가격이 굉장히 조정될 수 있는, 안정화시킬 수 있는 조건이 됐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사용하고 공급을 여러 군데 할 수 있는 공급망들이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제가 의문을 가지는 것은 환경부가 힘이 약한 거냐, 안 그러면 정유사의 어떤 로비에 의해서……

4년 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클린디젤 해 가지고 얼마나 정유사들이 그걸 들고 선전했습니까? 결국은 다 거짓말 아니에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면 그 거짓말 할 때는 산자부나 환경부는 뭐 했습니까? 그런 거짓말 다 하고 있을 때 환경부는 뭐 했냐 이거지.

결국은 정유사의 로비에 의해서 클린디젤 거짓말을 이 정부가, 그 전 정부도 그렇고 그 전 전 정부도 그렇고, 결국은 이런 사태가 벌어지니까 클린디젤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걸 주도했던 공무원들은 다 퇴직하고 결국은 국민들만 바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의미로 따져서 이번에 클린디젤 이런 애기 자꾸 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LPG 도입할 것 하고 전기차 만들 것, 그 대신에 확실하게 원재료선을 쥐고 전기차 공급을 확대하고 말이지요, 이런 부분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환경부가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LPG와 관련해서는 정부에서도 1차 논의가 있었습니다. 또 좀 더 부처별로 검토를 해 가지고 차기에 논의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이미 한 번 논의가 있었습니다.

○**조원진 위원** CNG도 마찬가지로입니다. CNG도 정유사 로비에 넘어가지 마세요. 가격이 안정되고…… 가격이 싼 CNG를 가지고 왜 안 된다고 자꾸 얘기하는 겁니까?

그래서 정책 자체를 미세먼지만이 아니고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정책이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 그렇지요? 수소차는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LPG, CNG 이런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이거지요. 그게 주도를 누가 해야 되냐? 환경부가 해야 되는 겁니다.

○**환경부장관 윤성규** 그래서 이번 대책에 CNG의 경우에는 구매비 보조도 들어가게 돼 있고, 또 아직은 구매비 보조해 주더라도 유지비, 기름값이 경유보다 비쌉니다. 그래서 그 차액도 보조해 주는 것을 검토하는 것이 지금 대책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대로 하면……

○**조원진 위원** 환경부의 용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

○**위원장대리 한정애** 조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河泰慶 위원** 기상청장님, 지진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만 여쭙 보겠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지진 걱정이 많고 언론에서도 다양한 시각들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단답형으로 한번 여쭙 볼게요.

지진 규모 7 이상이 한반도 인근에서 발생할 확률이 몇 년에 한 번 꼴로 나올 것 같습니까?

○**기상청장 고윤화** 현재 저희들 지진 관측 이래로는 없습니다. 그리고 일부 전문가들이 조선시대에, 지금부터 한 800년 전 이쯤 무렵……

○**河泰慶 위원** 그러면 제로네요, 제로, 청장님

의견은 제로?

○기상청장 고윤화 '7.0 정도의 지진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 정도의 얘기는 있습니다.

○河泰慶 위원 그러니까 거의 제로에 가깝다, 7 이상은?

○기상청장 고윤화 예,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河泰慶 위원 발생 안 할 것이다?

○기상청장 고윤화 예, 7.0 정도는 발생하기 힘들다……

○河泰慶 위원 6.5는요?

○기상청장 고윤화 6.0 이상 되는 지진은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이런 정도로 전문가들은……

○河泰慶 위원 가능성이 거의 없다?

○기상청장 고윤화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河泰慶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없었고 앞으로는 없을 가능성이 높다?

○기상청장 고윤화 그런데 단정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어렵습니다.

○河泰慶 위원 물론 그렇지요. 세상일이라는 게 그런데, 어쨌든 인간의 어떤 예측 능력 범위에서 볼 때 그 한에서는 거의 없다?

○기상청장 고윤화 안 난다는 보장은 없지만 조금 희박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河泰慶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번 지진은 활성단층이냐 어디냐 이거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어디서 발생했는지?

○기상청장 고윤화 이번 단층대는 자료에도 쓰시마하고 고토라는 지역의 단층대가 이렇게 연결 돼서, 동해 쪽으로 연결된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떤 부분이 활성화돼 있는지, 활성단층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정보는 사실 없습니다.

○河泰慶 위원 없다, 그건 예산이 많이 든다, 다 연구하려면?

○기상청장 고윤화 그렇습니다.

○河泰慶 위원 그러니까 아주 큰 하나의 단층대가 있는지, 아니면 조그마한 단층대가 여러 개 있는지 이런 것도 정확하게 잘 모른다?

○기상청장 고윤화 예, 그렇습니다.

○河泰慶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난문자서비스 있잖아요. 재난문자서비스는 진도 4 이상일 때만 보내는 거지요?

○기상청장 고윤화 예, 국민안전처에서……

○河泰慶 위원 보내는 거지요, 그렇지요?

○기상청장 고윤화 예.

○河泰慶 위원 그러면 진도가 3이다, 4다, 5다 이것도 국민안전처에서 판단하는 건가요?

○기상청장 고윤화 저희들이 정보는 제공을 해 줍니다. 지진관측망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정보가.

○河泰慶 위원 아니, 지진 규모는 기상청에서 파악을 하고 진도는 해당 지점의 여러 가지 구조물이라든지 여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면서요?

○기상청장 고윤화 그렇습니다.

(한정에 간사, 홍영표 위원장과 사회교대)

○河泰慶 위원 그러면 진도도 기상청에서 판단 하나요?

○기상청장 고윤화 진도 정보도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河泰慶 위원 그러면 울산 동구 바다에서 일어났을 때 뭐 제 지역구인 부산 해운대에서 진도가 얼마일 것이다 하는 것도 기상청에서 판단합니까?

○기상청장 고윤화 예, 자료 가지고 있습니다.

○河泰慶 위원 아니, 그러면 기상청에서 다 발송하면 되지 왜 그것을 안전처에서……

○기상청장 고윤화 현재 체계상 그건 국민안전처에서 담당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河泰慶 위원 그러면 해당 지역에서, 진도는 국민안전처에서 판단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네요?

○기상청장 고윤화 예, 정보는 저희들이 주고……

○河泰慶 위원 그러면 안전처에서 하는 일은 뭐니까? 진도를 평가하는 데 안전처에서 하는 역할은 뭐예요? 그냥 정보를 받아서 뿌리는 역할만 하는 거예요?

○기상청장 고윤화 예,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이고 사후에 대응하는 것은 전부 다 국민안전처 소관입니다.

○河泰慶 위원 그러니까 안전처에서 진도 수치를 매기는 데 부가적인, 애디드 벨류(added value)는 없네요? 그냥 뿌리는 것만 하네요, 뿌리는 것만?

○기상청장 고윤화 뿌리고 사후에 났을 경우에 여러 가지 피해라든지 창문이 깨지고 사람이 다치고 건물도 무너지고, 대응하는 역할을 합니다.

○河泰慶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상청에서 하면 되겠다,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 부산지역의 일부에는 재난문자서비스가 안 갔다고 하는데, 그것은 같은 부산이라도 어떤 지역은 4 이하고 4 이상 이렇게 구분이 가능합니까?

○기상청장 고윤화 가능합니다.

○河泰慶 위원 그러면……

○기상청장 고윤화 그런데 다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진계가 공간적으로 좀 더 조밀하게, 저희들이 깔아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은.

○河泰慶 위원 부산은 몇 개 있습니까?

○기상청장 고윤화 정확한 수치가……

○河泰慶 위원 대략, 대략.

○기상청장 고윤화 한 5개 정도 있습니다.

○河泰慶 위원 5개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진이 6, 7 이상 나면 해일이 따라오죠? 6인가요?

○기상청장 고윤화 6이 넘어가면 작은 해일이 같이……

○河泰慶 위원 영화 해운대 보면 해일이 오는데, 만약 해운대에 해일이 그렇게 온다고 하면 그것을 예측할 수 있습니까?

○기상청장 고윤화 예측할 수 있습니다.

○河泰慶 위원 얼마 전에 예측할 수 있습니까?

○기상청장 고윤화 그러니까 그건 진앙지 위치가, 지진이 어디서 발생했느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河泰慶 위원 만약에 울산에서 7 정도가 났다, 이번 발생한 위치에서, 그러면 어느 정도 전에 예측할 수 있습니까?

○기상청장 고윤화 그것은 저희들도 그렇게 시뮬레이션을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河泰慶 위원 그 자료 좀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기상청장 고윤화 그건 한번 저희들이 모의로 시뮬레이션해서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河泰慶 위원 예,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진이 한 6, 7 이상 났을 때 가장 타격이 큰 게 학교라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4·5층짜리 학교라고?

○기상청장 고윤화 꼭 4·5층이라서 안전하지 않고 고층빌딩이라고 해서 안전하고 이런 건 없는데요. 다만 건물이 지은 지가 오래된 건물들은 그런 부분들이, 골조라든지 이런 취약한 부분이

있는 것들이 더 취약하게 됩니다.

○河泰慶 위원 그러면 건물 층수하고는 통계적으로 별 인과관계는 없습니까?

○기상청장 고윤화 글썽요,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게 어떤 과학적으로 규명된 것은 제가 들어 보지 못했습니다.

○河泰慶 위원 안전처 시뮬레이션 자료에서 부산지역 해 보니까 4·5층짜리 건물이 제일 먼저 다 무너진다고 났다 하던데요.

○기상청장 고윤화 그런데 그건 아마 4·5층짜리 건물은 철골 구조물이 아니고 조적 식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철골 구조물 같은 게 좀 더 강하게 버티고요.

○河泰慶 위원 같은 4·5층이라도 벽돌 건물과 철골이 다르다 이 말이지요?

○기상청장 고윤화 그렇지요, 그런 부분이 다릅니다.

○河泰慶 위원 대부분 우리나라 4·5층은 벽돌로 되어 있다, 이렇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것이지요?

○기상청장 고윤화 최근에 지은 빌딩들은 내진 설계가 어느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河泰慶 위원 그런데 재난이 발생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학교 강당이나 이런 데로 가거든요. 지금도 재난대피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보면 가장 위험한 데에 가게 되어 있지요?

○기상청장 고윤화 그런데 학교라고 그래서 꼭 위험하고 다른 데는 위험하지 않고 이런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河泰慶 위원 대부분 벽돌로 되어 있으니까요. 우리나라 지금 학교가 대부분 벽돌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것을 바꿔야겠네요. 지진이 일어났을 때 학교로 가지 말라고 그래야겠네요. 지금 학교로 가라고 되어 있어요.

○기상청장 고윤화 어떤 건물에 어떤 구조이고 어떤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학교라서 꼭 위험하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河泰慶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영표 하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구를 출신 강병

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병원 위원 장관님, 아까 신창현 위원님의 2005년도 용역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면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만, 좀 아쉬움이 많이 남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제가 자료를 잠깐 봤는데요. 그 사람들이 2900만 원인가 갖고 하다 보니까 깊이 있게 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그러면서도 관련 부처들이 모여서 논의를 해 가면서 했고 그 제품에 대해서는 산업부 산하 기술표준원에서 참석하면서 자기들이 관리하겠다 이렇게 했던 것이기 때문에 투자 대비 효과는 있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강병원 위원 저는 지난번 질의 때 환경부는 미래부처이기 때문에 선제적 대응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주로 드렸었는데 아마 2005년의 그 용역보고서도 우리가 조금 더 지혜를 모아서 대응했다라면 최근의 안타까운 이런 인명이 죽는 사고는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화면 한번 보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폭스바겐이 배출가스 조작 차량을 통해 가지고 아주 전 세계를 상대로 사기를 쳤지요. 그런데 보면 미국 같은 경우는 자그마치 미국 소비자들에게 17조 이상을 배상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얼마의 과징금이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저희는 현재까지 141억 원을 부과해서 징수했습니다.

○강병원 위원 이것을 보는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속이 좀 터지겠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이해가 안 가실 텐데, 저 쪽하고 우리나라하고는……

○강병원 위원 법체계가 다른 것은 있는데, 속은 터질까요, 안 터질까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미국에 비해서는 처벌이 너무 약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강병원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것을 한번 보고 우리가 지혜를 한번 저는 짜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환경부를 타할 생각은 없습니다. 법이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그렇지요? 미래를 내다보고 다시는 우리 국민들을 상대로 어떤 기업이 사기치고 하는 일은 없게끔 우리가 방법을 한번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기환경보전법 56조에 보면 과징금 처분 조항이 나와 있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강병원 위원 1항을 보면 환경부장관은 자동차 제작자에 대해 매출액에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라고 했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강병원 위원 그러면 100분의 3이면 1조 정도에 대해서 매출 올린 사람이면 얼마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겁니까? 300억인가요? 300억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300억입니다.

○강병원 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이 경우 과징금의 금액은 10억 원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해놨네요. 왜 이렇게 10억 원이라고 확 줄여놨습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그것은 현재는 아니고 과거 법인데요……

○강병원 위원 과거 법인데요. 왜 그랬습니까? 이 조항이 없었으면 매출액의 100분의 3을 과징금으로 때릴 수 있는 것 아니었어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저것을 만들었던 2005년도인가 이때로 들어가서 제가 알 수는 없지만 그 당시에는 국내에 외제차가 그렇게 많이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강병원 위원 이게 외제차에만 해당되는 겁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외제차, 국산차 다 해당인데……

○강병원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2015년 12월 1일에 개정했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강병원 위원 모든 조항은 다 두고 이 경우 과징금의 금액은 100억 원을 초과할수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강병원 위원 이것을 10조 매출 올린 기업이 있다면 자그마치 3000억을 때릴 수 있는 것인데 왜 100억 원으로 또 한정해 놨습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그 부분도 당시 의원발의로 시작이 됐는데요, 10배 이상 증액이 되는 것이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직도 국내에 국산차가 훨씬 많습니니다. 이런 것을……

○강병원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산차 제조업체들을 많이 봐주신 모양이지요? ‘너희들이 대국민 사기를 쳐도 최대

한 100억이면 돼' 이런 것이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그런 게 아니고……

○**강병원 위원** 그럼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당시 고려는 미국이나 유럽은 자동차를 생산한 지가 120~130년씩 됐습니다.

○**강병원 위원** 국산차를 주로 생각하셨다면서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그런데 우리는 불과 30~40년도 안 됐기 때문에, 우리 차가 외제차를 잡아야 되는데 국산차부터 잡을 가능성도 있으니까 아마 이런 고려를 해서 한 것 같습니다.

○**강병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장 규모도 커졌고, 우리 대한민국 자동차업체가 세계에서 손가락 안에 드는 큰 대형업체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사고가 난 이후에 하신 거니까 이 과징금 금액을 1000억으로 혹은 5000억으로 늘릴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위원장님, 1분만 더 주십시오.

○**위원장 홍영표** 말씀하세요.

○**강병원 위원** 어떨까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여러 가지 논의를 할 수 있지요. 그런데 그때는 이게 정부안으로 입법이 된 게 아니라 의원발의 안으로 입법이 된 것인데요. 의원님들도 10배 올리는 저 선은 적정하겠다고 판단을 하셨습니다, 작년 12월에.

○**강병원 위원** 좋습니다.

올해 1월에 EU에서 폭스바겐의 전 세계 국민 사기극을 보고 과징금을 차량 대수당 부과하기로 한 것 아십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최종 아직 통과는 안 된 것 같은데, 저도 언론지상에서 본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강병원 위원** 대당 4000만 원, 300만 유로로 올린 것은 알고 계시지요? EU가 통과가 안 되는 이유는 집행위원회에서 이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EU라는 것은 국가연합체이기 때문에 각 국가 내에서 통과시키기가 힘들겠지요. 우리는 연합국은 아니지요. 우리가 만약에 이 조항을 바꾸어서 차량 대수로 해서 한 대당 4000만 원으로 바꾸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다시는 이제 폭스바겐 같

은 조항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강병원 위원** 그러니까 어렵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당했는데 이것을 보고 또 이렇게 할 기업은 없을 것 아닙니까? 우리나라 자동차산업도 이제 세계적인 수준이 됐기 때문에 이 조항을 손봐서 이제는 정말 이런 식으로 우리 국민들을 사기 치면 망한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서, 100분의 3 좋습니다. 그런데 100억이 아니라 대당 4000만 원, 3000만 유로로 바꾸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저는 이거 작년 12월에 개정했는데 100억 원만 해도 10배 올린 것이고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앞으로는 실도로검사가 있거든요. 실도로기준도 있고 해서 그러한 유의 조항은 이제 앞으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강병원 위원** 없으니까요. 없으니까 그렇게 해 놓으면 어떻겠어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그런데 이 부분이 다른 것들도 여러 가지가 여기에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적용을 해 보고……

○**강병원 위원** 아니, 이 법만 고치자는데 뭘 다른 것을 고민하십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아니, 그게 아니고 배출가스 조항은 실도로검사를 하기 때문에 이제는 생길 수가 없는데……

○**강병원 위원**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기업이……

이거 몰랐지 않습니까? 이런 새로운 방법으로 우리 국민들을 속일 수 있잖아요, 그리고 뒤늦게 밝혀질 수가 있고?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이 조항을 강화해 놓자라는 게 장관으로서 그렇게 힘듭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저는 개정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운영을 좀 더 해 보고 또 예를 들면 그런 우려가 예상될 때 해도 늦지는 않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강병원 위원** 폭스바겐이 그 배출가스 조작 차량으로 벌어들인 돈이 4조 4000억입니다. 과징금은 고작 141억 걸으셨어요. 창피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이 조항을 우리 국민들 어느 누구에게도 사기 치지 못하게끔 강화하자는데 그게 그렇게 여러 가지 이유를 대셔야 됩니까?

○위원장 **홍영표** 자, 이제 마무리해 주십시오.

○**환경부장관 윤성규** 개정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좀 운영을 해 보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영표** 강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문진국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문진국 위원** 기상청장님!

○**기상청장 고윤화** 예.

○**문진국 위원** 우선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국립기상과학원 연구원이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 겁니까?

○**기상청장 고윤화** 예?

○**문진국 위원** 국립기상과학원.

○**기상청장 고윤화** 아, 기상과학원이요?

○**문진국 위원** 예, 과학원이요.

그 연구원 업무들이 뭐를 주로 하는 겁니까?

○**기상청장 고윤화** 기상과학원에서는 기상청에서 수행하고 있는 예보 업무든 관측이든 그다음에 서비스든 그것과 관련된 연구를 해서 저희들을 지원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진국 위원** 그러면 그 연구원들이 중요한 일을 하는 겁니까?

○**기상청장 고윤화** 그렇습니다.

○**문진국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왜 그렇게 퇴사가 많습니까?

○**기상청장 고윤화** 과학원이 2015년도에 서울의 본청에 같이 있다가 공공기관 지방이전 프로그램에 의해서 제주도로 이전을 했습니다. 이전하기 그 직전부터 직원들이 유출되기 시작했구요. 또 내려가서, 제주도 가기 싫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지금 연구원을 모집하기도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문진국 위원** 그런데 지금 청장님이 그 연구원이 중요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벌써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이게 제가 봤을 때 자료 보면 한 5년 이상이 계속 지금 누적이 되어 있거든요, 인원이 충원이 안 돼 가지고.

그러면 청장님한테 제가 긴 얘기는 안 드리겠습니다. 연구원들이 이렇게 중요한 사람들이라면 빨리 인원을 충원시켜서—중요한 사람들이니까—업무를 좀 잘하도록 제가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

습니다. 충분히……

○**기상청장 고윤화** 제주도에 있는 한은 저희들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진국 위원** 그래도 어쨌든 채워야, 중요한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서요.

○**기상청장 고윤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제주도에 있는 것을 다시 서울로, 서울이든 기상청 근처로 오지 않는 한 그것은 거의 불가능한……

○**문진국 위원** 그것은 하여튼 청장님이 잘 좀 충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상청장 고윤화** 예,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문진국 위원** 다음에 이것은 장관님한테 좀 물을게요.

아까 우리 한 위원님께서 법정부담금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짚어 줘서 답을 안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환경부가 법정부담금 수납률이 2012년에 보면 47.4%에서 15년에는 49.9%로 소폭 증가, 개선이 되고 있는 것같이 보이는데요. 그 미납액이 매년 보면 9000억의 수준은 큰 변화는 없어요. 그런데 환경부는 이와 관련해서 해마다 대책을, 작년에도 한 것 같아요. 매년 하겠다고 약속은 꼭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대책의 효과가 지금까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원인이 됩니까? 지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 윤성규** 시간을 주시면, 첫째는 이것을 내는 게 억울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채수가 없어서 걸렸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골똥을 체크하거나 폐수 방류구를 체크해서 농도가 초과되니까 부과를 하게 되는데 억울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돈을 갖고 있어도 안 내는 경우가 생기고요.

또 이것을 분납을 신청을 해 가지고 길게는 3년까지 분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첫해 연도에 납부하는 금액이 굉장히 적고 결국은 체납으로 가게 됩니다.

○**문진국 위원** 그래서 제가 납부를 잘하는 사람들이 손해를 보지 않나, 바로 지금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법정 부담금 미수금액의 증가는 제도의 실효성을 의문시하게 할 뿐만 아니라 정부의 정책을 신뢰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법정부담금의 미수납액 증가에 따른 일

반회계 재정부담 확대 방지 및 부담금을 납부한 분들과의 공정성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지금 드리는 것인데,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님께서서는 방안을 어떻게 할지 답변을 좀 정확하게 해 주세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기본적으로 환경을 오염시킨 사람은 그거에 따른 부담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면제시켜 줄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것을 어떻게 하면 철저히 잘 징수해내냐 이게 중요한데 거기에는 일선 지자체가 부담금 감당 능력이 있는지, 다시 말하면 재산이 있는지 이런 것을 열심히 찾아 가지고 징수해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자체로 하여금 많이 거둘수록 징수교부금을 많이 주는 이런 제도를 계속해서 확충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문진국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 장관님이 말씀 주신 대로 좀 정확하게, 내는 사람만 손해가 나니까 그런 것을 좀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진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영표** 문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질의 마지막 순서로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구병 출신 한정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정에 위원** 윤성규 장관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먼저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게 2011년 11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동안 실험이 진행되었던 안전성평가연구소의 흡입독성센터에서 나온 결과물 중의 하나입니다. 그 보고서의 일부인데요. 질병관리본부에서 의뢰를 했지요.

거기에 보면 결론적으로 시험물질과 관련한 이상소견이 T1, T3군의—이게 PHMG, PGH와 관련된 거고요—후두, 비강 및 폐에서 관찰됐고 이들 장기에서 관찰된 변화는 시험물질들의 부작용으로 판단된다……

지금 가습기살균제와 관련된, PHMG나 PGH와 관련된 이상소견은 단순히 폐뿐 아니라—여기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후두하고 비강, 상기도에도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서에 적시를 했습니다.

적시를 하고, 그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를 했냐 하면, 이것을 좀 자세히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올해 초에 환경운동연합과 해당 시험에 참가를 했던 이규홍 센터장이 나눈 대담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당시 연구결과를 CMIT·MIT 성분 제품이 인체에 무해하다는 식으로 확대해석하면 안 된다. 우리 팀의 판단은 당시 실험조건에서 폐섬유화는 독성작용 확인이 안 됐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우리 연구팀은 동물실험 결과보고서 결론에서 CMIT·MIT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당시의 실험조건이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여러 농도에서 여러 장기에의 영향을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실 실험에 들어가기 전에 질병관리본부에 모인 전문가위원회에서 이미 만일 결과가 도출되지 않으면 추가실험을 한다라고 하는 합의도 있었다. 그러나 동물실험 이후에 그런 위원회의 합의와 우리 연구팀도 필요하다고 적시한 CMIT·MIT 추가 연구는 실험 이후부터—2011년 말이지요—2016년 6월 초인 현재까지 없었다’, 환경부는 이제 시작을 하신 거지요, 그렇지요? 이제 시작을 하신 겁니다.

이 결과 때문에 어떤 일이 나왔냐 하면, 그냥 그다음 화면 좀 보여 주십시오.

올해 국민연금에서 SK케미칼에, 국민연금이 SK케미칼에 주식투자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SK케미칼에다가 대책 마련을 요구를 합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관련해서 해당 연료를 가습기살균제로 사용할 때 그 안전성에 대하여 조사를 했거나 가습기살균제 제조업체에 유해성을 충분히 고지하였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귀사의 제조물 책임 정책과 관련하여 이번 사건에 대한 귀사의 입장과 대응방안에 대해서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올해 5월 달에 국민연금공단에서 SK케미칼에 보냈습니다. SK케미칼은 아시다시피 CMIT·MIT를 주원료로 하는 가습기살균제 제조업체였지요. 여기에 대해 SK케미칼은 질병관리본부에…… 다른 것 다 생략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가습기살균제에 대해 9개월간 이런저런 조사를 거쳐서, 흡입독성시험을 거쳐서 CMIT·MIT 성분의 가습기살균제는 폐섬유화 소견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라고 하는

그 당시 질병관리본부에서 어찌 보면 축소하고 일정부분 완전하게 확인이 되지 않은 결과보고를 최종발표를 하는 바람에 실제로는 SK케미칼에 면죄부를 쥐 버렸습니다.

장관님, CMIT·MIT 단독 사용자 중에서, 살균제로서 단독 사용자 중에서 사망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한 명 있습니다.

○**한정애 위원** 다섯 명입니다. 단독 사용자……

○**환경부장관 윤성규** 인정된 사람 중에는 한 명……

○**한정애 위원** 단독 사용자 36명 중에서 5명이 사망을 했고요.

CMIT·MIT 단독 사용자 중 1, 2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세 명 있습니다.

○**한정애 위원**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CMIT·MIT를 사용한 사람들에 있어서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서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폐섬유화 또는 폐질환이 역학조사로서는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지금 1단계 내지 4단계는 역학조사는 아니고 그것을 판정기준에 따라서 판정하는 겁니다.

○**한정애 위원** 그 판정기준이라고 하는 게 그 당시 행해졌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질병관리본부가 의뢰하고 흡입독성센터에서 결과를 만들어냈었던, 그래서 PGH, PHMG만 폐섬유화라고 하는 아주 축소된 결과를 가지고 등급을 결국은 만들어서 한 것인데 그 결과, 질병관리본부에서 그렇게 협소하게 축소하여서 사실은 결과물을 발표하는 바람에 CMIT·MIT로 피해를 본 당사자들 그리고 폐 이외의 장기에서조차도 문제가 있다라고 이미 적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외의 장기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는 3등급 아니면 4등급이라고 하는 판정을 내서 실질적으로 굉장히 축소된 상태에서 판정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지금 판정위원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CMIT·MIT 단독으로 쓴 사람도 세 명을 1, 2단계로 판정을 했고 그중에 한 명은 죽었습니다. 그래서 CMIT·MIT 용액은 무조건

3단계, 4단계로 판정되는 게 아닙니다.

○**한정애 위원** 무조건 3단계, 4단계로 판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주로 폐섬유화와 관련해서만 문제를 삼고 있고……

○**환경부장관 윤성규** 지금까지는 폐섬유화가……

○**한정애 위원** 폐 이외의 장기에……

그렇지요. 지금까지 그래 왔지요. 제가 문제를 삼는 것은 지금까지입니다.

○**환경부장관 윤성규** 지금까지는 PHMG나……

○**한정애 위원** 그러니까 질병관리본부에서 그 당시 연구에 참가했었던 연구위원들이 3개월이라고 하는 한정된 제한적인 연구결과 가지고 이것은 확인할 수 없으니 추가적인 실험이 필요하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실험을 전혀 진행하지 아니하고 단지 그 3개월간에 이루어졌던 실험결과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지난 5년간 SK케미칼에 면죄부를 준 겁니다.

이제 국정조사가 시작이 됩니다. 저는 도대체 질병관리본부의 누군가가 또는 보건복지부의 누군가가, 아니면 정권의 누군가가 추가적인 실험을 막았는지, CMIT·MIT에 대한 추가실험이 진행되지 못하게끔 막았는지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밝혀져야 된다고 봅니다.

CMIT·MIT를 사용해서 생긴 피해자들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인 것은 확실한 것이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지금 판정된 사람들은 CMIT·MIT인데도 폐섬유화 피해자로 이렇게 인정이 된 겁니다.

○**한정애 위원** 또 폐섬유화만 얘기하시네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폐섬유화에 대해서만 판정기준이 마련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정애 위원** 판정위원회 자체가 그 판정기준을 굉장히 축소해서 했다는 것은 지금 다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판정위원회가 축소한 것은 아니고요.

○**한정애 위원** 왜 그렇게 축소되었는지도 밝혀져야 되는 것이지요.

○**위원장 홍영표** 마무리해 주십시오.

○**한정애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국정조사 임하실 때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홍영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질의를 마쳤습니다.

오늘 지금 이어서 고용노동부에 대한 결산보고가 있고 또 아마 이 결산은 예결산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가 될 것입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위원님, 몇 분 하시겠습니까?

그러시겠습니까? 그러면 3분씩 하겠습니다.

그래서 짧게 확인할 사항들은 해 주시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형수 위원님부터 먼저 3분 질의하십시오.

○서형수 위원 장관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국방부에서 사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반도에 배치하겠다는 발표 하셨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아침에 발표한 것으로 저도 인터넷에서 봤습니다.

○서형수 위원 사드배치 이전에 그 사드가 우리 환경이나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사전 조사 의뢰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지금까지 공식적인 자료를 저희들이 확인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조사한 바는 없습니다.

○서형수 위원 그런데 지난 4월에 국방부에 질의해 보니까 국내에서 자료가 없기 때문에 미군으로부터 제공받은 괌 사드 포대에 대한 환경평가보고서를 참조해서 안전성을 일단 판단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제가 볼 때는 그것으로 판단하는 부분도 가능할 것이고, 필요하다면 그쪽으로 우리 조사진이 가서 조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서형수 위원 그런데 우리 한반도에 설치하는데 괌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를 활용을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그것을 믿냐 안 믿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그것을 일단 보고 또 현지, 미국하고 협조해서 그쪽에 가서 실측을 해 볼 수도 있겠지요.

○서형수 위원 어쨌든 한반도에 쓰실 때는 제대로 환경영향평가 하실 거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그 부분은 군사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는 권한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영향평가는.

○서형수 위원 그러면 환경영향평가 없이 일단

사드가 한반도에 설치된다는 얘기입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환경영향평가 대상은 군사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지 않습니다.

○서형수 위원 그 영향평가는 어디서 합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는데 하여튼 협의도 할 수 있는 채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쪽에 국방부하고 논의할 수 있는 채널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그런 과정에서 논의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형수 위원 국방부에서 동의하지 않으면 환경부에서는 영향평가 안 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환경영향평가법 제23조에 의하면 ‘국방부장관이 군사상 고도의 기밀보호가 필요하거나 군사작전의 긴급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 인정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사항은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하고 협의가…… 예외로 하려면 협의를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서형수 위원 군사기밀하고 국민건강하고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 건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기본적으로 국민건강은 지켜져야 되고요, 그것 지켜지는 범위 내에서 군사시설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홍영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돈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돈 위원 국민의당 이상돈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좀 작은 것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환경부가 잘못된 관행에 젖어 있다, 그래서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환경부가 내는 많은 책자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게 환경백서입니다. 1990년대부터 죽 나왔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노동백서, 원자력안전백서라는 게 많았습니다. 그런 백서 볼 것 같으면 발간사, 기관장의 사진 1장 나오고 인사말 있고 대개 본문으로 가는데 우리나라 환경부도 2009년까지는 그렇게 따라왔어요. 그런데 2010년부터는 환경백서에 컬러화면이 수십 페이지가 됐고 그중의 대부분이 장관의 행사 사진입니다.

이것이 2010년 이만의 장관 때부터 시작됐어요. 그리고 유영숙 장관을 거쳐서 현재 윤성규 장관에 이르기까지 컬러화면 대부분이 장관의 일종의 개인 홍보처럼 돼 버렸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것 보십시오. 이것 최근의 2014년 같습니다. 한번 넘겨보시지요.

이것은 2015년이 지금 이것이지요. 수십 페이지에 45커트의 장관 사진이 들어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일본 환경부에서 내는 환경백서, 영국의 환경부가 내는 환경백서(white paper), 또 미국의 대통령실 직속하에 있는 환경질평의회에서 내는 퀄리티 오브 인바이런먼트 이어 북(quality of environment year book)이 있습니다. 화이트 페이지 보면 기관장 사진 1장만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수십 커트의 장관 사진이 앞에 수십 장에 걸쳐 있습니다.

다음 넘겨보시지요.

통계를 볼 것 같으면 저것이 전체 컬러사진 중에서 장관이 나오는 사진이 70장 중에 45장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아는 한 이런 환경백서를 세계에서 본 적이 없습니다.

거기서 유명숙 장관이 좀 적었던 것은 그 당시 장관 재직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조금 넣은 것이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정부부처의 다른 부처에서도 볼 수가 없는 것이고 세계적으로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환경백서인지 아니면 장관 자신의 치적, 주로 국제회의, 무슨 보여 주기 위한 행사를 홍보하기 위한 것인지……

이것 현재 국민세금이 권당 한 5000만 원 들어갔습니다. 대충 계산해 보더라도 그중에 약 4분의 1은 장관의 홍보비로 들어간 것 같은데 앞으로 환경부가 이 관행을 계속해 할 것인지 또 이것이 과연 정당하다고 보는 것인지 그것 한번 묻고 싶고 여기에 계시는 동료 위원들에게도 한번 이 문제를 제가 제기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영표** 수고하셨습니다.

장관님 뭐 하실 말씀 있어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지적이 옳으신 측면이 있습니다.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영표** 다음은 임이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이자 위원 장관님, 본 위원이 오전에 지적했던 ‘국고보조금 발생이자 회수 미흡’ 관련돼 가지고 모르신다고 그랬고 또 본 위원이 환경부 공무원들의 직무태만을 지적했을 때 그런 일 절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확인하셨나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간접보조금에 대해서는 이자를 그 기관이 수입으로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감사원 지적은 환경공단이 지자체에…… ‘환경부가 지자체에 국고보조 준 것을 지자체로부터 다시 환경공단이 사업을 대행을 할 때 그렇게 한 것은 간접보조금으로 볼 수 없다’라고 감사원이 지적을 했고 저희도 원칙적으로 동의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간접보조가 아니라 직접보조이고 직접보조에 대한 이자는 저희가 회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이자 위원 그러면 2월 달에 감사결과 통보를 받으셨잖아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임이자 위원 지금 총 몇 건이 돼 있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90……

○임이자 위원 99건이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99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이자 위원 99건 중에서 1건이라도 받아 낸 실적이 있나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일부 받은 것으로 제가 들었는데……

1건 정도 받았습시다.

○임이자 위원 그것 봐요. 그 감사결과를 받고도 지금 1건 겨우 받아 냈고……

지금 현재 우리 결산보고 자료에 있는 기타경상이전수입 여기에도 미수납이 552억 있어요. 여기에는 지금 포함이 안 된 거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작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발생이 금년에 감사원에서 통보해 온 것이고……

○임이자 위원 글썄, 안 된 거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임이자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분명히 다음에 또 내년에도 제가 환노위에 있을 텐데, 지금 우리가 아직 반환받지 못한 금액이 얼마로 추정되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130억 정도……

○임이자 위원 130억 정도 지금 되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임이자 위원 그 130억을 내년에 반드시 다 받아 내셔야 됩니다.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이자 위원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어야 됩니다.

지금 문 위원께서도 지적했다시피 미수납액이 9900억이 넘어가고 이런 부분을 환경부 공무원들이 직접 나서서 다 받아 내고 그래야 되는 거지 이렇게 미적미적 대고 이랬을 때 계속 일반회계 전출금만 기대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장관 윤성규** 개인 같으면 저희들이 강제할 수 있는데 지자체니까……

○**임이자 위원** 지자체는 더 쉽지요. 왜 그러세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지자체는 예를 들어서 이자를 저희들한테 준다고 예산을……

○**임이자 위원** 지자체는 하기가 더 쉽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아니, 책정을 해야 되니까. 자기들도 책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임이자 위원** 나중에 그 인센티브 갖고 얘기하면 되잖아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어쨌든 뭐……

○**임이자 위원** 하여튼 장관님의 의지가 중요한 것 같고, 어쨌든 지금 환경부에서 이렇게 보이는 행태들이 굉장히 적극적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영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원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원진 위원** 지진 관련해서 기상청하고 지질자원연구원 두 군데서 하지요, 그렇지요?

○**기상청장 고윤화** 지자연에서 하는 것은 연구입니다, 연구.

○**조원진 위원** 그런데 일단 기상청 지진규모 발표는 두 군데서 다 했네요?

○**기상청장 고윤화** 공식적인 발표는 기상청만 하도록 돼 있습니다.

○**조원진 위원** 그런데 일단 기상, 지질연구원에서 발표가 나와 있는데 이게 제가 여쭙어 보고 싶은 것은 기상청에서 사용하던 미국의 규모식, 그다음에 지질자원연구원에서 사용하는 한반도 지질 특성을 반영한 규모식 이런 표현을 쓴다고요. 어느 것이 더 가깝습니까?

○**기상청장 고윤화** 어느 것이 더 맞다 틀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캘리포니아 쪽에 쓰고 있는 그 규모식을 채택을 해서 쓰고 있고요.

○**조원진 위원** 두 가지가 예를 들어서 데이터가 같이 나오면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기상청장 고윤화** 그것을 또 저희들도 국내 설정에 어느 정도 맞도록 조금 튜닝을 한 겁니다.

○**조원진 위원** 그래서 이 데이터가 차이 많이 나는 것은 최대 0.6까지 차이가 나니까……

○**기상청장 고윤화** 예, 그렇습니다.

○**조원진 위원** 이 부분은 지금 지질연구원 쪽으로 방향성은 가고 있는 겁니까? 한반도 지형에 맞는……

○**기상청장 고윤화** 꼭 그렇지는 않고요.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들이 조사연구사업을 조금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모아서 차체에 규모식을 조정하자 이렇게 하는 쪽으로 한번 전문가들……

○**조원진 위원** 서로 양 기관의 알력이나 뭐 이런 게 있어요? 지금 보니까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기상청장 고윤화** 조금 뭐…… 전문가들 사이에 어떤 의견 차이들이 조금 있긴 있습니다.

○**조원진 위원** 이 부분 지금 예산 반영이 돼 있지요?

○**기상청장 고윤화** 예.

○**조원진 위원** 예산 반영을 해서 결국은 미국식으로보다는 한반도 지형에 맞는 규모식 이런 식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기상청장 고윤화** 한반도 지형에 맞는 것으로는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자연이 딱히 뭐 한반도 지형에 진짜 최적화된 거라고도 또 볼 수가 없는……

○**조원진 위원** 아니, 방향성은 그리 가 있단 말 이야, 방향성은. 그러면 기상청에서 그동안에 우리는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질연구원 쪽을 따라갈 수 없다 이것보다는 큰 방향이 그쪽이 맞으면 기상청에서 과감하게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맞고 거기에 따른 예산도 반영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상청장 고윤화** 예.

○**조원진 위원** 그래서 기상청에서 너무 이렇게 벽을 치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기상청장 고윤화** 벽 칠 생각은 없고……

○**조원진 위원** 국민들 입장에서는 똑같은 지진 규모를 했는데 최대 0.6까지 차이나면…… 0.6이면 굉장히 큰 것 아닙니까? 지금 5지진인데 5.6 같으면 엄청나게 차이나는 거예요.

○**기상청장 고윤화** 꼭 그 케이스가 그 케이스라고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조원진 위원** 그다음에 아까 하태경 위원이 애

기하셨는데 국민안전처가 물론 재해에 대한 모든 대책을 총괄하는 건 맞아요. 모든 재해는 국민안전처에서 총괄해야지 그게 일원화가 되거든. 단지 하나 통지 문제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기상청에서, 재난방송이라는 게 있잖아요? KBS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공식 재난방송 있잖아요?

○기상청장 고윤화 예, KBS.

○조원진 위원 사건이 터지면 재난방송에 던지는 겁니다. 동시에 던져서 그 재난방송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표하는데 오늘 보니까 1분 안에 이것을 다 했더라고요.

○기상청장 고윤화 예.

○조원진 위원 1분 안에 모든 것을 했는데 이게 일괄적이 아닌 거예요. 한 다리 건너다는 거지요.

○기상청장 고윤화 아닙니다. KBS나 방송국으로는 바로 나갑니다.

○조원진 위원 그런데 문자는 국민안전처에서 가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기상청장 고윤화 속보로 띄우는 것은 KBS에서 바로 띄우고요, MBC도 마찬가지로. 다만 국민안전처에서는 재난문자 발송서비스 그것만 국민안전처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원진 위원 국민안전처에서 방금 들어왔어요. 방금도 재난 관련 그게 떴어요. 폭염 뭐 떴는데 문제는 국민들이 제일 궁금해 하는 것이 이게 전국적으로 관심이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동시에 터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검토를 하셔서 어느 것이 국민들한테 빨리 전달해 주고 거기에 대비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을 찾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기상청장 고윤화 국민안전처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영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태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河泰慶 위원 아까 재난문자서비스 관련해서요. 그러면 기상청에서 국민안전처에 진도규모 정보를 보낸 것은 몇 분 있다가 보냈어요?

○기상청장 고윤화 실시간으로 다 공유가 돼 있습니다.

○河泰慶 위원 그러면 재난안전처에서는 발송하

는 데 몇 분이면 보통 끝내야 됩니까?

○기상청장 고윤화 그쪽의 시스템을 저희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얼마 만에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어떻게 통보하는 시스템인지는 저희들이……

○河泰慶 위원 그러면 재난안전처에서는 이것 가지고 자체적으로 소요될 시간은 없어요? 연구하고 분석하는 데 소요될 시간은 필요가 없네요, 그렇지요? 안 하나까 그냥 발송시간만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기상청장 고윤화 글썬요, 뭐 이렇게 쳐 넣는 시스템은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서.

○河泰慶 위원 그러면 어쨌든 안전처가 대단히 잘못된 것 같습니다. 27분 만에, 17분 후에 보니까……

○기상청장 고윤화 국민안전처에서 진도를 분석하는 시스템을 또 따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 통보하기 위한.

저희들이 진도 정보를 주면 그것을 가지고 지역을 선정해서 하는 프로그램을 따로 가지고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이릅니다.

○河泰慶 위원 그것 복잡하네. 그것은 나중에 합시다.

그리고 사드 관련해서 환경부장관님, 영향평가 보안 관련된 것은 국방부가 결정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상식적으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보안 관련해서 환경부에 협조 요청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하는 것도 이해가 되고 하는데 사드는 환경영향평가를 전자기파 말고 다른 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합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글썬요, 저희도 뭐 전혀 알 수 있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河泰慶 위원 그러면 지금 언론에 나온 게 전자파와 관련된 건데 전자파가 광 지역하고 대한민국하고 어떤 질적인 차이가 날 수 있습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글썬, 과학적으로는 차이가……

○河泰慶 위원 어느 지역이나 사드 무기가 배출하는 전자기파는 과학적으로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과학적으로는 똑같은 수밖에 없지 않겠나……

○河泰慶 위원 똑같겠지요, 당연히?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河泰慶 위원 차이가 있다면 지구 자체의 자기

장 때문에 괄과 대한민국의 차이가 영향을 줄 수 있겠지만 저의 이과적 상식으로는 그것은 무시할 정도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이 이상의 환경영향평가가 있을 수 있는지는 장관님도 잘 모르시네요? 그런데 기존 언론에는 전자기파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듣기로는.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사실 우리 핸드폰 여기사도 그것 나오기도 해 가지고……

○**河泰慶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외국이나 한국이나 똑같은 조건이다, 거의 똑같은 조건이라고 했을 때 외국에서 환경영향평가 했던 결과를 한국에서 그대로 수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평가를 대상이 되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야지 외국 것을 그대로 인용하지는 않습니다.

○**河泰慶 위원** 조건이 똑같더라도?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조건이 같더라도 다시 평가 절차 대상이면 평가를 해야 됩니다.

○**河泰慶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화학물질 테스트 하는 것을 외국에서 사와서 제출하기도 한다면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그것은 시험, 동물시험을 한다 했을 때 동물시험을 중복적으로 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시험 방법만 확인이 되면 그것은 우리가 그대로 인용을 하지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河泰慶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질문을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귀실험을 하면 미국에서 하든 한국에서 하든 큰 차이는 없을 것 아니에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라 한다면 아무리 외국에서 똑같은 것을 했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는 또다시 해야 됩니다.

○**河泰慶 위원** 아니, 그것은 동어반복이고, 대상이라면 당연히 해야지요. 장관님이 오해하신 것 같은데……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하겠습니다.

미세먼지, 환경문제는 개별 주권을 넘는 문제잖아요. 그렇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河泰慶 위원** 개별 주권을 넘는 문제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한중 간에는 어쨌든 지금 중국의

견을 많이 존중하는 식으로 가서 중국의 미세먼지 영향력이 우리 심할 때 한 60~70%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거의 중국 영향력이 압도적인데 중국 문제가 한국 문제 아닙니까? 지금 그렇잖아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河泰慶 위원** 나중에 개별 주권을 넘는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런데 지금 보면 공동연구, 공동실증 뭐 이런 것 중심이에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조금 더 강도 높게 국제사회에 호소할 필요가 있다, 중국이 협력을 해야 된다고.

○**환경부장관 윤성규** 위원님, 그것은 이렇습니다. 우리나라 자체 발생분 기준 미세먼지 농도가 우리가 일본의 2배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일본에 영향을 미칩니다. 중국은 우리보다 2배 내지 3배입니다.

우리가 중국에 그런 주장을 하면 일본은 우리한테 또 주장합니다.

○**河泰慶 위원** 그래도 해야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그렇기 때문에……

○**河泰慶 위원** 아니, 그러면 일본이 우리한테 하는 게 겁이 나서 우리가 중국한테 못 합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河泰慶 위원** 그것은 일본 국민들에 대한 도리도 아니고, 국제사회에서. 그런 자세를 가지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진짜 그 이유 때문에 중국한테 할 소리를 못 한다는 것입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그래서 3국 장관회의에서는 이것을 공동의 문제로 보고 건설적인 해결 방법을 찾기 위해서 서로 할 수 있는 노력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이걸 네 탓이다라고 얘기를 하기……

○**河泰慶 위원** 저는 좀 충격적인데요. 환경문제를 어떤 국가 간 이익이나 이런 것을 따질 것은 아니다 싶고 대한민국이 이러한 글로벌 보편적인 문제에 있어서 리더십을 발휘해야 된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미래다 하는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일본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우리도 중국에 적극적으로 못 한다 이 부분은 굉장히 부적절하고 지금 글로벌 사회에서 이게 만약에 CNN이나 이렇게 중계가 된다면 장관님은 국제사회에서 지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관점을 가지시면.

그래서 이 문제는 다시 접근 방법부터, 미세먼 지 접근 방법부터 다시 재조명해 가지고 한번 제 의원실로 보고를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영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병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병원 **위원** 가슴기살균제 사건이 터지고 나서 화평법을 만드셨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터지고 나서도 1년 내 지 2년 지난 다음에 국회에 통과가 됐습니다.

○강병원 **위원** 만드셨지요? 그 이유는 이런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겠다는 우리들의 반성이 그 법으로 나타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그중에 일부가 그런 것에 해당이 됩니다. 기본은……

○강병원 **위원** 알겠습니다.

○환경부장관 **윤성규** 기본은 유럽……

○강병원 **위원**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부족해서 환경부 업무보고에서 나왔습니다만 살생물제법을 또 준비를 하고 있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살생물제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이 있겠느냐, 지금 화평법으로는 PGH처럼 몇 년간 300kg 쓰고 이런 것은 통제가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강병원 **위원** 그렇지요. 왜냐하면 그런 양의 문제 같은 것을 빠뜨린 것이 있기 때문에 보다 완벽하게 우리 국민건강을 책임지기 위해서 또 살생물제법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폭스바겐이 전 세계를 상대로 사기 친 것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2005년에 대기환경보전법을 만드셨다고 했는데 그 56조의 과징금 조항을 보면 10억을 초과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려면 매출이 얼마여야 되느냐 하면 300억 매출이면 됩니다. 300억 매출에 최대한 때려봤자 9억입니다, 9억. 그렇지요?

그리고 이 폭스바겐 문제가 터지고 나서 개정을 합니다. 그래서 56조에서 이 금액은 100억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100분의 3을 환산을 해 보면요, 매출액 3000억이면 됩니다. 지금 현대자동차의 매출액이 72조예요. 자동차 글로벌 회사들 같은 경우 수십 조의 매출액을 가지고 있는데 그 회사들이 과학기술이 발달

하고 발달해 가지고 우리 전 세계를 상대로 사기를 쳐도 고작 부과되는 과징금은 대한민국에서는 100억을 초과할 수가 없다고 해 놓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EU도 이 폭스바겐 사태를 겪으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대대적인 강력한 규제 권한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한 대당, 우리는 지금 차종으로 매기고 있지 않습니까? 차종으로 매기는 것이 아니라 EU 같은 경우에는 대당 3만 유로를 부과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작년 12월에 만들어졌기 때문애가 아니라 화평법이 있지만 살생물법을 다시 준비하는 것처럼 이 법에 대해서도, 너무 우리 국민들을 우롱하는 것 아니겠어요? 다시는 이렇게 우리 국민을 우롱하지 않게끔 이것을 고칠 수 있다면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만들었기 때문에 그냥 한번 하는 걸 보자, 고작 100억입니다. 현대자동차를 예로 들면 72조 매출을 올리고 있는 회사에게 100억이에요. 폭스바겐이 4조 4000억을 벌었는데 고작 141억이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환경부장관 **윤성규** 차종일 수도 있지만 지난번에 폭스바겐도 141억을 물렸는데 이것은 우리가 차량 검증을 하거든요. 국립환경과학원에 신청받아 가지고 검증 단위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검증 단위가 10개면 10개에 대해서 곱하기 100억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종 뭐 하나로 해서 100억 이런 것이 아니고 검증 신청 단위로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도 적은 것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강병원 **위원** 그러면 최대 하면 얼마를 때릴 수 있습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그러니까 몇 번을 신청했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이지요. 신청을 예를 들어……

○강병원 **위원** 보세요. 폭스바겐이 자그마치 12만 대의 배출가스 조작 차량을 팔았습니다, 국내에. 그 모든 걸 다 하셔 가지고 결국 141억 과징금 때리셨지 않습니까? 4조 4000억을 벌었다니까요. 그런데 고작 141억이었어요. 뭐가 두렵겠습니까? 대한민국이 얼마나 우습게 보이겠어요. 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다시는 우리 국민

을 우습게 보지 못하는 법을 못 만드시냐고요. 이것에 대해서 완벽한 대책을 하나 만들어서 저희 의원실에 보고해 줄 수 있으시겠어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면 미국이나 일본처럼 차 한 대당 얼마 이런 식으로 가면 그런 갈증은 해소는 되겠지만 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봐야 될 것이고 그런 고민을 하다 보니까 국회에서 작년 12월에 건당 100억으로 일단 한 것입니다.

○**강병원 위원**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생각하는 방안을 한번 마련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홍영표**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 순서 마지막 순서로 문진국 위원 질의하십시오.

○**문진국 위원** 장관님, 천연가스 청소차 예산집행의 저조에 대한 것을 좀 묻겠습니다.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문진국 위원**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사업 중 천연가스 청소차 보급은 매연을 줄여서 쾌적한 대기질을 만들자는 취지에서 시작됐으나 예산 집행률이 46%로 매우 저조합니다. 좋은 취지에서 시작을 했으나 사업 진행이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자체와의 협력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뭐 저희들이 차 값을 100% 지원하고 또 충전소도 인근에 마련해 주고 그러면 지자체는 부담이 전혀 없으니까 되겠지요. 그러나 중앙정부로서는 그렇게 하기는 어렵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문진국 위원** 그리고 또한 천연가스 청소차는 국제유가 하락으로 인한 경유차 대비 유지비 과다 소비 및 출연 지연 등으로 구매 기피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급 활성화를 위한 충분한 인프라 구축 없이 차량 도입에 따른 보조금만 지급하고 있어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어느 경우이나 인프라 가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주 사용하든 안 하든 인프라를 먼저 깔아 놓으면 그다음에 부담 없이 차량 구입하고 쓸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되겠습니다.

○**문진국 위원** 잘 알겠습니다.

환경부는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사업 예산을 활

용해 3년간 총 10건의 연구용역을 실시하였고 이중 3건이 사업목적과 맞지 않았습니다.

장관님, 하이브리드 택시, 경유 택시 배출과 수소연료전지차 보급과 관련된 연구용역이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보십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위원님 지적이 옳습니다.

○**문진국 위원** 맞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위원님 지적이 옳습니다.

○**문진국 위원** 그래서 장관님께서서는 사업을 관리를 보다 강화해서 예산이 타당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진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영표** 문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문제만 좀 지적할 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 알고 계시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위원장 홍영표** 제가 2013년도에 예산 심사를 하면서 이 사업이 정부에서 현 단계에서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해서 당시에 제가 예산 전액 삭감과 뭐 그런 것을 요구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저는요, 이 사업이 수소전지차를 보급 하겠다 이러는데 2013년에 보면 3000만 원짜리 차 투싼을 우리 세금 1억 2000만 원을 지원해서 이 차를 보급합니다. 작년에는 보니까 5500만 원으로, 차 값이 이제 떨어지니까 이 보조금을 5500만 원으로 줄였는데 저희가 이런 환경친화적인 차량을 보급할 때는 국민들에게 대량 공급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가 된 차량이어야 합니다. 이 수소연료전지차는 자동차 업계에서도 지금 전망이 굉장히 불투명하고 지금 현재 실험실에서 R&D 하는 수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지금 투싼은 굴러다니는 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 홍영표** 굴러다니는 차는요, 자율주행차도 있습니다.

그러면 장관님, 자율주행차를 한 2억 보조금 들여서 그것을 해 주는 나라가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요, 이 보조금이 과다하다는 거예요. 어떻

게 1억 2000만 원 그리고 5500만 원씩 주면서 차량을 보급합니까? 이것은 대량 보급을 하기 위한 전 단계로 하는 작업인데 이걸 맞지가 않고요.

그다음에 또 보편은 이 충전소 하나 설치하는데 한 15억 들어가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위원장 홍영표** 제가 보니까 운영 중 10개소가요, 현대자동차 회사 안에 있어요. 그리고 작년도에 보급한 차량이 전체가 실제로 보면 56대, 76대인데요. 수도권에서 10대 보급한 것 중에서 1대 빼고는 다 현대그룹사 차량이에요. 이렇게 해도 됩니까? 아니, 현대처럼 그런 여유가 있는 회사가 R&D를 해서 해야지 그런 대기업까지 이렇게 지원을 하니까 국민들이 R&D 자금을 대해서 문제 삼는 것 아닙니까?

이걸 내년에도 하실 겁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저희가 R&D를 지원해 주는 건 아니고요.

○**위원장 홍영표** 사실상 R&D 지원해 주고, 10대…… 차량 1대에 5500만 원씩 해서 그렇게 지원해 주는 게, 그리고 현대 자체가 자기네 계열사가 차를 사는 것 아닙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지금 그 충전소……

○**위원장 홍영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지난번에도, 제가 2년 전에도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걸 전혀 무시하고 지금 계속해서 하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보급, 전기차처럼 이렇게 급속히 대량 보급할 수 있는 준비도 안 돼 있습니다. 인프라도 없고. 제가 볼 때는 말씀은 아니라고 하지만 민간 기업이 R&D 하고 있는 단계에서 정부가 이렇게 지원하는 건 안 됩니다.

그것은 아무튼 소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예결 심사를 할 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서면질의가 있습니다.

서형수 위원, 송옥주 위원, 장석춘 위원, 문진국 위원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습니다. 해당 기관에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애 위원** 위원장님, 저도 서면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홍영표** 예, 한정애 위원, 신보라 위원.

○**河泰慶 위원** 저도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영표** 하태경 위원님, 조원진 위원님, 김삼화 위원님, 이정미 위원님 이렇게 서면질의 해 주셨습니다.

충실하게 작성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대체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용노동부 소관 결산 심사 순서입니다만 장내 정리를 위하여 10분 동안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5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회의중지)

(17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영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고용노동부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존경하는 홍영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0대 국회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5년 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 사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에는 경제환경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일자리 증가세 둔화 우려, 청년고용불안, 근로자 간격차를 야기하는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문제 등 어려운 과제를 안고 출발하였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일자리를 국정의 최우선과제로 하여 불합리하고 경직적인 제도와 관행에서 벗어나 공정한 노동시장을 구축하기 위해 노사와 함께 노력해 나가는 한편 기업은 고용 창출력을 유지하고 구직자들은 쉽게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였습니다.

특히 능력 중심 사회, 일가정 양립, 고용복지 융합이라는 일자리 핵심개혁과제의 성과가 현장에 뿌리내리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이

러한 정책기조에 따라 추진한 지난해 결산 결과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및 기금의 총 지출 규모는 27조 5927억 원이며 이 중 여유자금 운용 등을 제외한 순지출은 15조 9619억 원이었습니다.

예산은 일반회계와 4개 특별회계를 합쳐 당초 2조 2286억 원에 전년도 이월액 14억 원과 노동개혁 홍보를 위한 예비비 54억 원을 추가하여 총 2조 235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95%인 2조 1225억 원을 지출하였고 11억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118억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5개 기금에 대해 말씀드리면 고용보험기금 8조 1245억 원,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4조 9727억, 임금채권보장기금 3316억,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2646억, 근로복지진흥기금 1460억 등 총 13조 8394억 원을 사업비로 지출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예산과 기금을 토대로 추진한 2015년도 주요 고용노동정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미래지향적 고용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노동개혁 입법 노력과 함께 임금피크제 및 능력·성과 중심 임금체계와 세대 간, 정규·비정규직 간, 대·중소기업 간 상생고용이 정착되도록 현장 지도와 적극적 재정 지원을 병행하였습니다.

또한 일하기를 원하는 국민 한 분이라도 더 일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청년·여성·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서비스와 직업훈련을 강화하였습니다.

지난해 7월 청년고용절벽해소 종합대책 발표를 계기로 기업과 협력해 청년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능력중심사회를 실현코자 NCS 채용과 일학습 병행제 확산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일과 가정의 조화, 더 많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을 도모하였습니다.

일을 통한 복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전국 30개 지역으로 확대하고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강화하였습니다.

아울러 임금체불 근절, 취약근로자 보호 강화, 사회안전망 구축,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노력도 소홀히 하지 않고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고용노동부는 국민들이 일을 통해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을 내실 있게 집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 오늘 지적해 주시는 내용은 적극 반영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근로조건 개선 등을 위해 더욱 효과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양해하여 주신다면 기획조정실장이 결산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부기획조정실장 박종길** 기획조정실장입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5회계연도 재원 규모, 회계 결산, 기금 결산, 재무 결산 순입니다만 일반현황은 지난번에 보고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생략하고 6페이지 재원 규모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2015회계연도 재원 규모입니다.

총괄입니다.

2015회계연도 예산 및 기금 재원 규모는 총 27조 5927억 원이며 이 중 24조 7342억을 지출하였습니다.

여유자금 운용 등을 제외한 순지출은 15조 9619억 원 수준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예산·기금별 구성입니다.

예산은 총 2조 2354억 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가 2조 834억 원입니다. 기금은 총 25조 3573억 원이며 산재보험 11조 9000여억 원, 고용보험 11조 2000여억 원, 임금채권 1조 2000여억 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별 분포는 그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회계 결산입니다.

회계는 보통 통칭 예산이라고 하는 것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총괄입니다.

세입 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330억 원으로 전년대비 27억 원이 증가했는데 이는 적극적으로 위법행위 제재에

따른 과태료 부과 증가가 주요 요인입니다.

수납액은 1000억 원으로 전년대비 4억 원이 증가하였으나 수납률은 약간 감소하였습니다.

9페이지,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조 2354억 원으로 당초 예산액에 다가 이월액 14억 원 및 예비비 54억 원이 증가된 금액이라 하겠습니다.

지출액은 2조 1225억 원으로 94.9%를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이 11억 원, 불용액이 1118억 원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 중 일반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303억 원으로 전년대비 199억 원이 증가하였는데 보조금 반환금액 및 과태료 부과금액 증가가 주 원인입니다.

수납액은 985억 원으로 수납률은 전년대비 약간 증가한 75.5%가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318억 원으로 과태료 미수납 등이 주요 내역이며 체납자의 재력 부족 및 거소불명이 주 원인입니다.

1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입니다.

세출 예산은 당초 2조 766억에 전년도 이월액 및 예비비 68억 원이 증가하여 총 2조 834억 원입니다.

지출액은 1조 9705억 원으로 주요 내용은 직업안전기관 운영 등 고용정책에 1조 756억 원, 실업자능력 개발 지원 등 직업능력 개발에 3630억 원, 합리적 노사관계 지원 등 노사협력에 299억 원, ILO 분담금 등 국제노동행정에 130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전용 내역입니다.

전용액은 311억 원으로 표에 나와 있는 두 번째 항목을 보시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9개소를 신설하기 위해 104억 원을 취업성공패키지와 중소기업근속장려금 예산에서 전용하였습니다.

한편 그다음 박스인데요, 두루누리사업 신청자 증가에 따라서 지원금 부족액을 충당하기 위해서 120억 원을 취업성공패키지 예산에서 전용한 바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전용 내역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입니다.

이월액 내역입니다.

이월액은 11억 원으로 고용영향평가사업의 평가기간 연장에 따른 잔금 이월 등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불용액은 1117억 원으로 추경 편성에 따른 물량을 일부 소화하지 못하여 발생한 취업성공패키지 예산 643억 원, 관계법령 개정 지원에 따른 실업크레딧 예산 138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53억 8700만 원을 편성하여 노동시장 개혁 관련 국민공감대 확산 등을 위한 예산으로 활용하였습니다.

3번,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부분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2억 5000만 원으로 이 중 1억 4000만 원만 수납하였습니다. 이는 2010년도 제도 변경에 따라서 진폐위로금 과오납금 발생하였는데 체납자의 재력 부족으로 미납액이 발생한 부분이 매년 이월 징수결정이 된 탓이라 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에너지특별회계 세출 내용입니다.

예산현액은 619억 원으로 진폐위로금과 건강진단 지원으로 지출하였습니다.

불용액은 3600만 원인데 진폐근로자의 고령화에 따라서 건강진단 신청 건수가 감소한 데 따른 것입니다.

19페이지, 지역발전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및 이자수입 14억 원을 전액 수납하였으며 세출 부분에 있어서는 사회적기업 육성 및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 노동행정 업무 지원에 900억 원을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이 되겠습니다.

기금 총괄입니다.

수입 부분입니다.

5개 기금의 징수결정액은 26조 6755억 원으로 전년대비 3조 124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납액은 22조 6117억 원으로 수납률은 전년대비 약간 증가한 84.8%가 되겠습니다.

21페이지, 지출 결산입니다.

5개 기금의 지출액은 22조 6117억 원으로 이

중 사업비는 13조 8394억 원, 여유자금 운용은 8조 7723억 원입니다. 사업비는 전년보다 약 1조 5000억이 증가한 수준입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별 결산입니다.

먼저 고용보험기금입니다.

수입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2조 869억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수납액은 10조 8843억 원으로 수납률은 지난해보다 약간 증가하였습니다.

불납결손액은 988억 원이며 미수납액은 1조 1038억 원입니다.

2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고용보험기금 지출입니다.

지출계획 현액은 11조 2268억 원이며 여유자금 운용을 제외한 사업비 기준으로는 8조 7881억 원, 이 중 8조 1245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사업비 내역은 고용정책사업으로 실업급여 4조 5441억 원,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1727억 원 등을 지출하였으며, 직업능력개발로 사업주능력개발지원 3908억 원,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 3337억 원을 지출하였으며, 고용평등 실현을 위해서 모성보호육아지원 8859억 원, 고령자 고용촉진지원 1138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적립금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계정 4조 4280억 원, 실업급여 계정 3조 7600억 원입니다.

25페이지 하단에 나와 있는데요, 사업비 대비 적립배율이 실업급여의 경우에 0.7로서 법정적립배율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6페이지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입니다.

수입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1조 5308억 원이며, 수납액은 9조 9703억 원으로 수납률이 전년 대비 약간 증가하였습니다.

불납결손액은 2240억 원이 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지출 부분입니다.

지출계획 현액은 11조 9289억 원이며 사업비 기준으로는 4조 9846억 원, 이 중 4조 9727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사업비 내역을 보시면 산재보험사업의 경우 산재보험급여 4조 791억 원, 산재근로자재활 579억 원을 지출하였으며, 산재예방사업으로 클

린사업장 조성 814억 원, 사고성 재해 예방 525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적립금은 제일 하단에 나와 있는데, 11조 8991억 원입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금채권보장기금입니다.

수입 부분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조 9217억 원이며, 수납액은 6959억 원으로 수납률이 전년 대비 감소하였습니다.

불납결손액은 1256억 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출 부분입니다.

지출계획 현액은 1조 2325억 원이나 사업비 기준으로는 3670억 원이며 이 중 3316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사업비 내역은 해당지급액 2979억 원, 무료법률구조지원 194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해당급 지급 338억 원 등 354억 원입니다.

적립금 규모는 9279억 원 수준입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입니다.

수입입니다.

징수결정액은 7843억 원이며, 수납액은 7702억 원으로 수납률이 전년 대비 약간 증가하였습니다.

34페이지, 지출 부분입니다.

지출계획 현액은 6531억 원이며 사업비 기준으로는 2653억 원, 이 중 2652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사업비 내역은 장애인고용장려금 1482억 원, 장애인직업능력개발 175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 기금의 적립금 규모는 5649억 원 수준입니다.

35페이지, 근로복지진흥기금입니다.

수입 부분입니다.

징수결정액은 3518억 원이며, 수납액은 2910억 원으로 수납률이 역시 전년 대비 약간 증가했습니다.

36페이지, 지출입니다.

지출계획 현액은 3160억 원으로 사업비 기준으로는 1766억 원, 이 중 1460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니다.

주요사업비 내역은 퇴직연금사업운영 등 근로자복지지원에 114억 원, 신용보증대위변제에 118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 부분의 적립금은 동 기금의 경우에 계정이 3개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중소기업계정에 1021억 원, 신용보증계정에 45억 원, 실업대책계정에 322억 원 수준입니다.

38페이지입니다.

2015회계연도 재무결산 사항입니다.

예산 및 5개 기금을 통합하여 국가회계법과 국가회계기준에 따라서 작성한 것입니다만 회계기준상 기술적인 부분이 많아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대체코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영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결산검토보고서 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15회계연도 고용노동부 소관 결산에 대해서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요약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청년일자리사업과 관련하여 전체적인 검토 의견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일자리 창출력 저하, 정년 연장에 따른 퇴직 감소, 에코세대의 청년층 진입 등 다양한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청년실업률이 최고 수준이며 청년들이 실제로 체감하는 어려움은 이보다 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고용노동부는 2015년도에 청년일자리사업 명목으로 약 1조 3800억 원의 재정을 투입하여 청년고용 촉진을 도모하였으나 고용 사정은 여전히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더욱이 청년일자리 대책으로 반영된 사업들이 사업의 실효성 부족, 타 사업과의 중복 등을 이유로 폐지되었음을 감안할 때 청년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보다 철저한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일반회계, 고용보험기금 그리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중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에서 불필요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이를 타사업의 전용재원으로 활용하였는바, 이는 적절하

지 않은 예산집행으로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 사회적기업 육성 사업에서 사회적기업은 양적인 측면에서는 성장하였으나 정부 지원금에 대한 지나친 의존으로 인해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과 자립성 등 질적인 측면에서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사회적기업의 질적 수준 제고와 내실화를 위해서 더 큰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 실업크레딧 지원사업은 법률 개정을 전제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동 예산이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관련 법률의 개정안이 11월에 제출되어 개정 가능성이 크지 않았음을 감안할 때 보다 신중한 예산 편성이 필요했다고 봅니다.

다음, 고용보험기금 중 고용촉진지원금이 청년을 채용한 사업주에게 지급되고 있으나 이와 같은 단기 지원금으로 청년채용이 확대될 것으로는 보기 어렵고 또한 구직자 중 일부에게만 동 지원금이 지급되어 고용시장의 왜곡을 초래할 위험이 있으므로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 건설일용근로자 기능향상지원사업은 정부 예산과 공제회 자체 예산이 중복 투입되어 추진되고 있으므로 사업의 성격 및 재원의 조달 가능성을 검토하여 양 사업을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 취약계층 취업지원사업에서 운영 중인 건설일용근로자 무료직업소개소는 민간직업소개소에 비하여 근로자 소개 시 5배 이상의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바, 재정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 구직급여에 있어서 법률로 정한 하한액은 4만 3416원이나 시행령으로 정한 상한액은 4만 3000원으로 급여 역전현상이 이루어져 실질적으로 구직급여를 지급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령을 개정하여 합리적인 구직급여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모성보호급여제도 신설 당시 급여의 성격상 그 소요 재원은 건강보험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 다수 의견이었으나, 건강보험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일시적으로 고용보험과 일반회계에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 것인데, 모성보호급여의 지출 증대로 고용보험기금의 여유자금이 고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모성보호급여의 안정적인 재원마련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은 의무고용률의 상향, 고용부담금 산출기준 단가인 최저임금액 증가 등의 효과로 기금의 적립금은 여유가 있는 반면 훈련시설이 부족하여 장애인고용촉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 고용촉진에 직접 지원되는 취업 지원, 훈련 확대 등 장애인기금의 여유자금 활용 방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홍영표**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양건** 고용노동부 소관 결산 중에서 고용정책실 외의 사업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요약보고서 1쪽의 공통사항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경에 편성된 사업의 집행실적을 점검한 결과 집행 가능성이 부족했던 취업성공패키지지원사업 등 4개 사업의 불용액이 추경에서 증액된 예산액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향후 추경안 편성 시 그동안의 집행실적 및 정책 수요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공공기관의 운영비를 분석한 결과 12개 공공기관 중에 4개 기관에서 여비 과다 지급 사례가 있었으며, 6개 기관에서 퇴직급여충당금을 직원 자녀 학자금 대부, 사택 임차보증금 등 원래 목적과 다르게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바, 공공기관 여비 및 퇴직급여충당금이 적절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 중 과태료의 경우 일부 법률을 제외하면 고용노동부 소관 과태료 부과 실적은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보이며 과태료의 징수실적도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어 국가재정 확보뿐 아니라 제재수단으로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 및 수납실적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직업능력개발사업 중 취업사관학교 운영은 최근 4년간 고용유지 인원을 점검한 결과 수료인원 대비 고용유지율이 29.5%로 낮고 동 사업의 효과가 저조하므로 취업자의 사후관리를 강화

하는 등 사업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근로조건 보호 및 복지증진 사업 중에 권리구제지원팀 운영에서는 취약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채용한 권리구제지원팀의 변호사 및 공인노무사가 취약근로자 지원과 관련이 없는 업무까지 수행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권리구제지원팀 소속 변호사와 공인노무사 업무를 일반직 근로감독관 업무와 차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고용노동행정지원사업 중 노동위원회 전문성 강화사업은 조정사건 및 심판사건의 조정성립률 및 화해율이 2014년에 이어 2015년에도 하락하였는데 그 성과가 하락하고 있는 이유를 분석하고 이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고용보험기금사업 중—요약보고서 4쪽입니다—직업능력개발사업 중 숙련기술장려적립금은 세입세출예산 외로 운용되는 자금이나 예산사업인 숙련기술장려사업 예산액 부족 시에 이를 보충하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며 민간기부금 외에 별도의 수입도 없는 등 재원구조가 불안정하므로 적립금 운용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산재보험과 예방기금입니다.

최근 5년간의 산업재해 발생 현황을 점검한 결과 전체 재해자 수 및 재해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나 55세 이상 고령자의 재해자 수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고령자의 특성을 고려한 산재예방사업 및 정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5쪽의 산재보험사업 중 산재근로자 직업훈련은 2014년 하반기부터 직업훈련비 지급기준을 변경함에 따라 1인당 평균 훈련비용 및 훈련기간이 감소하여 당초 계획액 대비 72%만 집행되었는데, 향후 다음연도 지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제도변경 사항을 고려하여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함으로써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5쪽 하단의 노동행정지원사업 중 보험사무대행기관 지원금은 보험사무대행기관 및 위탁사업장 수가 크게 증가하였음에도 지원금 지급기준이 인하됨에 따라 일부 불용이 발생하였는데,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는 공익적 성격이 있음을 고려할 때 적정 수준의 예산을 확보하고 지원금 지급 수준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6쪽의 임금채권보장기금입니다.

임금채권보장기금은 지속적으로 수입액이 지출액을 초과함에 따라서 2016년부터 사업주 부담금 요율을 보수총액의 0.08%에서 0.06%로 인하하였는데, 인하된 요율을 적용하더라도 여전히 기금수지가 흑자일 것으로 예상되는 점과 기금의 여유자산을 적립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을 고려할 때 소액채당금 상한액 인상도 같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근로복지진흥기금 중에 직장여성아파트 관리운영은 기획재정부로부터 동 사업의 수혜 대상이 행복주택사업의 수혜 대상에 포함되어 중복 지원의 소지가 있으므로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전체 근로 빈곤층에 대한 복지 확대라는 기금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도 있으므로 사업의 단계적인 축소를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7쪽의 예비비 지출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예비비 53억 8500만 원을 상생의 노사문화 구축사업 홍보예산으로 집행하였는데 일부 신문광고 및 TV광고는 예비비에 대한 대통령 승인 이전에 실시된 것으로 향후 예비비 사용 승인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 지출원인행위를 하는 등 예비비 사용 절차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홍영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질의는 국회법 제60조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5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용득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용득 위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용득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노동부는 최근 6월 30일 조선업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발표하였습니다. 그 상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상향, 기업훈련비 지원, 사회보험료 납부유예부터 기존부터 운영해 오던 일자리 사업인 취업성공패키지까지 총망라되어 있습니다. 노동부가 스스로 동원할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은 거의 모두

동원되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매우 화려해 보입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보기에는 화려한 말잔치에 불과합니다.

다음 화면 보시지요.

양두구육, 양머리를 걸어 놓고 개고기를 판다는 사자성어지요.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화려한 말잔치에 불과하다, 그리고 실제 숨은 의도가 있는 겉과 속이 다른 정책 발표였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왜일까요?

다음 화면 보시지요.

우선 노동부의 지원업종 발표에는 크게 네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가장 많은 인원 규모를 차지하는 3대 조선사가 제외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책의 효과성이 반감되었고, 둘째 가장 열악한 하청노동자인 물량팀을 사실상 포기해서 노동부의 무능력을 만천하에 드러낸 발표였다, 셋째 대량해고 발생을 전제한 사후약방문식의 소극적 대응이었고, 넷째 노동계와 대화 없이 만들어진 불통의 정책이라는 것입니다.

다음 보시지요.

참으로 개탄스러울 노릇인데 구체적으로 하나 하나 따져 보겠습니다.

첫 번째, 양두구육이라는 것은 빅3 조선사들이 이번 업종 지원대상에서 제외했다는 것입니다. 노동부는 빅3 조선사를 제외하면서 ‘물량이 아직도 남아 있고 또 경영 상황도 상대적으로 나았다. 노사 간 자구노력이 미흡하다’라고 우리 장관께서 멘트를 통해서 그 사유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저는 노동부의 그런 해명을 그대로 믿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다음 화면 보시지요.

우선 사실관계를 따져 봅시다.

첫째, 대형조선소 등 조선업 경영 악화를 강조하고 인력 구조조정 등 자구원을 먼저 강력히 요구했던 측이 바로 노동부와 박근혜 대통령이었습니다.

둘째, 이런 분위기 속에서 조선사 사용자 측은 분사, 희망퇴직 등을 추진했고 특근수당 없애기 등 실질임금 축소를 추진하면서 정부에 호응했습니다.

셋째,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노동계는 애초부터 정리해고가 시급할 정도의 경영상태 악화는 아니라고 얘기해 왔습니다. 그런데 노동계의 목

소리를 무시해 오던 이기권 장관께서는 6월 30일 발표를 통해서 슬그머니 ‘빅3 경영 상태가 나쁘지 않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결국 노동부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이에 따른 각종 지원 혜택을 볼모로 삼아서 말을 바꾸고 겁박하고 있는 겁니다. 노동부가 노조 길들이기, 파업 무력화를 시도하면서 대량해고를 강요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더군다나 일반회계도 아닌 기금 가지고 돈으로 치졸하게 장난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지적하신 네 가지에 대해서 간략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또 필요하다면 별도로 상세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3대 조선사를 제외한 것은 수주잔량이 3대 조선사는 약 75%고 중소기업은 55%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차등을 줘야 한다고 보고, 무엇보다도 가장 어려운 물량팀이나 협력업체 중심으로……

○이용득 위원 시간상 나중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용득 위원 다음 화면 보시지요.

노동부가 두 번째 양두구육이라고 드리는 것은 물량팀 노동자들을 사실상 포기한 겁니다.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주 업무보고 현안질의를 통해서도 강력히 지적했지만 물량팀 노동자들에 대한 실업급여나 체불청산이나 체당금 등 지원 대책은 근로자성 인정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노동부의 물량팀 대책은 아직까지도 무성의, 무능력 그 자체입니다.

저번 주 업무보고 현안질의를 통해서 조선업 물량팀 규모를 정확히 파악해 달라고 했는데 파악했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에는 민관합동조사단 활동으로도 아직까지 전체 규모를 파악하지 못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현재 한 1만 300명 정도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용득 위원 훨씬 더 많습니다.

어쨌든 그렇다면 정확하게 파악하려고 그러면 그 해답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홍영표 좀 마무리해 주십시오.

○이용득 위원 제가 파악한 바로는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등 조선사 원청이 원청과 하청과 물량팀 전원에 대해서 출입카드를 발급하고 그 출입기록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이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저희들도 실업 인정 과정에서 원청의 출입기록을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용득 위원 이 자료만 노동부가 확보하면 물량팀 규모 파악은 물론 물량팀 근로자성 입증 문제 한꺼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맞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실업급여……

○이용득 위원 그런데 뭐 그렇게 파악이 어렵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하는 과정에 저희들도……

○이용득 위원 다음 한번……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보존자료로 출입기록을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영표 마무리를 해 주십시오.

○이용득 위원 예, 다음 화면.

안 됩니까?

패스하겠습니다. 패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패스하겠습니다.

노동계와 대화가 계속 없는데 대화를 하세요.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6월 13일 국회의 개원 연설을 통해서 스웨덴 말피의 눈물을 언급하면서 조속한 구조조정을 촉구했습니다. 맞지요?

그런데 대통령께서 말피의 눈물이 의미하는 그 중요한 배경은 전혀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말피의 경우는 스웨덴 조선업의 쇠락 속에서도 끝까지, 끝까지 노사정의 격의 없는 대화를 통해서 말피가 조선업·제조업 산업에서 발전적 변화를 가져온 도시로 전 유럽에 정평이 나 있는 도시입니다.

노동부와 박근혜 대통령은 말피의 눈물을 인용할 자격이 없다고 보고, 앞으로 고민하고 반성하고 우리의 조선업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3사의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그 당사자들하고 저나 또 저희 고용노동

부가 집행하는 과정에 더 많은 대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영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정미 위원 장관님, 오늘 아까 모두발언에서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꼭 필요한 곳에 내실 있게 집행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죽 결산보고를 받으면서 굉장히 특이하고 비정상적인 부분을 발견을 했고요, 결산검토보고서에서도 이미 이 문제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예비비에 관한 헌법이나 국가재정법을 다시 거론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54억 원이나 되는 예비비를 노동개혁 홍보에 다 투입을 하셨고 그 시점이 3월 23일 회계연도가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 홍보비를 추가로 다시 예비비를 끌어다가 홍보를 하셨습니다.

더군다나 대통령의 승인을 거쳐서 사용되어야 될 예비비가 승인 이전에, 아까 검토보고서 발표할 때도 말씀하셨지요, 두 차례, 12억 원이 소요가 됐다는 것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예비비가 사용되는 것이 적절하십니까? 적절한지 아닌지만 답변해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저희들은 그때 당시에는 불가피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 불가피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보에 사용됐던 내용들이 대부분 뭐냐면 ‘노동개혁은 우리 아들과 딸의 일자리입니다’가 수십 차례, 그다음에 ‘노동개혁 입법을 응원합니다’ 이런 내용이 수차례가 방송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노사정위원회가 이 노동개혁 문제와 관련해서 상당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었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또 입장의 차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회 안에서도 이것이 노동개혁이나, 노동계약이나,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노동개혁안에 대한 상당한 논란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 논란이 서로의 어떤 토론과 합의와 이런 과정을 거치기도 전에, 입법기관에서 그런 논의가 진행되기도 전에 일방적으로 정부의 주장을 국민들의 여론을 형성을 해서 노사정위원회를 압박하고 국회를 압박했다라고 하는 그런 혐의를 피해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거기에 대해 간단히 좀……

○이정미 위원 예.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말씀을 다 주시면 제가 답을 하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용득 위원님께서 그 조선 3사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자세한 얘기는 다 빼겠습니다.

일단 화면을 좀 보여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2014년도 국정감사 당시에 장관님께서 제조업 사내하청 다단계 하도급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실태조사와 함께 직접고용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2014년 12월 실태조사 시에 2차·3차 하도급업체 소속 종사자 중 물량팀이 95%, 돌관팀이 5% 이렇게 확인이 되었는데요. 2015년도, 1년 후에 조선해양산업 인적개발위 보고서에 따르면 하청업체 인원이 장관님 의지대로 줄었어야 하는데 오히려 더 늘어났습니다. 한마디로 비정상적인 고용시장이 더 확대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왜 장관님의 의지와는 반대로 하청업체, 하청노동자들은 계속 늘어났는지 이 문제를 짚고 싶고요. 더군다나 지금 만몇천 명의 조선해양산업의 하청노동자가 잘려 나간 그 자리에 똑같이 다시 저렇게 일용직 노동자들을 구인·구직하고 있는 이런 광고가 나돌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로 과연 이 비정상적인 고용시장 구조를 장관님 의지대로 개선할 수 있는지 아니면 진짜 그런 의지가 있으신 건지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번에 조선해양산업 문제가 터지고 난 이후에 물량팀 노동자들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다 판단을 했고, 그래서 6월 30일 날 고용노동부가 사후적인 조치로 물량팀 보호를 위한 피보험자격 취득 특별신고기간을 운영을 하셨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이정미 위원 그런데 이것이 그다지 그렇게 실효성을 거두고 있지 못하다고 하는 그런 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주장하는 것은 대형조선사에서는 원청에서 출입증을 발급하거나 어떤 전체적인 방법으로 출퇴근기록을 남길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량노동자가 내가 갖고 있지도 않은 월급명세서,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해 가지고 전전공공하다가 어떠한 혜택도 받지 못하는 이런 실효성 없는 대책이 아니라 원청의 전자기록들을 다 확인하면 그것에 대한 피보험자격 취득을 충분히 정부가 먼저 구체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이런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생각이 있으신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먼저 말씀하신 홍보비 관련해서는 14년 12월 20일에 노사정이 어떠한 방향으로 개혁하겠다고 기본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16년이면 정년 60세가 시행이 되니 법을 고칠 것 그다음에 현장에서 실행할 것을 15년에 다 완성을 하자는 게 기본합의에 들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합의를 15년 3월까지 하기로 했었는데요, 그게 3월이 넘어가려고 하기 때문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정미 위원** 장관님, 그 자체가 논란이 되는 안 아닙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개혁의 효과를 청년들에게 그다음에 현재 일하고 있는 장년들의 고용 안정 이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현장에 알려 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이정미 위원** 장관님, 그 취지가 아니라요, 그러면 예비비를 이런 식으로 쓴 것이 옳습니까? 잘하신 일입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아니, 그러니까 절차적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예비비 승인절차, 대통령 승인 나기 전에 저희들이 먼저 쓴 부분은 저희들이 절차적으로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불가피성은 좀 인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절차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조선업 쪽 물량팀 관련해서는 2014년에 저희가 약 1만 400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협력업체에서 채용하도록 저희들이 권유를 했고 그래서 한 4000명은 줄었습니다. 금년 말로 줄었는데, 최근에 2015년에 플랜트 쪽에 일부가 늘어났던 것으로 저희들은 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협력업체에서 물량

팀을 다시 운영하기보다는 앞으로는 직접 채용하도록 권유를 하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물량팀에 실업급여 지급하는 문제는 저희들도 원청의 출입기록관리를 가지고, 다른 입증이 어려우면 그것을 가지고 역추적을 해서 최대한 물량팀에 근무했던 분들에게 실업급여를 줄 수 있도록 해 갈 계획입니다.

○**이정미 위원** 원청에 요청하신 내용과 그것에 대한 답변서 이런 것을 취합해서 가지고 저희 의원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리고 세대간 상생고용 지원 제도와 관련된 것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영표** 이정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원진 위원……

○**조원진 위원** 먼저 하세요, 서형수 위원.

○**위원장 홍영표** 서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형수 위원** 장관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8일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일자리사업 심층평가 보고했었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위원님, 제가 정확히 못 들었습니다.

○**서형수 위원** 일자리사업 심층평가 부분……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그렇습니다. KDI에서 평가한 부분 보고 들었습니다.

○**서형수 위원** 거기에 평가작업에 노동부 참여 하셨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저도 참석했습니다.

○**서형수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들을 좀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아직 중간 단계인데 드려도 될까요?

○**서형수 위원** 예.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저희가 지금 중간 단계이고 앞으로 더 협의할 내용들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관련해서 지금 조기 도입 기관은 이번 7월 달에 인센티브가 나가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그 기관별로 성과

급이……

○서형수 위원 인센티브 나가는 대상에 원래 지금 근로자 쪽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노사 합의가 안 된 부분에 대한 공공기관도 해당이 됩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그 부분은 좀 협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내용의 타당성과 절차의 타당성을 한꺼번에 가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서형수 위원 어쨌든 지금 노사 합의가 절차가 완결되지 않은 성과연봉제 상태에 있는 기관은 이번 7월에 인센티브 대상은 안 되는 거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그 부분은 공공기관을 총괄 관리하는 쪽으로 인센티브를 설정한 쪽하고 저희가 다시 한 번 협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형수 위원 지난번 이 자리에서 보고했을 때는 노사 합의 절차를 최대한 유도하고 그 이후에 진행한다고 답변하지 않으셨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그러니까 저희가 이사회에서 도입을 했다 하는 기관의 도입하고 저희들이 저희 근로기준법의 효력이 발생하는 부분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두 부분은 저희하고 기재부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됩니다. 협의가 돼서 정리가 되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수 위원 아니, 고용부 입장에서는 일단 노사 합의가 안 된 공공기관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지급할 의지가 없는 거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저희는 효력이 발생하려면 내용의 합리성과 절차적 합리성을 같이 가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협의를 해 봐야 됩니다.

○서형수 위원 절차적 합리성은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없다고 판단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절차적인 것이 부족한 부분은 누구든 양측 다 최선을 다하는 게 입증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이 개별 사업별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좀……

○서형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금 일반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으로서 지금 대한민국헌법 조항 중에 고용노동부하고 관련되는 헌법 조항이 몇 조, 몇 조인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노동삼권 부분도 있고

요, 여기 지금 보여 주신 최저임금 시행 관련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국민의 어떤 실질적인 생활 증진과 관련돼서도 저희가 관련이 있습니다.

○서형수 위원 제가 보니까 일단 32조하고 33조, 32조는 국민의 근로권 그다음에 33조가 노동삼권인데요. 지금 32조1항을 보면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이게 사실은 전체 우리 고용정책의 근거가 되는 조항으로 보이는데요. 동의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그렇습니다.

○서형수 위원 일단 이 조항의 문맥을 그대로 보면 일단은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일할 권리는 국민한테 있는 거다, 근로의 권리 일할 권리는 국민의 기본권이지요? 국민의 기본권에 대응해서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을 위하여 노력해야 되는 국가의 의무를 정한 겁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현재 근로자, 국민 입장에서 일할 능력과 필요와 어떤 의사를 가진 사람이 아무리 지금 현재 일자리를 구해도 적정임금이 보장되는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을 경우에 그 책임은 국민한테 있는 겁니까, 국가한테 있는 겁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국가가 국민들이 일하고 싶어도 못할 때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형수 위원 글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실제로 자기한테 적정임금을 보장하는 일자리를 못 구했을 때 정부가 국가가 하고 있는 제도가 크게 뭐가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그래서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근로능력이 있는 분들은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민간시장에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취업알선기능을 하고……

○서형수 위원 글썄요, 그게 안 돼서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실업급여가 일차적인 보장이 되는, 실업급여의 대상이 되지 않는 청년이라든지 그다음에 장기실업자라든지 영세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사실은 거기에 대한 보장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금 실업부조라든지 그다음에 고용촉

진 보장 자체가 제도로 나오는데 특히 서울시 같은 데나 지방자치단체 보면 청년수당 같은 것을 도입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국가가 져야 될 책임 자체를 그런 식으로 보전하는 것 자체가 타당하다고 보이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유럽에서도 실업급여 외에 실업부조를 운영했던 국가들이 소위 실업부조가 일자리의 이행력이 크지를 않아서 지금은 실업급여로 다 통합 운영을 하고 있으면서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는 과정에 지원하는 체제로 바뀌었습니다.

(홍영표 위원장, 한정애 간사와 사회교대)

저희도 그래서 그 부분이 많이 논란이 되어 있는데 저희의 소위 취업성공패키지나 내가 일자리를 찾아가는 데 어려움이 있을 때는 그 일자리를 찾는 과정에서 훈련과정에 훈련수당을 준다 할지 또 차별을 준다 할지 이렇게 해서 정확히 실업부조는 아니지만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는 과정의 지원은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또 필요하다면 그 부분을 보완해 갈 계획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서형수 위원 서울시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청년수당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는 거예요, 취지 자체에 대해서?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그러니까 국가와 함께 일자리를 찾아가는 새로운 형태입니다. 유럽도 그렇게 하고 있고.

○서형수 위원 서울시의 청년수당도 일자리를 찾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서울하고 정부하고 합동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만들어서 청년이 50만 명 가까이 나오는데 정부가 지금 청년층에 대해서 취업성공패키지로 도와줄 수 있는 것은 10만 명이 채 안 된다, 그래서 만약에 서울시가 여력이 있다라면 합동으로 하는 게 옳다, 또 그래야 이중의 문제도 없다…… 왜냐하면 청년들이 어디에 취업했을 때 기업이 보조금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결성이 크다, 그래서 독자적으로 할 일은 아니다 저희가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서형수 위원 하여튼 독자적으로 하지 않으면 그 제도 자체에는 동감을 하시는 겁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성격이 좀 다르다고 봅니다.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정애 서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원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진 위원 지금 노사정위원회가 어떻게 되어 있지요, 노사정위원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구성은 노동계……

○조원진 위원 아니, 노동계 그게 아니고 지금 운영 자체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죄송합니다.

우선 상임위원의 답을……

○조원진 위원 제가 간단하게 물어보려고 그래요.

그냥 노사정위원회가 사실 이 노동개혁이나 노동 현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직무대행 신영철 여기에서는 사회적 갈등이 있는 부분을 노사정공익위원이 참여하는 가운데서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협의를 하거나 아니면 더 진전이 가능한 경우에는 합의를 하는 그런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조원진 위원 장관님, 지난번에 노사정위원회에서 공익안까지 굉장히 어렵게 노동개혁에 대한 안이 올라왔는데 결국은 국회에게 거부하는 사태가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런 일련의 상황들이 계속 벌어질 텐데 그때는 노사정위원회가 어떻게 하지요? 또 올려도 또 안 될 것 아닙니까, 지금은 여소야대인데?

장관님도 그러면 그 노동개혁은 노사정위원회에서 올려서 안 되니까 이제 더 이상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어떤 방안이 있는 겁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크게 65개 항을 담고 있고 거기에는 노동개혁 법 개정사항, 현장의 실천사항, 특히 대기업 규제……

○조원진 위원 그 내용은 제가 다 알고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이 부분의 실천을 제대로 다 하겠습니다.

○조원진 위원 전체 그림은 어떻게 그려갈 거냐 하는 거지요, 노사정위원회하고 우리 장관, 노동부 쪽은.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기본합의사항 65개가

실천될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후속으로 논의할 사항은……

○조원진 위원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나, 그다음에 지금 최저임금 문제도 걸려 있잖아요. 그다음에 청년고용할당 부분, 책임할당 부분 이것도 다 걸려 있는 겁니다, 야당에서 주장하고 있고. 또 우리도 최저임금을 어느 정도 선까지는 올려야 된다 이런 입장인데 그러면 이러한 노동문제의 현안에 대한 갈등을 노사정위원회가 결정기관도 아니고 합의를 해서 제안을 했는데 지금의 분위기로는 안 된다, 그러면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될 것 아니에요. 노동부가 그 방법을 찾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 방법을 찾지 않고 그냥 노사정 위원회에서 안을 올렸더니, 지난번에도 1년 2년 계속 해도 안 됐잖아요. 그 합리적이라고 하는 공익안도 아예 거론조차 못하고 환노위가 열리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냥 이렇게 보고 지나가면 된다 이런 사항이 아니고 어떤 방법을 찾을 거냐……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저희가 희망컨대는 정부와 노사가 힘을 합쳐서 현장에 실천할 과제는 정부가 열심히 해서 노사현장에 실천하고요. 입법과 관련된 문제는 노사정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결론을 냈고 그다음에 비정규직 입법에 대해서……

○조원진 위원 자, 그러면 분리합시다. 실천과제하고 입법과제를 분리하는데 실천과제의 핵심은 이 입법을 통한 실천이 굉장히 핵심입니다, 사실은. 이것이 파급 효과도 크고 저는 기간제 파견법까지 다 합쳐서 5개 노동개혁이라고 이러는데 제가 근본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 되는 부분을 안 된다고 솔직하게 얘기하고 우리가 도저히 자신이 안 된다, 노동부도 할 수 없고 노사정 위원회도 할 수 없다 그러면 사회적 대타협을 해야지요.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만들어서, 이게 그냥 안 된다고 시간만 지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 피해는 누가 보느냐, 근로자나 노동자들이 보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사업주가 보고 어떤 경우는 약자들이 보는 경우가 되게 많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이제 환노위도 새로 열려서 여당이 가장 거부했던 혹은 정부가 거부했던 노사정 대타협,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구성을 해서 한번 대타협의 토론의 물꼬를 열어야 된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겁을

먹고 정부도 그렇고 여당도 그렇고 그러느냐, 이제는 길이 없으면 그 길을 새로운 길로 열어서 노사정 대타협의 형태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분리하자는 겁니다. 실천과제는 실천과제대로 하고 입법의 문제는 노사정 대타협기구를 하자, 뭐 노동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민주노동 들어와도 좋다고 봐요. 그런데 반대가 있겠지요. 그런데 그러한 모든 관련되는 단체들이 다 모여서 이제 노사정 대타협을 가지고 국회에서 머리를 맞대고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인데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저는 현장에 실천할 부분은 저와 저희들 노사 또 협력업체 근로직원을 향상하는 데는 경제부처 내지는 기업들이 굉장히 협조를 해 줘야 될 사항입니다. 그 부분을 실천하고 입법과 관련된 사항은 제가 총선 이후에 3당의 원내대표 지도부를 찾아뵙고 이렇게 요청을 드렸습니다. 우리 환경노동위원회나 원내 지도부에서 노사정위원회 대타협에 참여했던 주체들을 불러서 또 현장의 당사자들을 불러서 얘기를 듣고 논의하면 공감대가 일 것으로 봤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조원진 위원 마무리할게요.

제가 굉장히 지금까지의 정부나 여당의 기조하고 완전히 다른 얘기를 오늘 한 겁니다. 제 얘기는 어떻게든 이 시간을 끝면 끝수록 결국은 노동자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그러면 누군가는 양보를 하고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사회적 대타협이라는 큰 틀을 만들어서 환노위를 중심으로 해서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만들어서 한번 얘기를 해 보자, 그 안에 여러 가지 노동의 현안들을 좀 집어넣어서 해 보자 이런 입장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저도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노사정 대타협에 참여했던 주체들을 불러서 충분히 토론을 하면 공감대가 훨씬 커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원진 위원 저는 노사정위원회가 하는 그러한 노사정위원회의 실천과제는 계속 하시고 제가 말하는 것은 이제는 사회적 대타협으로 끌고 들어와야 된다, 제가 지금의 정부 방침이나 지금의 새누리당 방침하고 전혀 다른 얘기를 한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과제를 생각하시고 어

는 것이 과연 노동자를 위해서 옳은 길인가 그 부분에 일대 변화가 필요하다 저는 이 말씀을 좀 드릴게요.

○위원장대리 한정애 조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돈 위원 저는 장관님 잠깐 쉬시고요, 차관께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나온 이 보고서를 분석을, 다 보셨지요?

○고용노동부차관 고영선 예, 부분적으로……

○이상돈 위원 그것 보니까 고용노동부가 일자리 관련해서 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대해서 상당히 평가를 했는데요. 표현은 굉장히 부드럽게 했지만 많은 부분에 고용노동부가 하는 일자리 관련 프로그램이 목적은 이해할 수도 있지만 예산에 비해서 효과도 없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대표적인 게 취업성공패키지, 세대간 상생 같은 굉장히 많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효율성, 첫째로 이런 프로그램이 실효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차관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차관 고영선 특히 작년에 추경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당시의 경제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소 물량도 많이 잡고 한 측면도 있었어요. 그 전에도 전반적으로 그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마는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상돈 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런 것을 상당히 개선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일자리가 사실 그렇잖아요. 노동부가 일자리 만드는 게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민간이야 뭐 투자…… 경제가 활성화돼야 일자리가 생기지. 그런 고충 충분히 이해하지만 지금 우리 상황이 굉장히 시급한 것도 다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부에서 예산을 써서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실효성 문제를 좀 따져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짧은 시간에, 지난 주일에 봤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한계가 있는데 이런 것을 고용노동부가 전반적으로 자체 평가를 해서 죽일 프로그램은 죽이고 잘되는 것

은 잘하고 이래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쪽 보다가 아주 특이한 명칭이 들어 있어서 하나 봤어요.

비정규직서포터즈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 차관께서도 알고 계시지요?

○고용노동부차관 고영선 예.

○이상돈 위원 연간 예산은 작년에 1억 8000이어서 많지는 않습니다. 보니까 이건 관련된 대학교수 삼사십 명을 서포터즈로, 그런 명칭으로 쪽 해서 뭘 하나 하고 제가 요청해서 보니까 이른바 비정규직 또는 기간제 근로자들의 사업장에서의 상황을 파악해서 설득하고 하는데, 대체로 보면 이게 관련되는 업체가 주로 대학교병원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사회에서 시급한 입장도 아닌 것 같고.

또 하나는 저도 평생 교수를 했지만 대학교수라는 게 정규직 중의 정규직 아닙니까, 정년 보장되는? 대학교수들이 과연 이런 기간제나 파견제 근로자들의 애환을 하는데 그게 얼마나 설득력이 있겠는가 하는 점이 있어요.

그리고 또 실제로 예산을 보니까 이게 대부분 대학교수들한테 용역비로 나간 거예요, 40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이렇게. 이건 액수는 큰 프로그램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 보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전시성에 치우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국회예산정책처의 보고서와 마찬가지로 일자리 프로그램이 너무 많은 게 아닌가, 효율성 같은 것을 봐서 한번 자체 심사·분석을 해서 폐지할 것은 폐지하고 전시성 같은 것은 없애야만 예산도 잘 쓰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답변해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차관 고영선 예, 그렇잖아도 그런 문제점 때문에 아까도 잠깐 거론이 됐던 KDI, 국민경제자문회의와 같이 이번에 일자리사업 전반에 대해서 심층 평가를 했습니다. 기재부가 중심이 돼서 했고요. 관련된 여러 가지 제안이 있어서 그것을 저희가 전향적으로 반영을 해서 이번에 말씀하신 방향으로 많이 고치려고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지속적으로 저희가 평가를 하면서 계속해서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돈 위원 이게 다 국민 세금을 쓰는 거기 때문에 일자리도 일자리지만 과연 정부 프로그램이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자체적으

로 반성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도 지금 20대 처음 왔기 때문에 처음 보는 위원들도 깊이 알고 있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예산에 대해서 보다 잘 들여다볼 생각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위원님, 종합적으로 15조 8000억 일자리예산의 종합개편방안이 나오면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정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주 위원** 장관님, 지금 최저임금협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지금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막판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옥주 위원** 본 위원이 보고받기로는 공익위원들은 타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고요, 사용자위원들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저임금 법정시한은 이미 넘겼고요.

정부 제출 시한은 언제까지인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최저임금위원장님이 나와 계시기 때문에……

○**최저임금위원장 박준성**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령에 나와 있는 것은 요청 심의를 받고 90일 기간 동안에 심의를 해서 의결을 하면 고용부 장관께서 8월 5일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옥주 위원**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정부에 제출하는 시한이 7월 16일은 아닌가요?

○**최저임금위원장 박준성** 그 해석은 8월 5일 고시일 이전 20일 간 이의신청 받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을 역산을 하면 7월 16일로 예정이 됩니다.

○**송옥주 위원** 7월 16일이면 다음 주인데요, 정부가 그동안 뭐 하고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마치 남의 집 불 구경하듯 하고 있어서 진척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 당시 최경환 경제부총리까지 나서서 최저임금 인상이 대폭 필요하다고 강조할 때는 언제고 지금 정부가 이렇게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지금 어느 때보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목소리가 높습니다. 아시겠지만 최저임금만으로는 도

저히 먹고살기 힘들기 때문인데요. 이런 국민들의 요구가 높아서 지난 총선 때 여야 할 것 없이 최저임금 인상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습니다.

지난 총선 때 최저임금 인상 공약을 알고 계시지요? 이걸 장관님께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송옥주 위원** 혹시 각 당별로 최저임금 공약이 생각나시나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송옥주 위원**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세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최저임금 1만 원부터 단계적으로 인상 등 여러 당들이 다양하게 제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부분의 최저임금 결정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박근혜정부 들어서 최저임금 결정을 하는 룰이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 공식 외에 우리 사회 격차 해소라는 노력을 하자고 해서 격차해소분이라는 것을 2% 더 넣어서 쪽 해 오고 있습니다.

○**송옥주 위원** 구체적인 부분은 나중에 다시 들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그런 부분들이 담겨서 아마 최저임금위원회에서도 논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옥주 위원** 본 위원은 지난 달 29일 우리 당뿐 아니라 국민의당과 정의당 국회의원 70여 명과 함께 최저임금 두 자릿수 인상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낸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월요일에 세종시에 있는 최저임금위원회를 방문해서 최저임금의 현실화와 조속한 협상을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매년 최저임금을 둘러싸고 이런저런 지리한 일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실효성 등에 대해서 제도 자체에 대한 회의의 목소리도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그런데……

○**송옥주 위원** 본 위원은 최저임금을 둘러싸고 보다 생산적인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장관님의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결정 방식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그때그때의 경제상황을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게 현재의 위원회 방식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위원회 방식은 지금도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다만 논란이 되고 있

는 산업 범위 또 지역별·업종별 문제는 당사자 간에 굉장히 첨예하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장기적으로 보고 방향을 잡는 게 옳다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 두 자릿수 인상과 관련해서는 최근에 우리가 10년, 15년간 OECD 국가 중에 우리가 최저임금 인상률이 부동의 1등입니다. 더더욱 격차해소라는 큰 철학을 가지고 가면서도, 문제는 최저임금으로 인해서 영향력이 우리가 18%, 세계 어디에도 없는 영향을 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얘기를 뒤집어 보면 최저임금 인상과 고용과의 관계가 매우 밀접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이삼일 내에도 아파트 경비하시는 분들이 스스로 자기가 떠나는 공고를 붙인다는 그런 소위 일자리를 잃어버리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종합해서 격차를 해소하되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아마 위원회가, 또 현장도 충분히 가 보고 있기 때문에 노사의 의견을 함께 하면서 위원회가 결정해 나갈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송옥주 위원** 최근 더불어민주당에서 최저임금과 관련된 결정 권한을 국회에서 하겠다라고 법제안을 하신 것은 알고 계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제가 말씀드렸듯이 경제상황에 맞게끔 그때그때 하는 데는 위원회 방식이 더 장점이 많다고 국제적으로도 보고 있습니다.

○**송옥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정애** 송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이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이자 위원** 장관님, 지난번 업무보고 때 제가 노동개혁 4법 가지고 3법은 어느 정도 서로가 지난 19대에도 합의가 된 걸로 알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보는데 파견법 관련돼 가지고는 상당히 이견이 있다, 그래서 굳이 파견법을 같이 패키지로 묶어서 통과시키려고 하는 이유를 제가 물었을 때 장관께서는 3법은 정규직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고 파견법은 비정규직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맞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임이자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선뜻 이게 납득이 잘 안 돼요. 파견법이 어떻게 해서 비정규직을 보호하는 법일까, 일용 일용직들이 다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그나마 파견법으로라도 묶어 가지고 고용보험이라든가 4대 보험이라도 들어 주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보호는 된다고 보아지나 그게 중히 비정규직을 보호한다라는 느낌이 확 와 닿지 않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제가 비정규직법, 파견법은 소위 말해서 일을 갖지 못한 분들, 더 절박한 일을 갖지 못한 분들에게 일을 갖게 해 주는 데 더 용이하고 또 비정규직 중에서도 법에 의해서 차별받지 않도록 보호를 받는 비정규직이 있고 보호를 못 받는 비정규직이 있다, 예를 들면 용역이나 일용 쪽, 특히 특수형태, 노동법 자체가 적용 안 된 이 영역들을 가급적이면 차별을 못 하게 하는 보호용역으로 오게 하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일을 못 가진 분과 법의 보호를 못 받는 분들이 이쪽으로 오게 하는 효과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저는 비정규직 보호라고 보고 있습니다.

○**임이자 위원** 장관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수궁은 갑니다마는 이게 딱히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는 않는다는 거지요.

앞서서 조원진 위원님께서 노사정, 더 나아가서 사회적 대화, 큰 틀에서 한번 우리가 논의를 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본 위원도……

새누리당에서는 최저임금 관련돼 가지고 EITC로 좀 보완해서 소득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한번 해 보자라는 안이 있었거든요, 지난번 총선 공약으로.

그리고 지금 우리가 모성보호 관련돼 가지고 기금 관련돼서도 또 한 번 큰 사회적 합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고용기금이 지금 고갈되어 가는 상황에서 또 이게 수혜자가 근로자에 한해서만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 쪽으로 돌리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얘기들이 왕왕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든 부분들을, 아까 장관님께서 유럽에서 실업부조 관련돼 가지고는 실패해서 결국은 실업급여로 다 묶었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계속 벌어질 대량실업은 우리가 불가피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맞게, 우리 실정에 맞는 실업부조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서로

논의를 할 수 있는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협의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한번 이것을 만들어서 해 볼 생각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우선 가장 저소득 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소득 향상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EITC로 올리고 보험료를 대신 국가가 대납해 주는 것도 실질급여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소위 두루누리사업에서 1년에 5000억, 6000억 원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최저임금에 대한 적정수익에 융합을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어서 저도 경제부처한테 EITC를 한 단계 더 높여서 최저임금에 대한 부담도 줄여 주면서, 실질적으로 부탁말씀을 드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모성보호 관련해서는 저희 실업급여 유보율이 0.7로 떨어진 것도 모성급여 부분이 높아서 이번에는 최소한 출산휴가 부분만큼이라도 건강보험에서 해 줘야 한다고 보고 있고 일반회계의 모성보호 출연 부분도 더 높여야 된다고 하고 있고, 위원님들께 많이 그 부분이 그렇게 갈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 의결할 때 도와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반적으로 앞으로는 실업과 취업이 많이 이동이 잦을 수밖에 없어서 저희들도 실업급여를 보다 높일 수 있는 쪽으로 법 개정도 나와 있고 총체적인 부분은 충분히 협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임이자 위원 그 사회적 대타협을 이룰 수 있는 기구를 다시 한 번 만들어서 논의의 틀로 가겠다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그것은 환노위에서 그간 노사정위에서 논의했던 당사자를 불러서 논의를 하다 보면 공감대가 많이 형성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정애 임이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삼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화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장관님 화면을 한번 보시면, 전문위원께서도 아까 적절하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현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고용률 70% 달성 관련 고용노동부 사업리스트 중에서 몇 개 추려 본 겁니다.

이것을 보면 2015년도의 예산 불용률을 저것하고 관련해서 보면 임금피크제 지원금은 45%, 고용창출 지원사업은 32%, 중소기업 청년인턴제는 30%, 취업성공패키지는 20%에 이르고 있는 거거든요, 저것 보시면.

다음 화면 한번 보여 주세요.

그다음 화면 보면 그중에서 취업성공패키지,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청년취업아카데미 운영 지원은 추경을 편성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불용액이, 2015년 결산 결과 불용액이 오히려 추경액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취업성공패키지 사업과 관련해서 예결위 2012년도 결산에서도 집행 부진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을 요구한 바 있었고 또 2015년 환노위 추경 심의 과정에서도 2015년 6월 기준으로 본예산 집행률이 41%에 불과해서 추경 예산집행이 가능하냐 하면서 예결위 소위위원님들의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알고 계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김삼화 위원 그때 고용노동부가 적극적으로 참여자를 발굴해서 예산을 다 집행하겠다는 그렇게 약속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삼화 위원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된 거지요? 간단하게만 해 주세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원래 작년도 물량이 재작년에 비해서 10만 명이, 50%가 늘었습니다. 거기다가 추경에 저희들이 6만 명을 더 한 것은 메르스 사태가 저는 굉장히 심각하게 봤는데 그 부분이 있었고……

○김삼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저희들이 또 다 못하고 민간기관에다 의뢰하다 보니까 실행과정에 한계도 있었습니다.

○김삼화 위원 민간에 의뢰해서 하셨다는 거예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저희가 절반 정도, 민간에 절반 의뢰를 하고 있는데요.

○김삼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화면.

저것은 어떤 방송 화면인데요. 중소기업 청년

인턴제 등 청년인턴제가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는데 부정수급과 고용노동부 사후관리 부실이 의심된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추경예산 편성기준이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지급성 또 목적의 적합성, 연내 집행가능성 이렇게 전제되는 것 아닙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김삼화 위원** 그런데 앞에서 보셨다시피 불용액이 추경액보다 오히려 더 많을 정도로 그렇게 된다면 이것은 국가재정법에서 볼 수 있는 추경 편성기준하고도 또 안 맞다고 보여지고요.

취업성공패키지 예산을 보면 국회에 보고하지 않고 정부 임의로 직업안정기관 운영,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사회적기업 육성 예산으로 170억 원을 또 전용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따가 한꺼번에 말씀을 해 주시고요.

또 정부의 또 다른 핵심 국정과제인 세대 간 상생고용지원사업의 경우에도 추경으로 123억 원이 들어왔는데 그때도 역시 환노위 예결산소위에서 연내 집행가능성에 대해서 크게 우려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고용노동부가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했는데 결산 결과를 보면 불용액이 105억 원으로 예산 85%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업이 2016년 예산이 2015년도보다 오히려 더 증가를 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들 사업의 예산 편성과 집행 결과에 대해서는 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위원님, 전반적으로 불용이 많이 된 것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집행이 좀 부족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좀 설명을 드리면, 취업성공패키지는 원래 예산 자체가 제작년 14년보다 10만 명을 더 잡아서 한계가 있었던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청년인턴 문제는 말씀하신 부분대로 작년에 우리가 중소기업만 썼는데 중견기업까지 높여 주려고 했는데 중견기업은 바로 채용해 버리지, 인턴 절차가 자기들한테 안 맞다고 그래서 안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금년도는 청년내일공제제도로 청년들에게 직접 지원하는 것으로 제도를 바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용 문제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정말 어려운 국민들에게 고용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같은 일자리 찾아 주는 부분이라고 해서 법적 절차를 거쳐서 전용을 해서 썼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상생고용지원금은 정말 임금피크제를 통해서 청년들을 하나라도 더 채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작년에 추경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모집을 해서 실제 채용을 하고 월급을 준 뒤에 저희가 지원하기 때문에 시차가 한 6개월 이상 납니다. 그래서 작년은 부진했고 올해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 그게 지원이 되고 있어서, 앞으로는 편성하면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유의하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삼화 위원** 앞으로 2016년 결산에서는 또 다시 이런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최대한 정확히 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정애** 김삼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보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보라 위원** 장관님께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청년의무고용 이행결과를 발표하셨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그렇습니다.

○**신보라 위원** 그중에 보면 이행률도 작년에 비해서 좀 떨어졌는데 고용노동부의 산하기관 중 3개 기관, 그러니까 한국폴리텍,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잡월드 이 3개 기관은 2년 연속 불이행 기관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제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니까요.

그런데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르면 미이행 결과에 대해서 고용노동부장관께서 시정조치와 공고를 또 할 수 있고 또한 이 부분을 경영평가에 반영해서 이러한 조치들을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지난해 경영평가를 7월 1일에 완료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미이행 실적 이 그러면 실제 반영이 됐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알아본 결과에 따르면 경영평가 항목에 미이행 부분, 그러니까 의무고용을 3% 했느냐라고 하는 항목은 없었던 것 같고 물어봤더니 다시 조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하는 답변을 받았는데, 이 부분들이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소속기관들이 3% 의무할당을 스스로 지키려고 노력을 하면 좋겠지만 그런 것들이 경영평가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야 그런 노력을 할 텐

데 실은 그런 피드백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소극적이지 않겠습니까? 어쨌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위원님, 우리 산하기관부터 청년의무고용은 지키는 노력을 더 강화해야 된다는 지적은 옳으시고요. 폴리텍하고 한기대는 주로 교수를 채용하는데 교수는 학위 받고 나오면 기본이 35세가 넘어 버립니다. 그런 한계가 있어서 별도로 두 기관하고 그다음에 잡월드는 정원이 딱 정해져 있어서 세 기관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개별적으로 저희하고 상의해서 앞으로 이행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보라 위원 그러면 사실상……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평가와 관련해서는 공공기관 평가기준하고 달리해서 저희들이 다른 데다 그 항목을 넣었습니다. 배점도 더 많이 넣어서 했는데, 그것은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보라 위원 그 부분은 그러면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신보라 위원 그리고 전체적인 미이행 기관이 122곳으로 드러났는데……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그렇습니다.

○신보라 위원 이 부분에 대한 지금 향후 대응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저희가 기재부하고 협의를 해서 각 기관별로 사유를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보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그래서 청년고용도 늘리면서 그 늘려진 고용이 국민들한테 더 나은 서비스가 될 수 있는 방향의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기재부와 협의해서 그 이행률을 높여 가도록 지도해 가겠습니다.

(한정에 간사, 홍영표 위원장과 사회교대)

○신보라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제도가 있어도 결국 실천으로 옮겨지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분명 제도는 존재하지 않습니까? 청년들의 고용과 이런 것들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정부가 기울이고 있다라고 하지만 실제 실행 결과를 놓고 보면 아직도 미이행하고 있는 기관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5%로 더 확대하자, 대기업까지 확대하자 이런 것보다는 저는 있는 제도부터 우선 정확

히 지키려는 노력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위원님, 작년에 임금피크제가 돼서 금년에 한 4000명 이상 별도 정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금년은 조금 더 늘어나지 않을까 싶고요. 더 지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보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삼화 위원께서 지적을 해 주신 부분이 있기는 한데요, 중소기업 청년인턴제에 대해서 저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청년인턴제가 사업주와 청년인턴 모두에게 고용과 정규직 전환을 목표로 지원금을 주는 제도인데, 실제 결산내역들을 보면 근로자 지원금과 사업주에 대한 지원금이 거의 9배 이상 여전히 차이가 납니다. 물론 예전의 한 3년 전에 비하면 청년인턴들에게 돌아가는 혜택들이 더 많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그 규모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 예산편성 과정이 이게 옳은 거냐 하는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위원님, 지금 그 부분의 지적을 저희들이 감안하고 또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 금년 7월 1일부터 청년내일공제제도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청년들한테 가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신보라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여기 뒤에 보시면, 아까 JTBC의 기사에서도 나왔지만 사실상 인턴을 유령 인턴으로 채용화해서 1000만 원 이상을 착복한 이런 사례도 있고, 여기 보시면 인턴지원금을 받기…… 이게 지금 2016년 6월 정도에 나온 네이버지식인의 물음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인턴으로 거짓 채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체보들이 또 있거든요. 사실상 국민세금이 제대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쓰이지 못하고 낭비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의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한 강력한 처분이나 확실한 관리 감독 방안들이 마련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청년인턴뿐만이 아니고 직업훈련, 각종 보조금들

이 소위 부정수급의 소지가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사권을 가지고 저희가 직접 주는 쪽에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6개 청에 부정수급조사과도 만들고 궁극적으로는 센터에서 아예 수사권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서 보장을 하면서 부정수급을 더 막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보라 위원** 마지막으로 딱 한 말씀만……

아까 답변하실 때, 그래서 중소기업 청년인턴제를 내일채용공제로 하겠다고 하시는 건데 어쨌든 그래도 청년들이 좋은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에서 일 경험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보도를 보니까 아예 중소기업 청년인턴제를 폐지하고 내일채용공제로 바꾸겠다고 하는 기사를 봤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다수, 채용으로 일자리를 갖는 청년들에게는 내일채용공제체제로 가고요, 학교 단계에서 말 그대로 내가 장기적으로 취업하기 위해서 우선 일 경험하기 위한 채용 체험형입니다, 체험형. 그것은 별도로 유지를 하면서 체험 단계에서 기본적인 인권이 보호받으면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1만 명 정도 체험형 금년에도 시행을 합니다.

○**신보라 위원** 그러면 중소기업 취업인턴제는 없어지는 겁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금년에는 일부를 시행하면서 내일공제로 가고요, 그다음에 체험형은 체험형대로 유지하면서 내년에는 내일공제 쪽으로 많이 가려고 합니다, 대부분.

○**신보라 위원** 그 부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도 보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상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영표**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직 대체토론이 종결되지 않았지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대체토론이 종결되는 것을 전제로 환경부·고용노동부·기상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고용노동부 소관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기에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삼화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원님 여러분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정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정애 위원** 박준성 위원장님, 매년 보면 다음 해 최저임금 심의를 위해서 실태조사해 가지고 책자 만드시고 이렇게 하는데요, 올해 저도 그것을 봤는데요, 올해 실태조사서 보면 2015년에 전년 대비 7.1% 인상된 최저임금 적용과 관련해서 사업주 10명 중에 7명 이상이 최저임금을 인상해도 고용에 변동이 없다라고 했지요?

○**최저임금위원장 박준성** 예.

○**한정애 위원** 최저임금 인상과 고용과는 별 관계가 없다라고 답변한 분이 70% 가까이 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인 거지요?

○**최저임금위원장 박준성** 예.

○**한정애 위원** 알겠습니다.

파견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잠깐 띄워 봐 주세요. 제가 시간 많이 안 할 텐데……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안산지청에서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의 약정이라고 그래서 여기 보면 산업단지공단, 스마트허브경영자협회 각 대표들 이렇게 해서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약정 체결을 가집니다. 주요내용이 사업의 인력난 해소와 함께 불법파견근로의 확산을 방지하고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올해 4월 달에 있었던 거고요.

그다음 것 보여 주세요.

이게 4월 달에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를 위한 사회적 책임 실천 협약식이라고 해서 또 안산지청장께서 상공회의소 회장, 스마트허브경영자협회 회장, 파견협회 협회장, 산업단지공단 이렇게 해서 또 협약 체결합니다. 28일 날 협약 체결하시고 29일 날은 아침에 안산지청장과 직원들, 파견협회, 근로복지공단 다 한 50명이 8시부터 해서 취약계층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거리 캠페인도 했어요. 저렇게 하면 불법파견이 없어집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위원님, 그래서 경기 일원에……

○**한정애 위원** 잠시만요, 제가 질문이 안 끝났습니다.

노동부의 사회적 책임은 뭐니까? 노동부가 존재하는 사회적인 이유, 노동부의 사회적 책임은

됩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 분위기 조성도 있지만 저희들이 7800개 정도를 서면으로 우선 감독할 대상을 해서 현재 불법과건을 조사하기 위해서 780개 감독을 지금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정애 위원** 아니, 감독하시는데요. 잠깐 제 얘기를 들어 보세요.

저희가 국정감사 때도 그렇고 제 기억으로는 19대 국회 4년 내내 안산·시흥 지역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불법과건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을 막지 않으면 전국적으로 다 퍼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실제 안산·시흥은…… 아시잖아요, 6개월씩 돌려 막기식 파견하는 것? 그런데 이게 안산에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인천으로도 가고 화성으로도 가고 충북 청주까지 내려갔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그래서 7800개를 서류 선정을 해서요……

○**한정애 위원** 장관님!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불파는 방지를 하면서……

○**한정애 위원** 저런 거 하지 마시고 감독을 하세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그러니까 780개를 선정해서 감독을……

○**한정애 위원** 감독을 할 때 나간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나가세요. 나간다고 얘기하고 나가면, 인사 담당자가 없기 때문에 얘기를 못 한다고 하시는데 아니, 거기 가서 인사 담당자 만나면 그 사람이 그러면 ‘우리 불법과건 하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합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경기 일원에 불법과건 소지가 있는 사업장 7800개를 우선 선정해서……

○**한정애 위원** 저는 정부가 파견법 개정안을 최소한 국회에다 제출을 할 때는 현재 파견법에 근거해서 파견근로자들이 정확하게 보호를 받아야 하고 그 해당 법안에 들어가 있는 파견근로자 외에 어떤 방식이든지 불법과건이 없어야 하고 그래서 ‘우리가 파견근로자를 이렇게 보호하고 있으니 파견을 이렇게 좀 늘려 주셔도 충분히 감독할 수 있고 충분히 관리할 수 있고 충분히 그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 주십시오’라고 갖고 오셔야 하는 겁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저희가 금년도에……

○**한정애 위원** 저 사람들, 조선업의 물량팀 대모집하는 것하고 안산·시흥 지역 파견 대모집하는 것하고 뭐가릅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저희가 그래서 금년에 4개 현장 실천방안을 넣을 때는 말씀하신 대로……

○**한정애 위원** 답변 요구하는 거 아닙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아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7800개를 대상으로 해서 지금 감독을 실시하고 있고 그 결과는 보고드리고…… 그러니까 제도도 보완하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감독도 동시에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홍영표** 한정애 위원님 감사합니다.

시간에 쫓겨서 충분하게 못 하셨는데 다음 회에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태경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河泰慶 위원** 화면 좀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지난번에도 고용 세습 문제 질의했었는데 데이터를 찾아보니까 계속 좀 줄기는 해요. 여기 보시면……

구두로 할게요. 98년에 32.9%예요, 전체 단협 중에. 2014년에 조금 내려왔어요, 32.9에서 30.4%. 그리고 2016년에는 25.1%까지 내려왔어요. 그런데 25.1%, 4분의 1이 고용 세습 조항을 지금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30대 기업 중에서는 30개 중에 9개가 고용 세습 조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봉건 세습, 봉건 잔재가 21세기에 등장하느냐, 왜 이런 계급사회적 잔재가 등장하느냐 우리 사회가 좀 심각히 생각해 볼 때가 되었다……

계속 넘겨주세요.

이것 한번 보세요. 한국GM 채용 장사 보도인데요.

(동영상 상영)

이 정도 됐습니다. 그 정도 합시다.

제가 86학번인데요. 2학년 때 노동자 대투쟁이 있었고 당시 노동자란 이름은 진보였습니다. 거룩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썩어 문드러져 가지고 부패의 온상이 되었습니다. 최소 5000만 원 받지 않으면 채용을 안 해 준답니다. 그것도 우리 진보를 이끌어 나가야 될 노조 간부가 주도한답니다. 그래서 지옥이 된 겁니다, 대한

민국이 청년들한테. 자기들만의 리그고 직장을 자기들만 가집니다. 그 리그에서 배제된 청년들은 벽이 너무 높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장관님께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된다…… 몇 개월 시간을 주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고용 세습 없는 대한민국 만들겠다, 내년부터는 채용 장사 없는 대한민국 만들겠다,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됩니다. 엄벌해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더 이상 지옥이 되지 않기 위해서 노동부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심사숙고해 주시고……

그리고 채용 장사뿐만이 아닙니다. 승진 장사에 또 협력업체도 제가 가 본…… 몇 개 기업을 제가 가 봤는데요. 한 10%, 20%가 노조에서 채용 압력을 넣습니다.

자료를 요청하겠는데요. 최근 10년간 채용 장사 적발 혹은 신고된 건수 데이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河泰慶 위원 그다음 화면 좀 해 주세요.

제가 지난번에 홍영표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해서 임금공시제 관련한 비슷한 사례들을 찾아보니까 고용형태공시제라는 게 있습니다. 각 회사의 정규직 몇 명, 비정규직 몇 명 신고하고 공시하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

임금공시가 있는데 저건 어떤 특정 기업입니다. 그런데 전체 직원의 평균 보수만 공개하고 있습니다, 전체 직원의 평균 보수.

그다음.

이것도, 아까는 공기업이고요. 여기는 민간기업인데 여기서도 평균, 남자 직원의 평균 뭐 이런 식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노동시장 이중구조라고 할 때 크게 세 가지입니다. 임금 격차, 복지 격차 그리고 일자리 안정성 격차라고 할 때 임금 격차 부분을 일단 격차가 얼마나 나는지 보자, 환부가 얼마나 굽았는지 보자라고 해야 치유할 수 있고 그걸 보기 위해서는 지금 공기업 그리고 규제개혁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돼 있는 독과점이 기업들에 대해서 일단 임금공시 방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게.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대표적인 기업, 공기업, 규제 부분, 독과점 기업 샘플 사례를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복지 격차 관련해서 복지기금이 사내복지기금이 있고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내복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기금은 원청업체가 중소기업체나 파견근로자를 위해서 복지사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나라 기업의 사내복지기금 중에 원청업체가 중소기업체·파견근로자 복지사업하는 경우가 1건도 없습니다. 정말 이기적인 유전자, 이기적인 노조입니다. 비정규직과 협력업체에 대해서 잔인할 정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노동부가 사내복지기금 중에서 의무적으로 몇 %를 협력업체와 파견근로자를 위한 복지로 강제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연대성 강화를 위해서.

그리고 공동근로복지기금이라는 제도가 있더라도, 정부에서 매칭을 해 주고. 이것은 대기업, 중소기업 그리고 원청업체 등등 둘 이상의 기업이 출연하면 정부가 매칭을 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한 인센티브를 좀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격차 해소에 있어서 임금 격차, 복지 격차 이런 부분을 줄일 수 있는 비전과 장기적인 전망을 제시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오전에 조간의 OECD 2016년 고용전망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가장 큰 원인이 정규직 과보호다, 이를 해소하면 오히려, 그러니까 정규직 과보호를 해소하면 오히려 정규직 고용률이 늘어난다, 실업률이 줄어들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간략간략하게 우선 말씀을 드리고 필요한 부분은 별도로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적하신 그 세습 조항 저희들이 지금 일제 시정명령을 내리겠다고요,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면 의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채용 장사는 현재 근로기준법에 엄하게 처벌하도록 돼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엄하게 하겠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고 그간의 사례는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금공시는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마는, 관계부처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마는 기본 취지는 위원님 지적은 격차, 대기업과 산하 협력업체 간

의 격차 문제를 아마 지적하시는 걸로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 법을 운용하고 있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또 그것에 따른 부작용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함께 고민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 격차를 줄인다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원청의 사내기금을 협력업체에 쓰게 하면 2억 정도의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이제 막 시작이 돼서 그쪽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활용되도록 하겠고, OECD 관련해서는 어제 저녁에 뒀는데 저희들도 그 부분이 맞다고 보고 있고 다만 경영계가 저희한테 임금의 유연화와 고용의 유연화를 요청했는데 노동개혁을 하면서 임금의 유연화는 임금체계 개편이 맞다라고 해서 하고 있고요. 고용의 유연화는 OECD 국가들은 법제를 바꿨는데 저희는 고용관계를 투명하게 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래서 판례에 의해서 투명하게 하는 것이 우선이다 해서 저희들이 공정인사지침으로 해서 운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세한 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영표** 마무리해 주십시오.

다음은 강병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병원 **위원** 아까 조선업 구조조정 관련된 질의응답 중에 물량팀을 직접 고용하라고 말씀하셨다고 하셨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14년도에 가급적 물량팀을 협력업체가, 다시 사내에서 3단계가 가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강병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 이유는 그 물량팀이 불법이기 때문입니까, 아닙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그런 불법, 적법을 따지기 전에 그건……

○강병원 **위원** 불법이에요, 합법이에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그건 다 상태를 봐야 됩니다.

○강병원 **위원** 아, 다 봐야 돼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그렇습니다.

○강병원 **위원** 지금 정부가 물량팀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를 파악하고 있고 또 정확하게 규모를 모르는 이유는 뭐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제가 14년도 말에……

○강병원 **위원** 그게 적법하고 합법이었으면 다

어디에 등록되어 있고 그러는 거 아닌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우리 고용보험에 들어와 있는 게 한 75% 되고 있고요.

○강병원 **위원** 그러면 안 들어와 있다는 건 뭐예요? 합법인데 안 들어와 있을 수 있나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그래서 저희들이 피보험 신고를 통해서 실업급여를 주는 제도를 작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강병원 **위원** 말이 지금 안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물량팀을 직접 고용하라고 했다고 하셨잖아요. 그 물량팀을 직접 고용하지 않는 게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직접 고용하라고 하신 거 아닌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그건 권고사항이지요, 저희들이. 가급적……

○강병원 **위원** 권고사항입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그렇습니다.

○강병원 **위원** 그런 걸, 무슨 불법과건 이런 게 아니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불법과건이면 저희들이 직접 고용토록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괄적으로 직접……

○강병원 **위원** 그런데 물량팀은 불법고용은 아닌가요? 불법과건은 아니에요, 제조업체인데?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그렇습니다.

○강병원 **위원** 아, 그래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도급 자체가 금지돼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강병원 **위원** 그런데 불법이 아닌데 데이터는 안 갖고 있고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아니, 14년 말의 1만 4000명에서 현재 만 350명 정도 된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강병원 **위원** 그래요? 제가 파악하니까 물량팀이 수만 명이 되던데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번에……

○강병원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한정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안산 반월, 시흥 이런 쪽에 고용실태조사 같은 걸 해 보시면 불법과건이 많이 발견된다면서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그렇습니다.

○강병원 **위원** 그러면 그런 분들은 고용하는 분들로 잡힙니까, 안 잡힙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다 잡혀 있습니다.

○강병원 위원 아, 불법파견인데도 다 잡혀 있어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강병원 위원 불법파견도 잡혀요, 고용률로도 다 잡히고? 그러면 왜 불법파견에 관해서 다 어떻게 조치를 안 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한정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제조업의 일시 업무증가로 쓸 수 있는 게 3개월인데 3개월을 넘겨서 쓰는 게 불법인 거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반복해서 쓰는 것도 저희들이 불법으로 보고 그걸 앞으로 지속적으로 감독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병원 위원 그러면 그런 불법들을 많이 발견하신 거 아니에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그렇습니다. 문제는……

○강병원 위원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하십니까? 보면 무슨 징역형도 있고 벌금도 있고 그런 거 아닌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아니, 저희들이 우선 직접 고용토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강병원 위원 아, 권고를 해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강병원 위원 만약에 어느 누군가가 우리들이 헌법을 어기고 그러면 그렇게 권고만 하면 되는 겁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그걸 따르지 아니했을 때는 저희들이 처벌하는데요. 15년만 해도 저희들이 약 1351개소에 불법파견 감독을 해서 4886명을 직접 고용토록 하고 있고 따르지 않은 100개 정도 사업체는 저희들이 사법처리를 했습니다.

○강병원 위원 사법처리를 하셨어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그 부분을 금년도에 더 강화할 계획입니다.

○강병원 위원 이렇게 제가 봐서는 그런 허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허점들이. 아까 한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안산·시흥 이런 곳에 그런 불법파견들이 엄청나게 많지만 노동부의 근로감독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 많은 거 아니겠어요? 만약에 파악하지 못하는 제조업의 불법파견들이 있다면 파악도 안 될 것이고 고용에도 잡히지 않을 것 같은데요, 파악이 안 됐다면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고용은 우리 가계조사, 경찰조사에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통계로는 잡힌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강병원 위원 그러세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강병원 위원 장관님께서 19대 국회를 파행으로 몰고 갔던 파견법을 또 가지고 오셨지 않습니까? 또 당정청에서 파견법을 포함한 노동 4법을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현재의 파견법도 파견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지 않습니까? 맞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그렇습니다.

○강병원 위원 이 파견법에서의 허점을 노리고 안산과 시흥과 반월에서 무수하게 우리 근로감독의 눈길을 피해서 자행되고 있는 불법파견이 있지 않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강병원 위원 그것을 대표적으로 악용하는 조항이 일시적인 간헐적인 사유로 3개월씩 쓰는 것 아니겠어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강병원 위원 그것을 또 한 번 연장을 해 주고요.

이 조항을 먼저 손보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조항을 손봐서 일시적·간헐적인 사유로 딱 1년씩 쓰고 또 1년 연장해서 2년씩 쓰는 이런 게 아니라 그 조항을 손볼 때에 파견직이라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믿을 수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오히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위원님 지적하신 취지로 가자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강병원 위원 아니지요, 이 조항은 그대로 놔두고 뿌리산업으로까지 더 확대하자는 것 아닙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위원님, 제가 한 사업장의 사례를 한번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자동차가 원청은 9700만 원입니다. 그 원청의 비정규직은 5000만 원입니다, 사내하도급. 그다음에 거기의 1차 협력업체의 정규직은 4700만 원입니다. 그 1차 협력업체의 사내하도급은 3000만 원입니다. 2차 협력업체의 정규직은 2800만 원이고 그 2차 협력업체의 사내하도급은 2200만 원입니다.

문제는 그 1차, 2차 거기에 다시 들어 있는 사내하도급이 좋은지 파견이 좋은지는 법률적으로 보면 파견으로 되게 되면 그것은 차별을 둘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지만 그렇게 했을 때 도급으로 가는 경우, 일용으로 쓰는 경우 이것도 고민을 해

야 한다는 거지요.

○위원장 **홍영표** 좀 정리를 해 주십시오.

정리해 주시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강병원** 위원 장관님께서 이 근로감독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무수한 제조업체들 불법과건을 오히려 파견법 개정안을 부추겨서 합법화해 준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아닙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감독을 더 많이 하고 확대를 한다는 것은 말씀을 드리고 한편으로는 그것으로 인한 다른 작용을 파견법 제도를 보완해서 없애자 그런 취지입니다. 감독은 저희들이 더 강화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영표** 다음에 이 논의를 더 심도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별도로 한번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홍영표** 다음은 마지막 순서로 문진국 위원 질의하십시오.

○**문진국** 위원 장관님, 저는 질의를 하면 그냥 답변하지 마시고요. 한 가지만 질의드릴 테니까 서면으로 그냥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진국** 위원 고용보험기금 장기적 운용 계획의 필요에 대한 문제인데요. 질의만 하겠습니다.

지난해 고용보험기금의 64%가 고용정책 프로그램으로만 집중되고 재취업을 지원하는 직업능력 개발사업은 20%도 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고용정책프로그램 예산의 90%가 실업급여로 집행되어 기금의 50% 이상이 실업급여에만 사용되는 불균형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고용보험기금의 취지에 맞게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기금 집행을 늘려야 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요.

실업급여 여유자금은 실업의 발생이나 고용 불안에 대비하여 고용보험기금 지출액의 1.5배 이상 2배 미만으로 적립을 해야 하는데 2009년부터 현재까지 실업급여계정의 연말 적립금 배율은 법정기준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최근 조선업·해운업 등의 구조조정으로 실업급여 대상자 급증과 고용 불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주

십시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서면으로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진국** 위원 실업급여 적립 기금이 지출액의 0.7배에 그치고 있어 안정적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지 우려스럽고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최근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 형사고발 건수가 2013년도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하였지만 공모를 통한 지능적 부정수급은 날로 증가하여 전체 부정수급 건수는 감소하지 않았습나다. 그래서 사후 처벌 강화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부정수급 자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한데 이것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임금피크제 지원금, 세대간 상생고용 지원금, 청년취업 진로 지원 및 모성보호 육아지원사업 등 일반회계에서 지출해야 할 사업비가 고용보험기금에서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보험기금 목적에서 어긋난 무분별한 지출은 고용보험기금의 고갈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니 철저히 관리·집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영표** 감사합니다.

서면으로 성실히 부탁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질의가 있습니다.

조원진 위원, 이용득 위원, 송옥주 위원, 서형수 위원, 이정미 위원, 장석춘 위원, 김삼화 위원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습니다.

해당 기관에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장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7월 14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1분 산회)

○출석 위원(16인)

강 병 원 김 삼 화 문 진 국 서 형 수
 송 옥 주 신 보 라 신 창 현 이 상 돈
 이 용 득 이 정 미 임 이 자 장 석 춘
 조 원 진 하 태 경 한 정 애 홍 영 표

○출석 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손 충 덕
 전 문 위 원 김 양 건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환경부
 장 관 윤 성 규
 차 관 이 정 섭
 물 환경 정책 국 장 김 영 훈
 자 원 보 전 국 장 이 민 호
 자 원 순 환 국 장 신 진 수
 기 후 대 기 정 책 관 나 정 균
 상 하 수 도 정 책 관 오 종 극
 환 경 정 책 관 박 광 석
 환 경 보 건 정 책 관 이 호 중
 국 제 협 력 관 주 대 영
 대 변 인 박 천 규
 감 사 관 이 경 용
 중앙 환경 분 재 조 정 위 원 장 남 광 희
 국 립 환 경 과 학 원 장 박 진 원
 국 립 생 물 자 원 관 장 백 운 석
 화 학 물 질 안 전 원 장 김 균 기
 한 강 유 역 환 경 청 장 홍 송 형
 낙 동 강 유 역 환 경 청 장 정 복 영
 금 강 유 역 환 경 청 장 이 희 철
 영 산 강 유 역 환 경 청 장 김 상 훈
 수 도 권 대 기 환 경 청 장 황 계 영
 원 주 지 방 환 경 청 장 유 제 철
 대 구 지 방 환 경 청 장 조 병 옥
 새 만 금 지 방 환 경 청 장
 한국 환경 공 단 이 사 장 이 시 진
 감 사 사 강 형 신
 경 영 지 원 본 부 장 강 만 옥
 기 후 대 기 본 부 장 신 동 석
 물 환 경 본 부 장 강 종 철
 자 원 순 환 본 부 장 박 응 열
 환 경 시 설 지 원 본 부 장 권 영 석
 국 립 공 원 관 리 공 단

이 사 장 박 보 환
 감 사 사 이 진 화
 경 영 기 획 이 사 최 운 규
 자 원 보 전 이 사 김 상 배
 탐 방 관 리 이 사 정 정 국
 한국 환경 산업 기술 원 장 김 용 주
 원 장 김 정 주
 환 경 기 술 본 부 장 김 용 진
 환 경 사 업 본 부 장
 국 립 생 태 원 원 장 최 재 천
 경 영 관 리 본 부 장 윤 명 현
 생 태 연 구 본 부 장 김 정 규
 생 태 조 사 평 가 본 부 장 김 종 민
 생 물 관 리 연 구 본 부 장 정 진 철
 전 시 교 육 융 합 본 부 장 이 원 효
 수 도 권 매 립 지 관 리 공 사 사 장 이 재 현
 사 감 사 한 진 호
 기 획 이 사 이 용 재
 운 영 이 사 김 성 수
 사 업 이 사 김 낙 빈
 국 립 낙 동 강 생 물 자 원 관 관 장 안 영 희
 관 장 최 기 형
 기 획 전 시 본 부 장 최 이 욱 재
 담 수 생 물 연 구 본 부 장 최 용 철
 한국 상 하 수 도 협 회 상 근 부 회 장
 기상청 기상 청 장 고 윤 화
 차 장 남 재 철
 기 획 조 정 관 이 우 진
 예 보 국 장 신 도 식
 관 측 기 반 국 장 이 미 선
 기 후 과 학 국 장 정 준 석
 기상 서 비 스 진 흥 국 장 유 희 동
 지 진 화 산 관 리 관 유 김 남 욱
 국 립 기 상 과 학 원 장 조 천 호
 수 도 권 기 상 청 장 양 진 관
 부 산 지 방 기 상 청 장 임 병 속
 광 주 지 방 기 상 청 장 권 혁 신
 강 원 지 방 기 상 청 장 욱 명 렬
 대 전 지 방 기 상 청 장 서 장 원
 제 주 지 방 기 상 청 장 김 세 원
 국 가 기 상 위 성 센 터 장 박 훈

기상레이더센터장	전	준	모
항공기상청장	박	정	규
한국기상산업진흥원장	김	종	석
APEC기후센터소장	정	홍	상
한국형수치예보모델 개발사업단장	홍	성	유
고용노동부			
장	이	기	권
차	고	영	선
기획조정실장	박	종	길
고용정책실장	문	기	섭
노동정책실장	신	기	창
노동시장정책관	김	경	선
고용서비스정책관	장	신	철
청년여성고용정책관	나	영	돈
고령사회인력정책관	박	성	희
직업능력정책국장	권	기	섭
노사협력정책관	임	서	정
근로기준정책관	정	지	원
공공노사정책관	황	보	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	박	화	진
정책기획관	김	용	호
국제협력관	정	민	오
대변인	정	형	우
감사관	조	병	기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직무대행	신	영	철
중앙노동위원장	박	길	상
최저임금위원장	박	준	성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장	임	인	택
고용보험심사위원장	정	정	식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이	재	갑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박	영	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이	영	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박	승	규
한국고용정보원장	유	길	상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오	광	성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엄	현	택
학교법인한국폴리텍 이사장	이	우	영
한국기술교육대학교총장	김	기	영
한국잡월드이사장	장	대	익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권	영	순

【보고사항】

○의안 회부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

(2016. 6. 28. 임이자·장석춘·문진국·김승희·김규환·신보라·김순례·홍문중·윤종필·金成泰·이종명 의원 발의)

6월 29일 회부됨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

(2016. 6. 29. 임이자·장석춘·문진국·김승희·김규환·신보라·김순례·홍문중·윤종필·김상훈·김철민 의원 발의)

최저임금 인상 및 공생적 최저임금 정책 촉구 결의안

(2016. 6. 29. 송옥주·강병원·강훈식·권미혁·권철승·기동민·김경수·김관영·김민기·김병욱·김부겸·김상희·김성수·김영진·김영호·김정우·김종민·김철민·김태년·김한정·김해영·김현권·김현미·남인순·문미옥·박경미·박광온·박남춘·박재호·박정·박주민·박홍근·백혜련·서형수·설훈·소병훈·송기현·신창현·심재권·안규백·어기구·오제세·우원식·위성곤·유승희·유은혜·윤관석·윤후덕·이용득·이재정·이정미·이철희·이학영·이훈·임종성·전재수·전해철·전현희·전혜숙·정재호·제윤경·조승래·최운열·최인호·한정애·홍영표·홍익표·황희 의원 발의)

이상 2건 6월 30일 회부됨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학재 의원 대표발의)

(2016. 7. 5. 이학재·함진규·박명재·유승민·정성호·홍철호·이우현·최도자·추경호·김성태 의원 발의)

물산업진흥법안(곽상도 의원 대표발의)

(2016. 7. 5. 곽상도·유승민·곽대훈·조원진·김석기·김규환·추경호·김정재·정갑윤·이종배·정태욱·이종명·홍의락·강석호·김상훈·이철우·윤재욱·주호영·이완영·정종섭·김부겸 의원 발의)

이상 2건 7월 6일 회부됨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

(2016. 7. 6. 신상진·김상훈·김성태·김순례·박맹우·박성중·박찬우·이완영·이우현·이종배·정우택·함진규 의원 발의)

7월 7일 회부됨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 6. 28. 정부 제출)

6월 29일 회부됨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 발의)

(2016. 6. 29. 김경협·신경민·이용득·제윤경·우원식·김정우·권미혁·김현권·김병욱·소병훈·서형수·윤후덕·남인순·신창현·정성호·최도자·송옥주·이정미·조정식·김영춘 의원 발의)

6월 30일 회부됨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

(2016. 6. 30. 백재현·이찬열·이재정·정성호·윤후덕·김정우·신창현·서영교·박정·위성곤·박남춘·남인순 의원 발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2016. 6. 30. 한정애·정성호·최명길·김철민·인재근·신창현·이종걸·박주민·홍익표·김경협·남인순 의원 발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 발의)

(2016. 6. 30. 한정애·정성호·최명길·김철민·인재근·신창현·이종걸·홍익표·김경협·남인순 의원 발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 발의)

(2016. 6. 30. 한정애·이용득·송옥주·박경미·신창현·홍의락·홍익표·김철민·김경협·남인순 의원 발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2016. 6. 30. 한정애·정성호·최명길·김철민·인재근·신창현·이종걸·박주민·홍익표·김경협·남인순 의원 발의)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 6. 30. 정부 제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

(2016. 6. 30. 백재현·이찬열·이재정·정성호·윤후덕·김정우·신창현·진선미·서영교·위성곤·박남춘·남인순 의원 발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

발의)

(2016. 6. 30. 주승용·최도자·김동철·박주선·박광운·이춘석·장정숙·강창일·김관영·이용주·박준영 의원 발의)

이상 8건 7월 1일 회부됨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미 의원 대표 발의)

(2016. 7. 1. 이정미·심상정·노회찬·김종대·추혜선·윤소하·김현권·김경협·송옥주·정춘숙 의원 발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 의원 대표발의)

(2016. 7. 1. 김명연·김도읍·권석창·홍철호·홍의락·정태욱·이명수·성일종·정갑윤·주호영·민홍철·김성원·홍문종·염동열 의원 발의)

이상 2건 7월 4일 회부됨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 발의)

(2016. 7. 4. 김삼화·김관영·김경진·김경협·김동철·김중로·박주현·서형수·이동섭·최경환(국)·황주홍 의원 발의)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 발의)

(2016. 7. 4. 윤후덕·안규백·김경협·이해찬·심재권·김민기·김병욱·정세균·박정·인재근·박남춘·홍철호 의원 발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

(2016. 7. 4. 윤후덕·노웅래·안규백·김경협·심재권·김민기·김병욱·정세균·윤관석·인재근·박남춘·윤소하·박정·홍철호 의원 발의)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 의원 대표 발의)

(2016. 7. 4. 김한정·김철민·어기구·김경수·전재수·우원식·제윤경·김해영·박주민·안규백·홍문표·백혜련·박재호·서형수·신창현·김정우·강훈식·박광운·이훈·최경환(국)·송기현 의원 발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

(2016. 7. 4. 윤후덕·노웅래·안규백·김경협·심상정·심재권·김민기·김병욱·정세균·윤관석·박남춘·윤소하·박정·홍철호·

인재근 의원 발의)

이상 5건 7월 5일 회부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

(2016. 7. 5. 윤후덕 · 노웅래 · 안규백 · 김경협 · 심상정 · 심재권 · 김민기 · 김병욱 · 정세균 · 인재근 · 박남춘 · 윤소하 · 박정 · 홍철호 의원 발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연혜 의원 대표발의)

(2016. 7. 5. 최연혜 · 김도읍 · 이채익 · 이우현 · 경대수 · 김성태 · 김삼화 · 金成泰 · 곽대훈 · 김정재 · 권석창 · 서형수 의원 발의)

이상 2건 7월 6일 회부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세연 의원 대표발의)

(2016. 7. 6. 김세연 · 박명재 · 김학용 · 유승민 · 윤후덕 · 추혜선 · 정갑윤 · 정태욱 · 최도자 · 박남춘 · 이해훈 · 김순례 · 유동수 · 배덕광 · 이학재 · 김정우 · 조훈현 · 황주홍 · 이종명 · 김도읍 · 박대출 · 곽상도 · 나경원 · 이진복 의원 발의)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

(2016. 7. 6. 우원식 · 이원욱 · 홍익표 · 박범계 · 박남춘 · 전해철 · 조승래 · 기동민 · 이철희 · 고용진 · 전재수 · 유은혜 · 권칠승 · 최인호 · 신경민 · 박정 · 전현희 · 어기구 · 문미옥 · 강병원 · 김영주 · 진선미 · 송기현 · 박광온 · 김해영 · 제윤경 · 금태섭 · 정재호 · 윤후덕 · 백혜련 · 권미혁 · 박재호 · 김한정 · 강훈식 · 민홍철 · 추미애 · 박홍근 · 손혜원 · 김병욱 · 신창현 · 김현권 · 민병두 · 위성곤 · 임종성 · 최경환(국) · 김병관 · 심재권 · 김영춘 · 박주선 · 도종환 · 김종민 · 박주민 · 김관영 · 서형수 · 강창일 · 인재근 · 황주홍 의원 발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

(2016. 7. 6. 김관영 · 김광수 · 김중로 · 이용주 · 이종걸 · 이춘석 · 장정숙 · 조배숙 · 주승용 · 채이배 의원 발의)

이상 3건 7월 7일 회부됨

○**관련의안 회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

(2016. 6. 29. 김경협 · 신경민 · 이용득 · 제윤경 · 우원식 · 김정우 · 권미혁 · 김현권 · 김병욱 · 소병훈 · 서형수 · 윤후덕 · 남인순 · 신창현 · 정성호 · 최도자 · 송옥주 · 이정미 · 조정식 · 김영춘 의원 발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

(2016. 6. 29. 김경협 · 신경민 · 이용득 · 제윤경 · 우원식 · 김정우 · 권미혁 · 김현권 · 김병욱 · 소병훈 · 서형수 · 윤후덕 · 남인순 · 신창현 · 정성호 · 최도자 · 송옥주 · 이정미 · 조정식 · 김영춘 의원 발의)

보건의료 인력지원 특별법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

(2016. 6. 29. 정춘숙 · 양승조 · 김상희 · 심상정 · 신동근 · 도종환 · 이용득 · 이정미 · 기동민 · 오영훈 · 설훈 의원 발의)

이상 3건 6월 30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2016. 6. 30. 정부 제출)

물관리 기본법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

(2016. 6. 30. 함진규 · 이학재 · 강석호 · 배덕광 · 김학용 · 김성태 · 이장우 · 신상진 · 이우현 · 신보라 의원 발의)

이상 2건 7월 1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